2018년도 연구용역보고서

지역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

: 사회적 가치 실현과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입법 전략

2018. 11.

수 행 기 관	소셜혁신연구소

지역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
: 사회적 가치 실현과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입법 전략

2018. 11.

연구기관 및 연구진	
연구기관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연구원	안지훈 한양여자대학교 행정실무과 교수
연구원	한기호 한양여자대학교 소셜혁신연구소 수석연구원
연구보조원	김혜린 한양여자대학교 소셜혁신연구소 주임연구원

본 보고서는 고용진 국회의원실의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목차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개요 ····· 2

2. 연구의 목적 및 분석 틀 ····· 6

제2장. 사회적 경제의 등장 ····· 7

1. 사회적 경제 개념 ····· 8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개념 ····· 16

3. 소셜벤처의 출현 및 활성화 정책 ····· 22

제3장. 소셜벤처(Social Venture)의 정의와 분류 ····· 25

1. 중앙행정기관의 관점에서 본 소셜벤처 ····· 26

2. 서울시의 관점에서 본 소셜벤처 ····· 27

3. 성동구의 관점에서 본 소셜벤처 ····· 28

4. 학술기관의 관점에서 본 소셜벤처 ····· 28

5. 해외기관의 관점에서 본 소셜벤처 ····· 29

6. 소셜혁신연구소 관점에서 본 소셜벤처 ····· 30

제4장. 소셜벤처(Social Venture)의 현황 ····· 31
1. 소셜벤처의 운영 구조 ····· 32
2. 소셜벤처의 분류와 특성 ····· 32
3. 국내 소셜벤처 현황 ····· 34
4. 해외 소셜벤처 사례 ····· 63

제5장. 청년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제도적 환경 분석 ····· 65
1. 소셜벤처의 사회적 수요 증대 ····· 66
2.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 67
3. 소셜 벤처 관련 법제 검토 ····· 69

제6장. 결론 : 청년 소셜벤처 지원 특별법(안) 제안 ····· 98
1. 소셜벤처 확산의 필요성 ····· 99
2. 기존법령 개정의 필요성 ····· 100
3. '청년'의 연령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 102
4. 제도개선에 관한 제언 ····· 103
5. 청년 소셜벤처 특별법(안) 제안 ····· 104

참고문헌 및 별첨 ····· 107

제 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개요

1) 연구 과제

□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소셜벤처 조직 지원을 위한 입법 연구용역**

2) 연구 수행기간

□ **2018년 10월 01일 ~ 11월 07일**

3) 연구 배경

□ **청년 일자리 문제**

○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설치됨.

○ 정부는 대통령의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이며, 국민의 권리입니다' 라는 기치 하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청년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현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주요한 지표로 꼽힘. 통계청이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근거하여 지난 6월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706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음(연합뉴스 외 보도).

<그림 1> 최근 1년간 청년 실업률 및 실업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7 기준

○ 취업자 수 전년대비 증가가 10만 명에 못 미친 건 2008년 국제 금융위기가 가시지 않은 2010년 1월(1만 명 감소) 이후 처음임.

○ 특히 2~4월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치다가 5월, 10만 명 선이 무너진 건 금융위기 초기 모습과도 닮았음.

○ 통상 취업자 수는 매년 1년 전보다 30만 명대, 많게는 90만 명까지 늘어 왔음. 그러나 국제 금융위기 당시, 2008년 9월 이후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하다가 4개월 차에 10만 명 선이 무너졌고 5개월 차부터 마이너스로 하락세를 보임. 최근 청년실업률은 2018년 7월 현재 다소 반등하였고 9.3%, 40만 명에 이르는 상황임.

<표 1> 통계청 청년고용지표 비교 (15세~29세, 단위: 천명,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생산가능인구	9,868	9,829	9,735	9,660	9,531	9,439	9,395	9,380	9,363	9,282
경제활동인구	4,456	4,340	4,269	4,229	4,150	4,053	4,179	4,253	4,334	4,333
취업자	4,138	3,992	3,930	3,907	3,837	3,728	3,802	3,864	3,908	3,907
실업자	318	348	339	322	312	324	378	389	426	426
실업률	7.1	8.0	7.9	7.6	7.5	8.0	9.0	9.1	9.8	9.8
경제활동참가율	45.2	44.2	43.9	43.8	43.5	42.9	44.5	45.3	46.3	46.7
고용률	41.9	40.6	40.4	40.4	40.3	39.5	40.5	40.5	41.7	42.1

자료: e-나라지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노동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3가지 대표적 지표(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에 따르면, 모든 OECD 주요국에서 청년 계층의 실업문제가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됨.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하여 청년 계층의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함. 국제통화기금(IMF)은 청년 고용 확대를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함.[1)]

○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청년 일자리 정책 예산은 최근 3년 간, 급격하게 증가함. 2018년 청년 일자리정책 예산은 전년대비 16.1% 증가(2017년: 2조 5,933억원, 2018년: 3조 125억)하여, 전체일자리 사업의 예산증가율 12.4% (2017년: 17조 1000억원, 2018년: 19조 2000억원) 대비 약 3.7% 더 높은 증가율.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신설, 일자리 정부를 전면에 내세움.

○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년 7월)을 통한 다양한 청년 고용서비스사업(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희망 키움통장 등)이 신설을 통해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2)]

1) 국회예산정책처, "국가별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의 효과성 분석" 2018.9. 1쪽.

2) 전게서. 1쪽.

□ ‘사회적경제’ 개념의 확산

○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라는 토양의 생성과 함께 청년 중심의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소셜벤처의 육성 및 정부 차원의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3] 소셜벤처는 일반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등 생산하는 비즈니스적 특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특성을 동시에 지님.

○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세계적인 추세로 유럽연합은 2015년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의 고용 기준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1.4%에 불과함. 또한 노동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기업 중 영역이익이 발생한 기업률 현황을 보면, 2014년 20.8%에서 2016년 현재 50.1%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협동조합 사업운영률은 50%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2013년 54.4% → 2017년 54.4%).

□ 소셜벤처의 등장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 서울 성동구 성수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소셜벤처 조직들이 자생적으로 출현하여 소셜밸리를 형성 중에 있음(헤이그라운드를 비롯하여 약 250여개 소셜벤처 기업 및 지원 · 투자 기관들이 입주해 있음).

○ 창업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로 소셜벤처의 성공 사례도 증대되는 추세임. 2018년 기준 주요 소셜벤처 20개사의 창업당시 대표자 평균연령은 30.3세이며 근로자 중 청년 비율은 81.2%에 이름. 평균 매출액은 2015년 당시 4.1억 원에서 2016년 6.8억 원으로 증가하여 68.6%의 증가율을 보임.

○ 상술한 환경에서 소셜벤처에 관한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이며, ‘사회적기업의 자립’ 에 정체되어 있는 기존 논의의 틀은 협소하고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현 시대의 흐름을 고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즉 청년 중심의 소셜벤처를 관(官)의 영역에서 포용하고 이들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서 입법안 모색이라는 제도적 실천방안을 분석하고 대안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함.

3) 2018년 5월16일 정부에서도「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하며 1,200억원 규모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를 조성을 추진하는 등 소셜벤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및 분석 틀

1) 연구 목적

□ 본 연구용역은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즉 소셜벤처에 관한 파편화되어 있는 개념을 정돈하고 산재되어 있는 유관 법제 혹은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제도권 하의 소셜벤처의 현주소를 진단하여 궁극적으로 독립된 법제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대안 입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 분석 단위

□ 첫째, 사회적 합의가 진행 중인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즉 소셜벤처에 관한 사회적경제 각 행위자 간 정의를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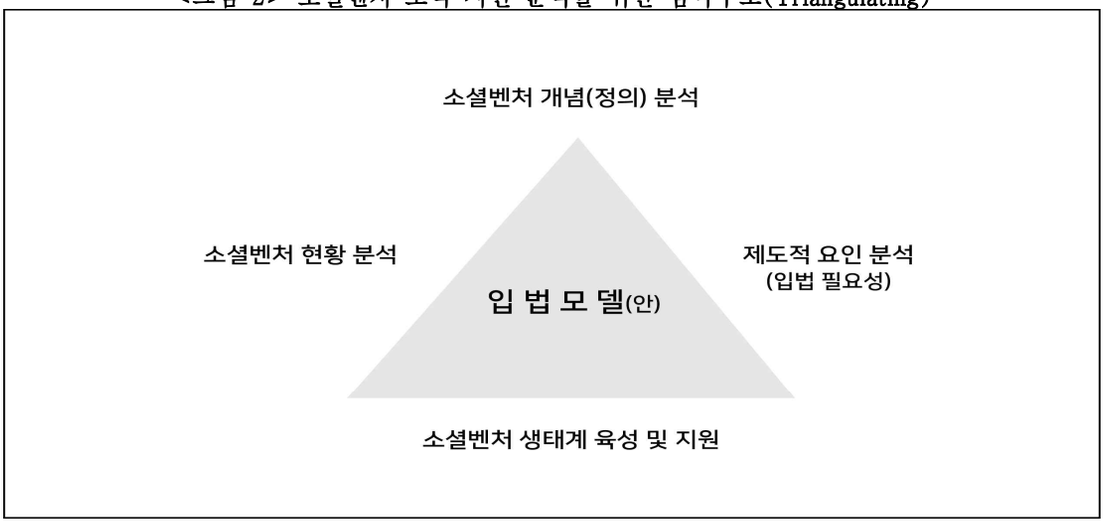
□ 둘째, 국내외 소셜벤처의 현황과 제도적 환경을 점검함.

□ 셋째, 점검 실태를 바탕으로 국내 소셜벤처 지원 법제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함.

□ 넷째,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비롯한 기존 법령 및 법안들을 분석 후 정책 대안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직 중 청년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입법안을 제시함.

3) 연구 분석 틀

<그림 2> 소셜벤처 조직 지원 분석을 위한 삼각구도(Triangulating)



제 2장. 사회적 경제의 등장

1. 사회적 경제 개념

1)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경제'

□ 신자유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인 영국의 마거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前 수상은 1987년 어느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사회에 떠넘기고 있다."며 사회의 존재를 부정하며, 사회라는 공간에 개인의 책임을 전가하는 세태를 비판했음. 그러나 대처리즘(Thatcherism) 이후, 영국사회로부터 얻은 교훈은 시장에만 모든 것을 맡길 경우 사회적 결속과 연대는 파괴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는 실종되며 개인주의 경향성이 강화된다는 것임. 타인에 공존하지 않는 삶은 공동체가 결여된 삶이며, 사회적 모임이 불필요하게 되면 개인들 간 단절과 고립이 심화됨. 즉 현대사회는 '사회적인 것'의 쇠퇴를 의미함.[4)]

□ 사회적인 것, 즉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으로 사회적경제가 등장함. 역사적 기원은 고대 이집트와 고대 그리스 시대의 공제조직에서 찾기도 하고 중세 유럽이나 무슬림 국가의 길드에서 찾기로 함.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경제는 18세기 말에 이르러 형성되었음. 사회적경제의 등장은 자본주의의 거대한 변화를 배경으로 함. 산업혁명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자 산업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도시 빈곤이나 실업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이 광범위하게 나타남.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경험한 후 많은 이들이 박애주의적 역대정신에 입각하여 자선단체들을 조직함. 이러한 자선활동은 19세기 후반에 들어 나라마다 전국적 연합회 형태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됨.[5)]

□ 스웨드버그(Richard Swedberg)는 현대 시장경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경제적 사회관계망 내에서의 시장의 작동을 강조함. 특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성장 중이며, 전통적인 국가-시장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이 아닌, 공적, 사적 영역을 복합적으로 연결하고 결합하는 조직들이 발전한다고 주장함.[6)]

□ EU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해결책으로 평가하고 있음. 2009년 EU는 사회적경제 개념

4) 고동현 외, (2018)『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파주: 한울. 21-22쪽.
5) 고동현 외, (2018), 69-70쪽.
6) Swedberg, Richard. 2003. Principles of Economic Socio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인식·법적조치 권고 등 48개 항목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강화함[7](별첨 #1 참조).

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목적

□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활동을 통한 이윤의 최대 창출을 궁극적 가치로 여기는 것과 달리, '사람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이익 및 공익적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는 경제활동임. 지역불균형에 기인한 지역사회 활성화 문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에 기인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문제, 환경 파괴 문제 등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보적 개념으로 등장했음.

□ 사회적경제를 시장이나 기업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는 추구하는 목적이 사회적이냐 하는 것임. 사회적 목적은 다양하게 규정되나 일반적으로 비영리성, 민주성, 공동체 지향성,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 자치역량 강화로 설명할 수 있음.[8]

□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의 생산과 소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념으로 읽힘. 그러나 사회적경제 뿐 아니라, 경제 행위자 및 행위의 범주를 확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음.

3) 사회적경제의 영역

□ 사회적경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는 시간과 공간, 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므로 규정의 어려움이 존재함. 사회적경제의 범주는 일반적으로 빈곤을 비롯한 인류가 창출한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불편한 사회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영역임.

□ 영역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적경제는 민간시장 부문과 공공 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활동영역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즉 경제행위자의 활동 공간을 기준으

7)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2017.10, 1쪽.
8) 고동현 외, (2018), 전게서, 67-69쪽.

로 하면 사회적경제는 제 3섹터가 주체가 되는 경제영역을 의미함. 제 3섹터란 국가와 시장의 영역이 아닌 시민사회의 영역을 지칭하므로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에서 생겨난 자발적인 시민조직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함.[9)]

□ UN은 2000년 MDGs에서 2015년 SDGs로 보완, 발전된 인류가 직면한 당면과제인 17개의 공동 목표(2016~2030)를 지향하는가를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척도로 삼기도 함.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분야에 대한 해결을 의미함.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17개 목표 중 빈곤종식, 기아종식과 지속가능 농업, 보건과 복지, 물과 위생 등의 민생안정과 관련된 아젠다는 기존의 MDGs에서 다루었던 목표와 유사하지만,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과 인프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등의 추가된 목표는 SDGs 의 주요한 추진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빈곤 퇴치뿐만 아니라 초등교육, 보건, 의료 등 개발협력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개도국의 제도개혁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정책조언 강화 기조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음.

<표 2> The SDGs and Targets

1. No poverty;
2. Zero hunger;
3. Good health and well-being;
4. Quality education;
5. Gender equality;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10. Reduce inequality;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3. Climate action;
14. Life under water;
15. Life on land;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and
17. Partnership for the goals.

9) 고동현 외, (2018), 전게서, 65쪽.

<표 3> Difference Between SDGs and MDGs (민간영역의 중요성)

There are seven major differences in MDGs and SDGs;

1. MDGs were drawn up by a group of experts in the 'basement of UN headquarters' whereas SDGs have evolved after a long and extensive consultative process including 70 Open Working Group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matic consultations, country consultations, participation of general public through face-to-face meetings and online mechanisms and door to door survey;

2. While MDGs were focused with only 8 goals, 21 targets and 63 indicators, SDGs include 17 goals with 169 targets. An expert analyses by noble laureates at Copenhagen consensus, suggest that if the UN concentrates on 19 top targets, it can get $20 to $40 in social benefits per dollar spent, while allocating it evenly across all 169 targets would reduce the figure to less than $10. Being smart about spending could be better than doubling or quadrupling the aid budget;[10)]

3. MDGs had a focus on developing countries with funding came from rich countries. All countries, developed or developing, are expected to work towards achieving SDGs;

4. The pillars of human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equity are deeply rooted in SDGs and several targets seven explicitly refer to people with disabilities, six to people in vulnerable situations, and two to non-discrimination. These were not even mentioned in the MDGs; (iv) MDGs had 3 direct health goals, 4 targets and 15 indicators with emphasis on child, maternal mortality and communicable diseases. SDGs have one comprehensive goal emphasizing well-being and healthy living including NCDs;

5. MDGs had a time span of 25 years though adopted in 2002 baseline data for the year 1990 was used and some of the baselines were revised subsequently which shifted 'the goal post'. For the SDGs, the baseline is from 2015 estimates. It may be revised as more recent data becomes available;

10) Kydland F, Stokey N, Schelling T. Smart Development Goals. Available at http://www.copenhagenconsensus.com/post-2015-consensus/nobel-laureates-guide-smarter-global-targets-2030. 검색일 : 2018.10.20.

6. SDGs include a vision of building vibrant and systematic partnerships with private sector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t builds on, UN Compact which was launched in year 2000 and IMPACT 2030;

7. MDGs had no concrete role for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whereas SDGs have paid attention to this right from the framing stage itself with significant engagement of civil society actors.

자료 : Sanjiv Kumar, Neeta Kumar, and Saxena Vivekadhish,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t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ddressing Unfinished Agenda and Strengthen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artnership.” Indian J Community Med. 2016 Jan-Mar; 41(1): 1-4.

<표 4> MDGs와 SDGs 우선순위 비교

UN새천년개발목표(2000)	UN지속가능개발목표(2015)	가치
[1] 극심한 빈곤 및 기아 퇴치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인간 (People)
	[2] 기아 종식, 지속가능한 농업 도모	
[4] 유아사망률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3] 보건과 복지	
[2]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4] 양질의 교육	
[3] 성 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	[5] 양성 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6] 물과 위생	지구 (Planet)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 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활용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활용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확보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주거 여건조성	
	[7] 클린 에너지	
해당없음	[8] 일자리와 경제성장	번영 (Prosperity)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10] 불평등 완화	
	[16]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구축, 정의에 대한 접근성 제고, 신뢰할만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8] 파트너십	[17] 이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파트너십	파트너십 (Partnership)

자료 : 박지연·문경연·조동호. 2016.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3권 제2호. 259쪽.

<표 5> MDGs와 SDGs 특징 비교

구분	MDGs(2001-2015)	SDGs(2016-2030)
구성	[포괄성]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대한 이슈를 포괄	
	8개 목표 + 21개 세부 목표	17개 목표 + 169개 세부 목표
범주	[변혁성]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발전	
	경제발전과 사회/인간개발	환경의 지속성, 평화, 정의, 제도 등 추가
대상	[보편성]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 강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발전	선진국도 추진해야 하는 과제 포함(일자리, 지속가능도시 / 소비 및 생산, 기후)
재원	[다층성] 정부 및 공공/민간재원 활용	
	정부의 ODA 중심 개발 원조	민관협력 파트너십, 기업 참여 확대
참여주체/ 거버넌스	[포용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DAC(개발협력위원회)선진국위주 남북협력	DAC선진국 + 인도, 브라질, 아랍국가 포함 남남협력포괄
평가	[책임성] 보고의 의무 추가	
	실천 과정 자발적 보고	이행 과정, 성과 의무 보고

자료 : 박지연·문경연·조동호. 2016. 255쪽.

□ 사회적 기업가의 지침이 되는 아쇼카펠로우(1981, 설립자인 Bill Draton 은 사회적기업가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의 활동분야를 예로 들면, 환경, 언론, 인권, 양성평등, 주거, 농업, 기술, 경제개발, 보건, 고용과 시민참여까지 참여하는 광범위한 영역이며, 이는 SDGs 와 상당부분 중복됨.

□ 2018년 5월 관계부처 합동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 자료에 의하면 광의의 소셜벤처의 유연한 기준의 예로, 사회성 판단기준의 두 번째로 UN SDGs를 제시하고 있음(혁신성(벤처성)과 사회성이 각각 1개 이상 충족되면 소셜벤처로 인정).[11)]

4) 사회적경제의 국내적 수렴

□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일제 강점기부터 협동조합 형태로의 소비조합, 농민공생조합 등이 설립되었으나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산되거나 흡수통합 되었음. 그리고 해방 이후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조직된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이 있었으나 곧 정권의 강제적 제도화에 의해 자생력과 운동력을 상실하고 관제화 되었음.[12)] 1990년대 이후의 한국의 사회적경제 제도화 과정은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형성과 발전이 주된 경로였다고 할 수 있음.[13)]

□ 문민화 이후 국내에서 사회적경제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볼 수 있음. 당시 외환위기는 규제완화, 작은 정부, 자유시장 경제 중시 등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으로 평가받기도 함. 유럽에서 출현한 협동조합이나 상호공제조합 등에 비하면 짧은 역사라고 할 수 있음.

---

11) 그 외 사회성 판단기준 예시로 사회적경제기업인가, 경영방침에 사회적 가치추구가 명시되어있는지, 취약계층 대상 고용여부, 이윤의 사회환원, 지역사회에 기여 여부 등이 확인지표로 제시되고 있음. 관계부처 합동 “사회문제 해결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 2018.5.16. 4~5쪽.

12) 국회입법조사처 (사)한국경제법학회 공동주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인법 전망과 과제” 세미나 자료집 (2015년10월15일). 59쪽.

13) 1990년대에 이르러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민사회로부터 노동통합형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출현하였으나 이러한 자생적 사회적경제 운동은 지속되지 못하고 곧 정부의 탈빈곤화 복지정책으로 흡수되었다. 사회투자지원재단, 「자활사업 협동조합 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2012, 41-53쪽.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개념

1) 사회적경제조직이란?

□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기존 조직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직으로서 기업의 형식을 띠면서도 지역사회의 공적·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복합적 성격을 띤 사회적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음.[14)]

□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조직은 반드시 비영리조직이거나 영리조직의 행동양식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의의 한계를 가지며, 상호 영리, 비영리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전략 개념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15)]

□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종류의 조직을 포괄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조직을 의미하며,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과 유사함.

14) 최석연 외, (2011)「지역친화적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 연구」경기연구원.
15) 고동현 외, (2018), 전게서, 39-41쪽.

2) 사회적경제조직의 분류

□ 협동조합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16]

<표 6>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17]

협동조합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실익제고 목적	목적	(추가)조합원 실익제고 및 지역주민, 취약계층 복리증진 목적
사실상 사용 범위 제한 없음 -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공동으로 영위	사업	사업범위 제한 없음. 주사업의 40% -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증진
시도지사 설립 신고	설립	중앙행정기관의 설립인가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	배당	이익잉여금 배당 금지
별다른 혜택 없음	혜택	비영리법인에 준하여 검토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조세이외의 부과금의 면세
잉여금의 10/100 적립	적립	잉여금의 30/100
정부지원 및 감독 없음	감독	정부지원 가능성 있음 업무 감독 및 감독상 명령 가능
정관에 따라 청산 가능	청산	잔여 재산 국고 등으로 환수 등
법인	법인격	비영리법인

16)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항.
17) 희망제작소, 협동조합법 해설서 참조.

□ 사회적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함.[18]

<표 7>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비교[19]

<table>
<tr><th>구분</th><th>회사
(주식, 유한, 합자, 합명, 유한책임)</th><th colspan="2">일반 협동조합</th><th>사회적
협동조합</th><th>사단법인</th></tr>
<tr><td>근거법</td><td>상법</td><td colspan="2">협동조합기본법</td><td></td><td>민법</td></tr>
<tr><td>사업
목적</td><td>이윤 극대화</td><td colspan="2">조합원 실익증진, 공익</td><td></td><td>공익</td></tr>
<tr><td>의결권</td><td>1주1표
(단, 합자회사는 1인1표)</td><td colspan="2">1인1표</td><td></td><td>1인1표</td></tr>
<tr><td>설립 방식</td><td>설립신고</td><td>신고</td><td colspan="2">인가</td><td>인가</td></tr>
<tr><td rowspan="3">성격</td><td>물적결합</td><td colspan="2">인적결합</td><td></td><td>인적결합</td></tr>
<tr><td colspan="2">영리법인</td><td colspan="3">비영리법인</td></tr>
<tr><td colspan="5">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제도)</td></tr>
</table>

18)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2항.
19) 희망제작소, 협동조합법 해설서 참조.

□ 사회적기업[20]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표 8> 사회적 기업의 정의[21]

학자	사회적기업의 정의
Campbell (1998)	사회적 목적을 갖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이윤을 사회적으로 보편화하고자 하는 조직
OECD (1999)	사회적기업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주된 목적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음.
Auteri (2003)	사회적기업은 순수한 사업에서 시도되어서 박애주의적 기업으로 변환된 조직으로, 박애주의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을 혼합하여 선택된 특별한 형태.
정선희 (2003)	사회적기업은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을 말함.
Pearce (2003)	사회적 목표가 있고, 이윤배분이 금지되며 민주적이고 책임있는 공동소유구조를 가진 모든 기업을 지칭하는 일반용어.
엄형식 (2005)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이라는 유형의 조직이 앞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유럽 각국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 특히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비영리단체들이 사회적 서비스 전달에 참여하고, 시민단체들이 주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개념화한 것임.
임혁백 외 (2007)	사회적기업은 비이윤 추구적인 사회적경제를 운영하는 기업임.
최종태 외 (2008)	사회적 기업 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으로 인식되며, 원래 사회의 저소득층이나 노숙자, 그리고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 설립을 모색 중이던 미국의 비영리활동가들에 의해 사용되었음.

2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정의.
21) 자료, 이은선(2009) 재인용.

○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기업 명칭을 사용하려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한 '사회적 목적 추구와 이를 위한 영업 활동'의 조건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본 조건만 충족 시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됨.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봄.

□ **자활기업**[22)]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을 의미.

○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자활지원사업 전문 사회복지시설. 1996년 5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확대되어 현재 전국 247개, 서울 31개 지역자활센터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근거리 일터를 만들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생산, 나눔, 협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음.

○ 자활근로사업: 장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정기준(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 또는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사업.

○ 자활공동체라고도 하며,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근로의지가 증대된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형태를 띰.

22) 서울사회적경제포털 홈페이지 (http://sehub.net).

□ **마을기업**[23]

○ 마을기업이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실현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임.

○ 마을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협동적 관계망 구축은 기업운영의 기초가 됨.

3)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 외의 조직

□ **법인(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외)**

○ 학술, 종교, 자선를 비롯하여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민법 제32조),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음.

○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됨.

○ 비영리법인의 목적이 공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과 그렇지 않은 비영리 비공익법인으로 구분됨.

○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은 담당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학교, 종교기관, 복지기관 등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 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적용을 받음.

○ 단체의 등록은 주무관청 인가의 성격을 지님.

23) 서울사회적경제포털 홈페이지 (http://sehub.net)

□ 연구소 등 연구기관

○ 비영리 연구기관은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며, 소셜벤처 생태계 내에서 연구 뿐 아니라 중간지원 및 연계조직, 임팩트 투자기관의 역할까지 수행 중에 있음.

3. 소셜벤처의 출현 및 활성화 정책

1) 소셜벤처의 개념

□ 최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직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년 중심의 소셜벤처는 '벤처기업' 혹은 '창업가'라는 인식으로 인해, 현재까지 기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음. 김진수 외(2016) 는 소셜벤처를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혁신 또는 혁신적인 접근방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사업의 확장 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접근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정의함.[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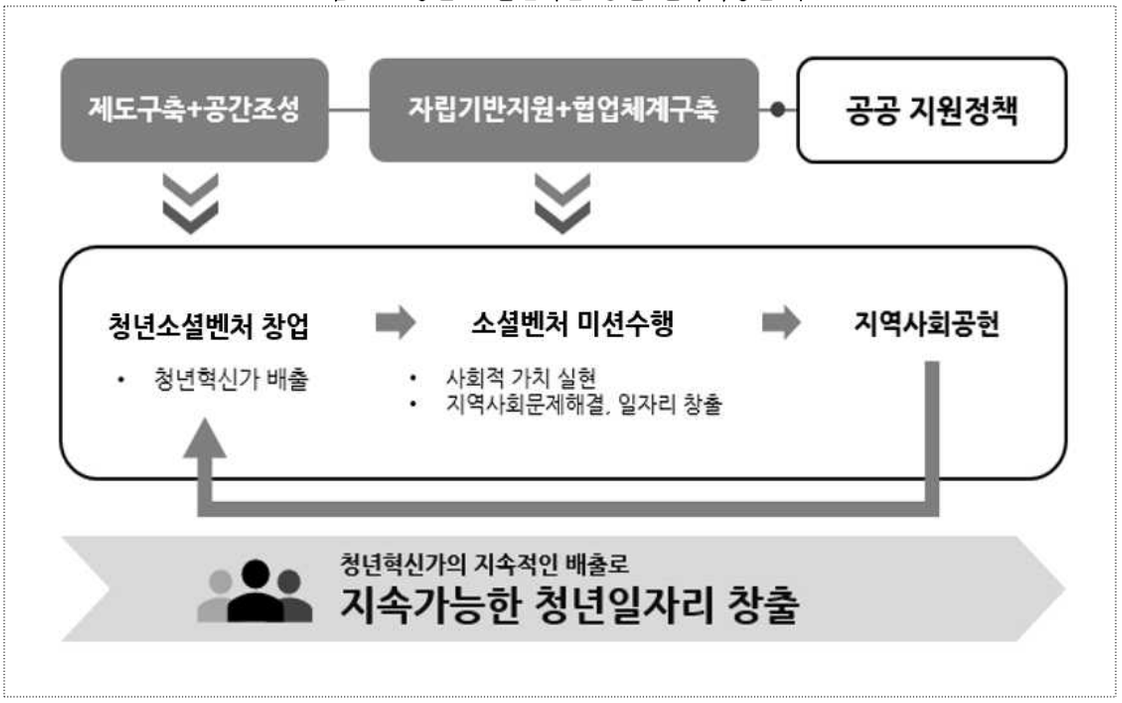
□ 현행 관련 법률의 개정 추세 및 민간 소셜벤처 생태계의 흐름으로 볼 때 비영리단체, 법인을 아우르는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의 확장된 형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청년 소셜벤처의 등장 및 역할

□ (청년 소셜벤처의 등장) 청년기업의 낮은 생존율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의 주 목적이 영리추구가 아닌 청년문제 해소,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청년 소셜벤처의 등장

24) 김진수 외 2016.「소셜벤처 창업하기」서울: 청람. 48쪽.

<그림 3>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일자리창출 구조



□ (청년 소셜벤처의 역할) 청년 소셜벤처는 <그림 3>과 같이 사회혁신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임. 먼저 제도 구축과 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소셜벤처 창업의 기회를 제공함. 자립기반 지원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소셜벤처 미션(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을 수행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셜벤처는 공공부문 정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기능하게 됨. 소셜벤처 생태계는 결국 지역사회에의 공헌으로 귀결되며, 이는 다시 청년혁신가 배출과 소셜벤처 창업으로 연결되면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됨.

□ (성동구 소셜벤처 밸리 형성)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중심으로 소셜벤처의 창업과 이주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소셜벤처 밸리' 형성

3) 소셜벤처 활성화 정책

□ 국내의 경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기조를 보면,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확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대응으로 구분됨.

□ 먼저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확립을 보면, 첫째, 현재 정부주도에서 민간·지자

체의 역할이 강화하고 있음. 둘째, 농·수·신협 포함한 정책대상을 확대로 사회적 가치 강화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음. 셋째, 현재는 창업·홍보·직접 지원 위주이나 맞춤형 내지 간접 지원의 필요성을 지님. 넷째 종합조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대응으로 첫째,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사회적경제활성화 방안을 2017년 10월 발표하였음. 둘째, 금융(금융위), 인력양성(고용노동부), 지자체 역할 제고(행안부) 등 분야별 중장기 개선과제를 담당부처별로 2017년 12월 발표함. 셋째 사회적경제 관련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판로지원법을 추진 중에 있음. 넷째 기획재정부에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늦어지는 상황).[25)]

□ 정책대상에 대한 판별기준 부재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소셜벤처 기준 마련과 객관적 가치평가 체계 도입 소셜벤처 기업가와 공공기관, 임팩트투자사 등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세부 기준안을 마련(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발표). 국내 500여 개로 추정되는 소셜벤처에 관해 올해 4분기 중 판별기준 가이드라인 확정 예정

□ 기술보증기금과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민간 투자사와 공동으로 소셜벤처 전용 가치평가 모형도 만든다.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인 점수나 등급으로 평가해 융·보증, 연구개발(R&D) 자금 등 정책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 소셜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가칭)도 운영할 예정이며, 민간 투자사와 은행 등이 투자할 때 필요한 평가모델도 구축할 예정임.[26)]

25)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7년 10월, 13쪽.
26)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소셜벤처는 다른 기업과 달리 정확한 법적 정의나 평가 기준이 없던 탓에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며 "혁신적인 소셜벤처가 제대로 대접받아 손쉽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 머니투데이, “중기부, '소셜벤처' 정책지원 근거 마련.” 2018.5.17.

제 3장. 소셜벤처(Social Venture)의 정의와 분류

1. 중앙행정기관의 관점에서 본 소셜벤처

1)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의[27)]

□ **사회적기업**

○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소셜벤처**

○ 영리목적의 경영활동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 벤처기업, 사회적경제 분야 기업, 일반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포함.

□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 설명회 개최(11.7.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 판별가이드라인의 목적(12월까지 보완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

○ 벤처기업으로서의 혁신성장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성을 확인하여 소셜벤처기업을 판별

○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의 소셜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투융자, R&D 지원사업 등)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

○ 현재 중기부의 소셜벤처기업 오픈바우처 지원사업에 활용

27)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셜벤처기업 평가모형 설명회" 자료 참조(2018.11.7).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정의

□ **소셜벤처**

○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으로 정의.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에서 사회적 기회를 찾는 것(이를 구현해내는 사회적기업가의 아이디어, 도전정신, 열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함)이 중요함.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벤처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사회적 기업과는 구분되나, 민관 차원의 명확한 개념은 확립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률도 없음.

□ **사회적기업과의 차이**

○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운영 원리는 유사하지만,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기업에 비해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에 의한 설립 기준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과 형태를 통해 더욱 도전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28] 소셜벤처는 벤처 정신에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담는 것을 의미.

2. 서울시의 관점에서 본 소셜벤처

1) 사회문제와 사업모델을 연계한 '기업'으로 정의.[29]

□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모델(BM)을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함.**

□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사회적기업과 혼동하는 등 소셜벤처의 혁신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고 진단.**

---

2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foundation/training_sintro_concept.do)
29) 고동현 외, (2018), 19-21쪽.

□ 소셜벤처는 기존의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현재까지 소셜벤처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임.

3. 성동구의 관점에서 본 소셜벤처

1) 사회적경제기업[30]과 벤처기업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 조직

2) 사회적 가치를 의미하는 소셜(social)과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의미하는 벤처(venture)의 합성어

3)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혁신과 지역사회문제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조직, 기관

4. 학술기관의 관점에서 본 소셜벤처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2014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자료)

□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기업가(social entrepreneur)가 설립한 기업 혹은 조직이며, 사회적기업과 벤처의 특성을 함께 가진 조직으로서, 사회문제(사회적기업의 특성)를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모델(벤처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기업으로 정의함.

30) 사회적경제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경제단체.

□ 또한 소셜벤처를 창업 이전, 창업과정, 창업 이후 성장 단계의 3개 단계로 구분하여 특성을 정리하고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을 설명함.[31]

2)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2017 「공익과 인권」 제17호)

□ 벤처기업이라는 형태에 사회적가치를 접목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 제도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인식함.

5. 해외기관의 관점에서 본 소셜벤처

1) 미국의 경우, 버추벤처스(사회적 기업 컨설팅 업체)는 소셜벤처를 사회적 문제 혹은 시장 실패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목적과 경제원리, 혁신성에 기반한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비즈니스 벤처로 정의함.

2) 영국의 경우, 영파운데이션(사회혁신단체)은 소셜벤처를 '사회적 문제를 다루지만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현재의 아이디어를 확장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조직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으로 정의함.[32]

31) 한국교육기술대학 산학협력단. 2014. 소셜벤처 지원을 통한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15쪽.
32) 김진수 외, 전게서 31쪽.

6. 소셜혁신연구소의 관점에서 본 소셜벤처

1) 소셜벤처의 사회적 정의

□ 인권, 평등, 자유, 평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관, 기업, 조직.

□ <그림 4>에서처럼 소셜벤처는 벤처기업과 혁신적 비즈니스라는 부분의 공통분모를 갖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외에도 비영리조직(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공익법인을 아우르는 형태)을 아우르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유연한 정의를 시도함.

<그림 4> 소셜벤처의 범위



2) 소셜벤처의 제도적 정의

□ 현행법 체계에서 규정한 모든 형태의 기업 및 법인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혁신성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경제단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증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호,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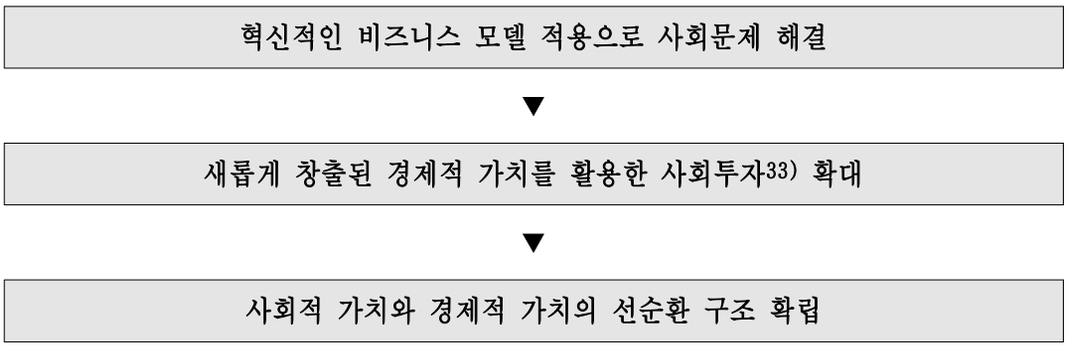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이 정의한 마을기업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연계 및 선순환을 지향하는 경제단체

제 4장. 소셜벤처(Social Venture)의 현황

1. 소셜벤처의 운영 구조

□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수익을 활용한 사회투자 확대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 구조 확립



2. 소셜벤처의 분류와 특성

1) 소셜벤처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34)

□ 사회적 가치는 궁극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변화를 낳는 가치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 즉, 시장의 실패, 복지국가의 한계, 시민사회의 위기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특정 부분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는 부문간 융합,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해결방식을 추구함.

□ 시장의 실패를 정부로 대체하거나 정부의 실패를 시장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새로운 융합을 통해 문제의 해법을 찾아감.

□ 해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첫째,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둘째, 가속화되는 기술적, 경제적 발전의 기반 위에서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진화했고 진화할 것인지 예상해야 함.

33) 사회투자 ① 지역공동체와 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자발적인 재정 및 비재정적 공헌활동 (유엔글로벌컴팩트) ② 사회적목적과 재정적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행위(영국 빅소사이어티 재단)
34) 20-21쪽.

셋째, 사회적경제의 양적 확대를 넘어 가치의 확장이 필요함.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와 측정에 대한 재평가가 절실함.

2) 일반 벤처기업과 소셜 벤처기업

□ **일반 벤처기업**

○ 첨단 신기술 및 아이디어의 개발을 중시하며 도전정신을 지닌 창조적 중소기업으로 정의함.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혹은 위험기업으로 부름. 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중소기업'으로 정의함.[35]

□ **소셜 벤처기업**

○ 벤처기업의 정의에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이 추가됨.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것이 소셜벤처 기업이 갖는 뚜렷한 특징.

3) 일반 기업과 소셜벤처 비교

□ **일반기업 : 고수익 창출을 의도한 기업가에 의해 운영되며 주식 및 채권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

□ **소셜벤처 : 사회문제를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과 공유기회로 전환하는 사회혁신가에 의해 운영되며, 자체 수익과 사회투자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조직활동의 성과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투자.**

35) 두산백과사전 참조.

<표 9> 소셜벤처의 특성 : 일반기업, 사회사업단체와의 비교

구분	일반 기업		소셜벤처		사회사업단체
주체	기업가 entrepreneur		사회혁신가 social entrepreneur		사회활동가 activist/philanthropist
목적	고수익 창출 통한 경제적 가치 극대화	⇨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공동추구 및 선순환	⇦	약자 구제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보존
재원	주식/채권 등 투자유치		사회투자 + 공공지원		공공지원/사회기부
환원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		상호적 성과공유/ 사회투자 확대		일방적 지원과 수혜

4) 사회사업단체와 소셜벤처 비교

□ **사회사업단체 : 사회복리 증진을 추구하는 사회활동가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지원 및 사회기부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계 지원사업 등 추진**

□ **소셜벤처 : 사회윤리적 목적의식과 비즈니스적 방법론의 융합을 통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선순환을 추구,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자립 기반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주력**

3. 국내 소셜벤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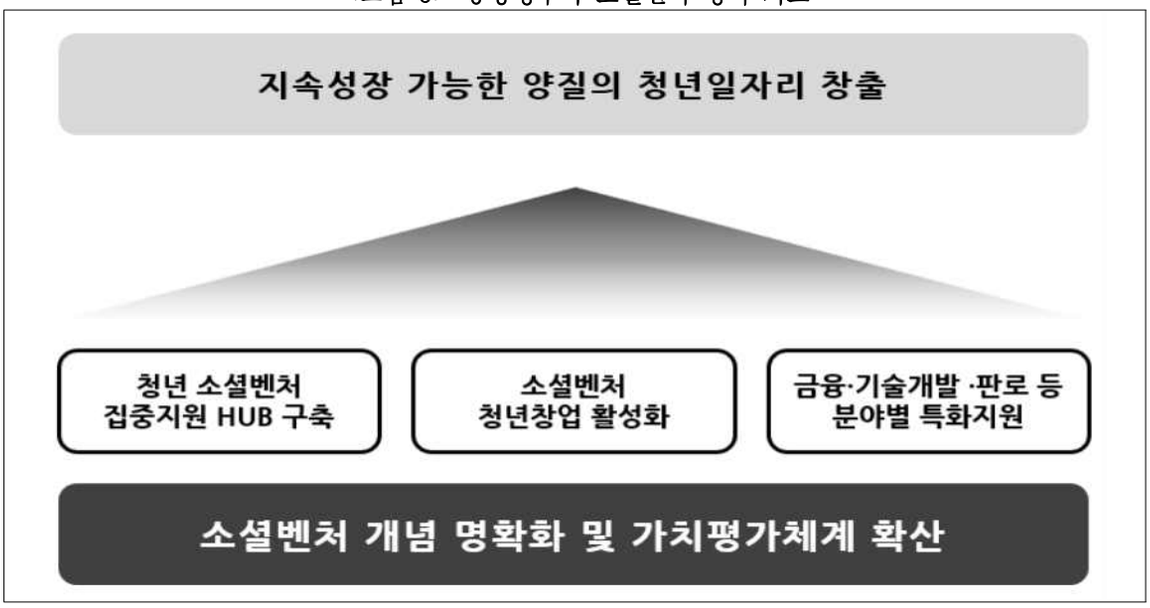
3.1. 중앙행정기관의 소셜벤처 현황 및 정책

1) 민간의 자생적인 동태를 사회적 가치 지향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시키

기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함.[36]

□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및 향후 과제를 도식화하면 현재 소셜벤처 개념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회적경제기업과의 범주 구별의 어려움. 사회적 인증에 구애받지 않는 소셜벤처의 사회성 대비 혁신성에 관한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

<그림 5> 중앙정부의 소셜벤처 정책 기조



참고 : 기존 정책대상과 차이점

구분	벤처기업 [3만5천여개]	사회적기업 [1,937개]	소셜벤처 [500여개 추청]
법정정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	없음
정책대상 판별기준	확인서 발급 • 벤처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기관이 선별·확인	사회적기업 진흥원 인증 •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 등 인증요건 충족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판별
추구가치	사회성 < 혁신성 • 신기술기반 고수익 창출	사회성 > 혁신성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성 & 혁신성 동시 추구 • 혁신기반 사회가치 창출

36)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년 5월 16일),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참조

정책과제	일정 · 주관부처	
1. 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평가체계 구축		
(1) 민간 주도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마련	‘18.3분기	중기부
(2) 소셜벤처 실태조사 실시	‘18.3분기	중기부
(3) 소셜벤처 가치평가 모형 개발	‘18.3분기	중기부
(4)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가칭) 운영	‘18.3분기	중기부
2. 청년 소셜벤처 허브(HUB) 구축		
(1) (성수동)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19.1분기	성동구청·노동부
(2) (성수동) 소셜벤처 지원 전문 지원기관 선정·운영	‘19.1분기	중기부
(3) (지 방)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 소셜벤처 육성	‘19.1분기	중기부
3.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1) 청년 소셜벤처 바우처 방식 사업비 지원	‘18.4분기	중기부
(2) 대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과 연계 강화	‘19.상	대기업·중기부
(3) 소셜벤처 육성 팁스(Tips) 운영사 선정 및 창업 지원	‘18.2분기	중기부
(4) 생활혁신형 소셜벤처 정책자금(성공불융자) 지원	‘18.4분기	중기부
(5)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셜벤처 우대가점 부여	19.1분기	중기부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및 소셜캠퍼스 온 확대	‘18.3분기	노동부
4. 소셜벤처 성장촉진		
(1)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18.2분기	중기부
(2) 소셜벤처 맞춤형 금융(보증, 융자) 확대	‘18.2분기	중기부·금융위
(3) 소셜벤처 R&D 지원 확대(R&D기획, R&D 수행)	‘19.1분기	중기부, 과기정통부
(4) 소규모 소셜벤처 제품개발·판로 패키지 지원	‘18.2분기	중기부
(5) ODA 연계를 통한 소셜벤처 해외 판로 진출 지원	‘18.3분기	외교부
(6) 소셜벤처 성공사례 포상·홍보 및 교육 강화	‘18.4분기	중기부
(7) 창업선도대학 내 CSR 과정 설치	19.1분기	중기부

□ **사회적 가치의 계량화가 어렵고 소셜벤처의 목적성이 갖는 실질 가치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표 10> 기존 사회적가치 평가 모형 비교[37)]

구분	사회적기업진흥원 (SVI:Social Value Index)	SK행복나눔재단 (SPC:Social Progress Credit)	B-Corporation 제도(미국)
내용	○ 사회적 성과를 14개 세부 측정지표 측정 (계량 11개, 비계량 3개)	○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측정	○ 영리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평가
	○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화폐화가 어렵거나, 간접적 사회변화분은 측정제외	○ 2 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 홈페이지에상시 공개중
평가지표	○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지역사회협력 수준, 근로자 임금수준,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등	○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익증진, 자원소비 절감 성과, 공공예산 효율성 증대 성과 등	○ 기업미션, 소비자에게유익한 상품 여부, 환경개선 여부 등

❍ 영국·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GIIRS(Global Impact Investing Ratings System, 사회적기업 평가모형),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사회적 투자수익률) 와 같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와 모델들이 개발되어 이미, 소셜벤처 발굴 및 투자 현장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한국은 SK 그룹에서 개발한 환산공식을 통해 SPC(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적기업진흥원의 SVI(Social Value Index)와 미국의 사회적가치 평가 모형인 B-Corporation을 적용, 도입 단계에 있음.

* GIIRS(사회적기업 평가모형) : 분석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기업 성과 평가 및 비교분석

> GIIRS가 기존 BSC, B Rating, SIA 와 같은 임팩트 측정 도구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IRIS(Impact Report & Investment Standards)라는 언어체계를 사용한다는 점임. IRIS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공통된 언어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가치 측정의 국제적 기준을 제공함. GIIRS는 IRIS를 사용함으로써 투자자와 기업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비교성과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음.

* SROI(사회적 투자수익률) : 금융투자 대비 사회적·환경적 순이익을 화폐가치로 환산·측정

37) 별첨자료 5 를 참조.

SROI는 미국의 비영리재단 REDF가 제안해 영국의 NEF(New Economic Foundation, 신경제 재단)가 지원 및 공동 개발했으며 현재 국제적인 표준지표로 자리 잡고 있음.[38]

* SK 사회성과측정시스템

2015년부터 SK그룹이 자체 개발한 환산 공식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11> SK 사회성과측정시스템

유 형	측 정 내 용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이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 증가분과 고용의 질적 향상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게 더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싼값에 제공
환경문제 해결	친환경적인 생산방식과 환경 오염 개선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편익 제공
사회 생태계	낙후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개선과 발전에 기여

* 측정값을 토대로 사회적기업을 평가하고 우수한 기업에는 사회적 성과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일종의 사회공헌 활동임. 측정항목은 고용, 사회서비스, 환경, 사회생태계 성과 등이 해당함. 측정시기는 사업 시작 1개월 전, 종료 후 1개월 내외이며, 성과보상은 소셜벤처의 사회성과 측정 후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상함.[39]

□ **소셜벤처를 육성할 수 있는 외부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임팩트 투자는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임(`15년 540억원). 수익성이 낮은 소별벤처 기업가를 인내해주고 사회적 성과를 인정해주는 투자자 발굴이 필요함.**

* 재무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를 의미 세계 임팩트투자 규모(조원) : ('14)10.5→('15)15.2→('16)22.1→('17) 25.9.

□ **소셜벤처의 낮은 인지도와 영업망의 취약성은 국내외 판로를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으로서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38) 이데일리, "내가 한 착한 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2018년 10월 20일자.
39) 서울시(일자리노동정책관),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추진 계획" 참조

2)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 구축 현황[40]

□ 소셜벤처기업 판별 가이드 추진 경과

○ 정부는 2018년 5월 16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 5월 25일, 기금의 후속조치 계획 수립. 6월 17일~10월말, 소셜벤처전문가협의회 회의 진행, 사회적경제 관련 학계 및 기관의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판별가이드 및 평가모형 도출.

○ 판별가이드 확정(8월) 및 사용설명서 작성, 평가모형 잠정확정(9월) 후 세부 평가지표 보완, 사회성평가표 및 혁신성장성(제조업, 서비스업)평가모형(안) 확정. 항목 및 배정안 확정에 따라 시범평가 추진.

○ 11월 7일 소셜벤처기업 평가 모형 설명회 개최 이후 평가모형 확정.

□ 소셜벤처기업 판별가이드의 구성

○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셜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필요.

○ 소셜벤처기업 판별 가이드는 대상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영향 및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상기업이 소셜벤처의 속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연한 기준.

○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각각 판별하는 두 개의 판별표로 구성

사회성 판별표	혁신성장성 판별표
· 12개 항목 · 개발항목 중요도에 따라 5~100점 부여	· 14개 항목 · 개발항목 중요도에 따라 10~100점 부여

○ 국내외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성공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최소한의 판별 항목을 선정함.

40)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셜벤처기업 평가모형 설명회” 자료 2018.11.7.

□ 소셜벤처기업 판별 절차

○ 사회성 항목을 평가하여 판별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장성 평가를 진행.

○ 혁신성장성 항목을 평가하여 판별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소셜벤처기업으로 인정.

○ 위의 두 평가결과와는 별도로 자문위원회에서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인정하는 경우,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할 수 있음.

3) 소셜벤처기업 범용 평가모형[41]

□ 범용 평가모형의 구성(안)

○ 평가모형의 구성 : 소셜벤처기업 범용 평가모형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의 특징인 혁신성장성과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으로서의 특징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 사회성 평점과 혁신성장성 평점을 조합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

사회성 평가	혁신성장성 평가
평점 ①	평점 ②
가중합(=①×α+②×(1−α))	

○ 평가모형의 활용 : 범용평가모형을 활용할 기관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 분야별 가중치(α)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평가모형을 운용할 수 있음.

□ 사회성 평가모형

○ 목적

-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적 가치추구' 측면을 평가하기 위함

41) 중소벤처기업부, 전게서 참조.

○ 적용대상 범위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함.
- 창업 단계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함.

○ 개발과정

- 소셜벤처기업의 범위 설정,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현황 분석, 소셜비즈니스모델 분석, 소셜 임팩트 평가기준 및 소셜벤처기업 성공요인 분석 등을 통해 평가항목 도출.
- 소셜벤처기업 및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함.

○ 평가모형 관점과 구성

- 창출된 사회적 성과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와 성과 창출을 위한 의지, 지향성, 창출역량과 실행체계 등 사회성 전반에 평가의 초점을 맞춤.
- 사회적 성과 창출 실적뿐만 아니라 창출 가능성, 효율성, 지속성 등 질적 측면도 함께 평가함.

□ **혁신성장성 평가모형**

○ 평가항목 구성

- 시장환경 및 제품의 경쟁력(성장성)을 기반으로 평가대상기업 기술의 혁신성이 경영주 혁신역량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사업화 성공가능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음.
- 기업가 정신을 보유한 경영주가 기술, 제품 서비스의 혁신성을 통해 사업기회를 창출하여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에 근거하여 평가항목을 구성
- 소셜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고려
- 기존 벤처기업인증 평가항목을 준용하되 소셜벤처기업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하고, 혁신성장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핵심평가 항목을 도출하여 평가모형 구성

4)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셜벤처기업 평가모형의 활용[42)]

□ **2018년 11월 기술보증기금 주도의 소셜벤처기업 지원 전담 센터인 소셜벤처 기술가치평가센터 개소 예정**(성수이로 89, MG빌딩 5층)

□ **소셜벤처기업 지원사업 추진**

- SK :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하여 사회성과 우수 소셜벤처 선발, 투자
- 현대 : H-온드림 오디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신설, 판로 확보 등 인큐베이딩 지원.
- LG : 정부지원업체 중 친환경 분야 소셜벤처에게 공간지원(LG소셜캠퍼스) 및 교육, 멘토링 등 성장 지원.

5)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셜벤처기업 평가모형의 민간의 평가

□ **평가모형가 실제 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의 제시가 필요.**

□ **정부의 적극적인 평가 모형 구축과 지원 노력에 많은 민간과의 협력 효과를 기대하게 됨. 평가모형의 사장(死藏)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

□ **기존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소셜벤처 관계자들과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함. 반면에 현재로서 구축할 수 있는 최선의 평가모형이라는 반론도 존재.**

□ **창업 중심 소셜벤처보다 이미 진입한 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배점 기준을 소셜벤처 운용의 재무적 안정성에 가점을 주는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존재. 그러나 재무적 안정성에 높은 배점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외부 투자를 막는 부작용도 존재함.**

□ **평가모형에만 소셜벤처기업의 평가를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자체적으로 소셜벤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42) 중소벤처기업부, 전게서 참조.

3.2. 서울시의 소셜벤처 현황 및 정책[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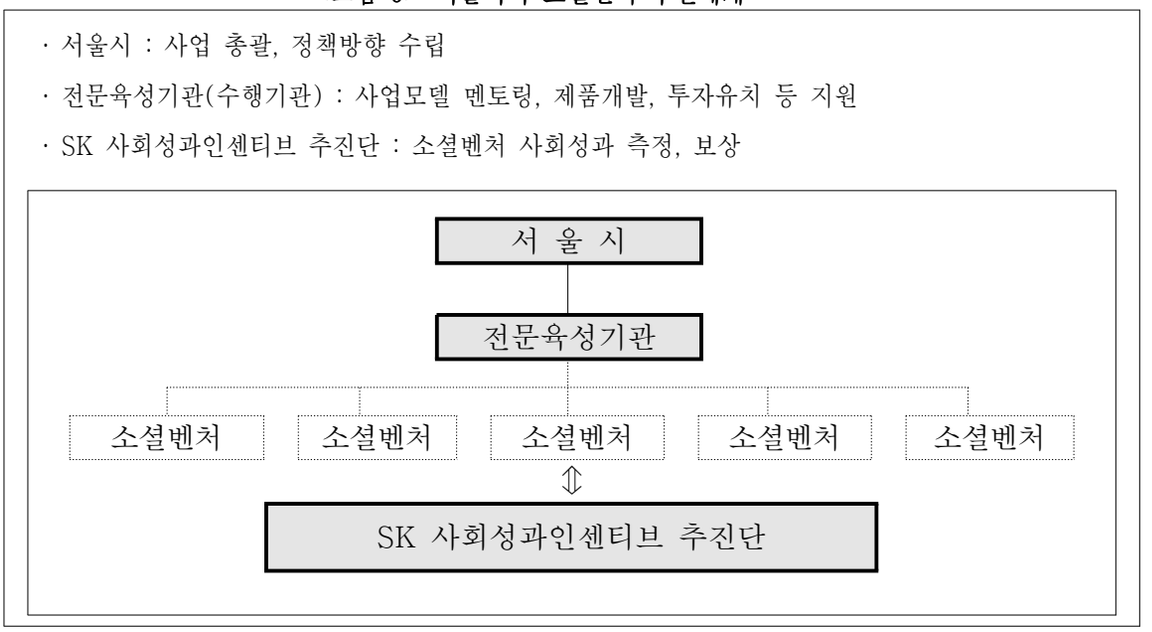
1)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지원생태계 구축[44]

□ 민간전문기관(공모)을 통한 소셜벤처 투자·컨설팅 등 지원

□ SK사회공헌사업과 연계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시스템 구축

□ 소요예산액 : 10억 원

<그림 6> 서울시의 소셜벤처 추진체계



2)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및 운용[45]

□ 자치구 청년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유휴공간을 확보한 자치단체 대상 공모를 통해 자치구 허브센터 조성 리모델링 비용(업무공간, 인큐베이팅, 공동회의실, 교육장 공간 등) 등 자본보조

○ 지원예산 : 2억원(자치단체자본보조)

43)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 소셜벤처 관련 현황 보고 자료. 2018.10. 참조.
44) 서울시(일자리노동정책관),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추진 계획" 참조.
45) 서울시(일자리노동정책관),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및 운영 계획" 참조.

□ **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추진**

○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1조, 제15조, 제16조

○ 공공의 유휴재산을 활용하여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대 및 유기적 협력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조성

○ 소셜벤처 15개사(100여명) 입주, 전문보육기관에 위탁·운영

○ '18년 공간 조성예산 : 4억원(시설비)

3.3. 성동구의 소셜벤처 현황 및 정책

1) 성동구 청년 현황 (20~40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기준)	인구증가율
청년인구 (비율)	99,040 (33.34%)	100,335 (33.52%)	102,798 (33.78%)	3.79%
성동구 전체 인구	297,003	299,259	304,236	2.43%

※ 성동구 전체인구 증가율보다 청년인구 증가율이 높음

2) 성동구 소셜벤처 현황 (2017년 7월 기준, 140개)

□ **사회적기업(9), 예비 사회적기업(19), 협동조합(15), 사회혁신기업(45) 등**

□ **최근 2~3년 사이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모여들면서 국내 최대의 '소셜벤처 밸리' 형성**

○ 2010년대 초반 강남 등 주변 유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분당선, 2호선 등 편리한 교통 환경, 서울숲 등 우수한 자연환경 등으로 사회적 기업, 청년 창업가들이 입주하기 시작.

○ 루트임팩트, 소풍 등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회사들이 입주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성수동이 '소셜벤처 밸리'로 소개되면서 소셜벤처와 더불어 관련 기업, 카페 등의 유입이 급속히 증가.

3.4. 성동구의 소셜벤처 지원체계

3.4.1. 제도구축

1) 기본조례

□ **서울시 최초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13년 7월).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 전국 최초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14년 12월)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 특별조례

□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2015년 9월).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로 소셜벤처의 안정적·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

□ **전국 최초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 지원 조례」 입법예고** (2017년 7월).

3.4.2. 공간조성

1) 복합문화창조공간 '언더스탠드에비뉴' 조성 (2016년 4월, 성수동)

□ **청년 창업자, 예술가 등의 취업·창업·자립을 위한 공간 제공**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소셜캠퍼스 온(溫) 서울' 개소 (2017년 4월, 성수동)**

○ 사회적기업가, 소셜벤처 등에게 업무공간 제공

□ **성동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관** (2017년 7월, 성수동)

○ 창업공간과 기업사무실 제공 (사회적기업 7개 업체 입주)

□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혁신 창업공간 (2017년 12월, 성수동)**

○ 창업공간 제공 (50개 공방)

3.4.3. 자립지원

1) 전국 최초,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기금 13억 조성 (2017년 2월)

□ **성동구 내 소셜벤처 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조성.[46]**

□ **소셜벤처의 신규사업 투자개발비 지원(10개 기업에 8억원 지원).**

46) 참여기관(5개): 소풍(대표 한상엽), HGI(대표 정경선), 크레비스파트너스(대표 김재현), 비플러스(대표 박기범), 논골신협(이사장 유영우)

2) 청년혁신가의 아이디어 공모 '청년 도전프로젝트' 추진 (2017년 5월)

□ **사회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의 참신하고 역량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지원 하여 청년 자립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개선.**

□ **(추진실적) 8팀, 총 5천만원 지원.**

3.4.4. 협업체계 확립

1) 문화예술인과 협업

□ **성동 디자인위크 개최** (2015년~)

○ 문화예술계 청년들이 주도하는 디자인 페스티벌로 관내 소셜벤처로 구성된 디자인위크 준비위원회와 성동구가 협업 추진.

○ 2018 성동 디자인위크 진행 (18년 9월 13일 ~ 15일).

2) 청년혁신가와 협업

□ **자발적인 지역기반 청년조직과 협력하여 성동청년플랫폼 형성**

○ 청년활동가 공간지원, 성동그라운드(네트워크 파티) 개최 지원

○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지원하는 '청년 도전프로젝트' 등 진행

3) 청년장사꾼과 협업

□ **뚝도시장 청춘상회 창업지원**

○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뚝도시장 점포와 부대비용 지원.

○ 15개소 런칭(F&B, 건강식품업, 공방, 아트숍 및 e시장 등).

○ 인테리어,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점포당 1700만 원 지원

4) 타 지원조직과 협업

□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소셜벤처 발굴·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7년 7월)

○ 소셜벤처의 발굴 및 육성, 성장을 위해 물적 교류 및 행정적 지원.

○ 소셜벤처가 참여하는 과제 개발 및 행사 발굴 등.

□ **한양대학교와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공동운영 업무협약 체결** (2015년 12월)

○ 창업동아리 및 스타트업 기업과의 교류.

○ 기업가정신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한양대·한양여대와 청년창업자를 위한 임대주택 '도전숙(宿)' 운영 업무협약 체결** (2016년 3월)

○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 도전숙 입주자에게 창업관련 실무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제공.

3.4.5. 소셜벤처 지원조직 현황

1) 중간지원조직

□ **루트임팩트** (2012년 설립, 성수동 – 2014년 7월 이전)

○ 건립목적: 사회혁신가(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

○ 주요사업

- 사회혁신가 공동주거 시설인 디웰(2014) 및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협업사무공간)인 헤이그라운드(2016) 운영.
- 사회적경제분야 직무교육 프로그램 '임팩트 베이스 캠프' 운영.
- 소셜벤처 인턴십 프로그램 '임팩트 챌린저스' 운영 등.

□ **언더스탠드에비뉴**[47] (2015년 설립, 성수동)

○ 건립목적: 사회적기반이 필요한 청년 창업자, 예술가 등의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주요사업

- 비영리 기관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이하 ARCON), 롯데면세점, 성동구가 공동으로 서울숲 진입로에 116개 컨테이너를 활용해 공익문화공간(언더스탠드에비뉴) 조성(2016년 4월)
- 언더스탠드에비뉴에 구성된 7개의 스탠드를 통해 청소년, 예술가, 사회적기업가, 지역 소상공인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사업 추진

47)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의미: 언더(under), 일어서다를 뜻하는 스탠드(stand), 길을 뜻하는 애비뉴(avenue)가 모여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라는 의미.

<표 12> 언더스탠드에비뉴 스탠드별 사업내용

스탠드명	사 업 내 용
유스 스탠드(Youth Stand)	취약계층 청소년 역량개발 및 직업훈련, 취업연계
맘 스탠드(Mom Stand)	이주여성 고용카페 등 소외계층 여성 자립지원
하트 스탠드(Heart Stand)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해소 및 위기가족 가족관계 강화 지원
아트 스탠드(Art Stand)	신진 예술가와 디자이너를 위한 전시·공연 복합홀
파워 스탠드(Power Stand)	클라우드 컨택센터 등 청년혁신 창업 지원
소셜 스탠드(Social Stand)	문화예술·디자인상품 편집샵 등 사회적·청년기업 지원
오픈 스탠드(Open Stand)	신진 사회적기업, 청년벤처, 예술가 팝업샵 지원

□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7년 설립, 성수동)

○ 건립목적: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

○ 주요사업

-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및 창업·성장 공간 지원
-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및 개발 지원으로 판로 확대
- 분야별 전문교육 및 멘토링 제공
- 사회적경제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한양여자대학교 소셜혁신연구소** (2018년 7월 설립, 성동구)

○ 건립목적: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구축과 공공 혁신정책 연구·개발·실행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지식기반형 소셜벤처

○ (소셜벤처 생태계 지원)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문화·경제·환경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소셜벤처 사례 발굴, 육성, 성장 지원.

- 소셜벤처 생태계 구축 관련, 소셜벤처 관련 입법 추진, 소셜벤처 협의체 구축 진행.
- 소셜벤처 경쟁력 강화 관련, 역량강화 멘토링 체계 구축, 공공구매 확대 사업 추진.
- 소셜벤처 저변 확대 관련 교육플랫폼 '소셜벤처이노스쿨' 운영, 소셜벤처 인식확산 사업 추진.

○ (공공혁신정책 연구, 개발, 실행) 청년, 도시, 환경, 평화, 생활, 인권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공공기관의 혁신 촉진.

- 정책개발 관련, 청년일자리 영역, 아동, 청년, 어르신 지원, 포용도시 정책 등 개발
- 정책실행 관련, 지식기반형 리빙랩 구축, 지방정부 연계 사업을 추진

2) 민간 투자기관

□ **소풍(Sopoong)** (대표: 한상엽, 2008년 설립, 성수동)

○ 소셜벤처 투자 및 인큐베이팅 기관

○ 투자기업(28개): 차량 공유기업 쏘카, 창작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 공간 공유 플랫폼 스페이스클라우드, 지식공유 플랫폼 위즈돔, 농부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크루우드펀딩 '농사펀드' 등

□ **HGI 대표** (대표: 정경선, 2014년 설립, 성수동 소재)

○ 소셜벤처 투자 및 가치기반 도시(부동산)개발 사업

○ 투자기업(10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생생농업유통, 일자리를 통해 빈곤을 퇴치하는 두손컴퍼니, 위안부 할머니들이 만든 디자인 상품을 판매하는 마리몬드, 전 세계 나무를 심는 트리플래닛 등

□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김재현, 2005년 설립, 성수동 – 2015년 이전)

○ 소셜벤처 투자 및 사무공간, 인큐베이팅 제공

○ 투자기업(12곳): 전세계 나무를 심는 트리플래닛, 시각장애인을 위한 만지는 시계를 출시한 이원(Eone) 타임피스, 중고 스마트폰 배터리를 보조배터리로 만드는 인라이튼 등

□ MYSC (대표: 김정태, 2011년 설립, 성수동 소재)

○ 소셜벤처 투자 및 대기업 대상 사회혁신 컨설팅 진행

○ 투자기업(6개): 셰어하우스를 제공하는 우주(Woozoo),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

로 실내용 외풍차단 텐트를 판매하는 바이맘, 탈북청년이 창업한 카페 요벨 등

□ **D3쥬빌리** (대표: 이덕준, 2011년 설립, 성수동 소재)

○ 기술기반의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

○ 투자기업(34개): 가계 부채 상담 지원하는 희만사, 맞춤형 수학교육 콘텐츠 플랫폼인 노리(KnowRe), 인도의 저소득층 환자 방문 진료서비스 세바몹(Sevamob), 모바일 헬스케어 스타트업 눔(NOOM) 등

3) 광역 중간 조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0)

○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 (주요사업) 사회적기업 업무공간 제공, 경제적 지원, 네트워크 형성 등 지원.

□ **사단법인 씨즈** (2010)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모델 개발, 섹터 간 거버넌스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 주요사업

-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및 지원: 사회적기업가 인큐베이팅 센터(서초창의허브 등) 운영.
-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발굴·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젝트(H-온드림오디션) 주관

□ **현대 정몽구 재단의 H-온드림 오디션** (2012)

○ H-온드림 오디션을 통해 청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 (주요사업) 현재자동차 미소금융재단 및 현대차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컨설팅, 창업교육 기회 등 제공

□ **행복나눔 재단** (2005)

○ 나눔의 방법을 혁신하고 나눔의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공헌 전문 재단

○ 주요사업

- 사회적기업가 양성 위한 '세상스쿨', '사회적기업가 MBA' 제공
- 우수 사회적기업 발굴 위한 '세상, 사회적기업 컨테스트' 개최
- 비즈니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세상스쿨세상 워크샵' 제공 등

3.4.6. 소셜벤처 지원공간 현황

1) 카우앤독 (2015년, 민간-소풍)

□ **소재지: 성동구 성수동**

□ **규 모: 1,141㎡**

□ **내 용**

○ 사회혁신가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 협업 사무공간) 제공

○ 엔스페이스, 씨프로그램 등 10개기업 입주

2) 언더스탠드에비뉴 (2016년, 관)

□ **소재지: 성동구 성수동**

□ **규 모: 265.9㎡**

□ **내 용**

○ 비영리기관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이하 ARCON), 롯데면세점, 성동구가 공동으로 조성한 민관 협력모델로 서울숲 진입로에 116개 컨테이너를 활용해 조성

○ 사회적기반이 필요한 청년 창업자, 예술가 등의 취업·창업 공간 제공

3) 소셜캠퍼스 온(溫) (2017년, 관)

□ 소재지: 성동구 성수동

□ 규 모: 683㎡

□ 내 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청년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조성한 통합지원센터

○ 초기창업 70팀 입주(고정 사무공간 50팀 + 오픈공간 활용 20팀)

4) 성동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7년, 관)

□ 소재지: 성동구 성수동 (성동상생도시센터 내)

□ 규 모: 208㎡

□ 내 용: 7개 사회적경제기업에 창업공간과 사무실 제공

5) 헤이그라운드 (2017년, 민간-루트임팩트)

□ 소재지: 성동구 성수동

□ 규 모: 6,600㎡

□ 내 용

○ 성장기업대상 공유오피스, 개인 및 소규모 그룹대상 오픈형 협업 공간 제공

○ 마리몬드, D3쥬빌리 등 소셜벤처, 스타트업, 투자 기관 500개 입주

6)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혁신 창업공간 (2017년 12월 오픈, 민관협력)

□ 소재지: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지하3층

□ 규 모: 2,806㎡

□ 내 용: 30개 문화예술 공방으로 운영하며, 관내 기업에게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

3.5. 소셜벤처(밸리) 지원 현황 (2017년, 성동구)

3.5.1. 기반조성(소셜벤처 지원근거 및 추진조직 마련)

1) 청년 소셜벤처 지원 조례 제정 (17년 9월 제정)

□ 조례명: 청년 소셜벤처 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청년 소셜벤처 및 사회적 가치 등의 정의

○ 지원사업 및 육성구역 지정 등

2) 청년 소셜벤처 지원정책 추진 전담조직 설치 (17년 하반기)

□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

3.5.2. 청년 사회혁신가 발굴·육성 지원 (소셜벤처에 대한 인식 전환)

- 대기업과 공공기관 취업만을 고집하는 경직된 일자리 인식 개선
- 사회적가치를 비즈니스로 실현하는 소셜벤처 활동가와의 멘토링 형성
- 소셜벤처 창업과 사회가치 실현분야의 창직에 대한 인식 전환

1) 100개의 기업과 함께하는 『청년소셜벤처 컨퍼런스』 개최

□ 주제: 청년 소셜벤처와 함께하는 “100가지 혁신을 상상하다.”

□ 대상: 대학생·청년, 취업준비생, 특성화고교생, 사회혁신가 등

□ 내용: 청년 소셜벤처의 사회혁신비즈니스 소개부스 운영, 취업알선 등

2)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시선 『상상교실』 운영

□ 대상: 대학생·청년, 취업준비생, 특성화고 학생 등 100명(회차별)

□ 내용: 청년 소셜벤처 활동가 12인의 사회를 바꾸는 사회혁신비즈니스 강좌

□ 운영: 4주간 온·오프라인 혁신상상 강의(온라인10강/오프라인2강)

3) 10인의 혁신상상가를 만나는 『네트위킹 파티』 개최

□ 대상: 대학생·청년, 취업준비생, 특성화고 학생 등

□ 내용: 청년 소셜벤처 활동가 10인과 벌이는 난상토론

3.5.3. 창업지원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시장 적용 가능한 사업 아이템으로 전환
- 아이템에 적합한 맞춤형 비즈니스모델 설계 지원
- 열린 경쟁 PT와 공모를 통한 실질적인 창업 역량 강화

1) ICT 기반 청년 소셜벤처 지원 플랫폼 구축 (18년 하반기)

□ **민·관·학 지원정책을 포괄하여 성장 발전 단계별 맞춤형 온라인 시스템 구축 (웹 기반 온라인 플랫폼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민간 중간지원조직, 중앙·지방정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소셜벤처 지원사업 수집 및 발굴

○ 수혜자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각 주체 간 연계사업 지원을 위해 성동 소셜벤처 네트워크 구성**

2) 예비창업자와 사회혁신가 발굴 위한 '싱킹페스티발' 개최

□ **주제: 예비창업자들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다른 생각, 도전이 된다."**

□ **내용: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재정, 공간 등 지원하여 사업화**

3) 예비창업자 혁신창업컨설팅 『도전교실』 운영

□ **대상: 대학생·청년, 취업준비생, 예비창업자 등**

□ **내용: 6주간 아이템 개발 → 비즈니스모델 설계 → 창업 단계별 교육**

3.5.4. 성장지원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역량 강화)

- 사업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등 기업의 구체적 시장적합도 진단.
- 공간지원, 투자·융자 등 기업성장단계 맞춤형 지원정책 연계.
- 공공기관과의 구체적 협업 기획 및 사업 모색.

1) 청년 소셜벤처 EXPO 개최 (2017년 11월)

□ **장소: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 일대**

□ **대상: 성동구 소셜벤처 및 투자기업**

□ **내용**

○ 중간지원조직 투자설명회

○ 소셜벤처 취업박람회 및 홍보관 설치

○ 유통 및 마케팅 전문가들을 통한 청년기업과 교육 및 상담

2) 소셜벤처 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성장교실』 운영

□ **대상: 신규 소셜벤처 활동가**

□ **내용: 4주간 시장적합도 진단, 시장적합도 향상을 위한 그룹코칭**

3) 청년 소셜벤처 네트워크 활성화

□ **청년 소셜벤처와의 만남 행사 등 소통 네트워크 정례화**

□ **소셜벤처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파티 개최 등**

4) 청년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지역협력기금 운용

□ **내용: 성동구 내 소셜벤처 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민관공동 13억 조성**

□ **현황: 소셜벤처의 신규사업 투자개발비 지원 (17년 10개 기업, 8억원 지원)**

5) 협업사업 추진

□ **제 3회, 제 4회 성동 디자인위크 추진** (2017년 10월, 2018년 9월)

○ 청년 소셜벤처로 구성된 디자인위크 준비위원회와 협력 추진

□ **청년 사회혁신가와 함께하는 네트워킹 파티 '성동그라운드' 개최**

○ 자발적인 청년모임(성동청년플랫폼) 통해 아이디어 공유 및 사업화

3.6. 성동구 주요 소셜벤처

1) 마리몬드

□ 기업개요

기업명 (대표)	주요사업	설립연도	소재지	비고
마리몬드 (윤홍조)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작한 디자인 제품 생산	2012	성동구 성수동	

□ 사업내용

○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작한 작품을 응용한 플라워 패턴으로 의류와 액세서리 등 디자인 제품 생산

□ 사업성과

○ 수익 중 일부를 위안부 관련 단체와 기금에 5억원 기부(`16년 12월 기준)

□ 2015년 유명 연예인이 마리몬드 스마트폰 케이스와 의류를 착용해 유명세를 타 매출 증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매출액	4억4천만원	16억3천만원	44억9천만원	
직원수	7명	14명	40명	

2) 위누(weenu)

□ 기업개요

기업명 (대표)	주요사업	설립연도	소재지	비고
위누 (허미호)	아티스트와 문화소외계층을 잇는 예술 공유서비스	2007	성동구 성수동	

□ 사업내용

○ 아티스트와 문화소외계층을 잇는 공유서비스

○ 예술가들에게는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문화소외계층에게는 예술향유 기회를 제공

○ 2012년부터 100인의 젊은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환경예술 페스티벌인 아트업 페스티벌 추진

○ 2015년부터 성동디자인위크 추진 (성동구 협업)

○ 사업성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매출액	2억7천만원	4억5천만원	8억4천만원	
직원수	8명	10명	14명	

3) 점프(Jump)

□ 기업개요

기업명 (대표)	주요사업	설립연도	소재지	비고
점프 (이의헌)	취약계층 청소년과 대학생을 연계하는 교육사업	2011	성동구 성수동	

□ 사업내용

○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력증진과 사회적응을 위해 대학생을 선발하여 이어주는 교육봉사

□ 사업성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매출액	13억1천만원	13억4천만원	17억1천만원	
직원수	6명	9명	12명	

4) 두손컴퍼니

□ 기업개요

기업명 (대표)	주요사업	설립연도	소재지	비고
두손컴퍼니 (박찬재)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한 물류대행서비스	2012	성동구 성수동	

□ 사업내용

○ 노숙자 등 취약계층 채용을 통한 물류대행서비스 등 사업 추진

○ 종이옷걸이를 마케팅 플랫폼 사업으로 출발하여 2015년부터 물류대행 사업(물품보관 및 포장배송)으로 확장

□ 사업성과

○ 마리몬드 등 성수동 내 소셜벤처들과 물류파트 협업을 통해 급성장

구 분	2015년	2016년	비고
매출액	2억	14억	
직원수	3	20명	

5) 소녀방앗간

□ 기업개요

기업명 (대표)	주요사업	설립연도	소재지	비고
소녀방앗간 (김민영)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한식밥집 운영	2014	성동구 성수동	

□ 사업내용

○ 생생농업유통(경북 청송의 농산물 유통기업)을 통해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아 운영하는 한식당

□ 사업성과

○ 배용준 등 연예인들이 방문하면서 유명세를 탔으며, 현재 서울숲시작점, 커먼그라운드 건대점 등 8개 지점으로 확장

○ 생산자에게 합리적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자에게 좋은 생산물을 제공하여 농촌 어르신 소득증대와 도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4. 해외 소셜벤처 사례

1) 탐스슈즈 (미국)

□ **고객이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하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한 켤레의 신발 기부, 미국의 신발업체로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하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한 켤레의 신발 기부, 초창기 기부 목표량이 200켤레였을 정도로 소규모 사업장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30여개국에 지부를 둔 글로벌한 브랜드로 성장**

2) 리모션디자인 (인도)

□ 인공관절 '자이푸르니'를 저개발국가에 저렴하게 판매

3) 딜라이트 (미국)

□ 등유 랜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등기구 '포에버 브라이트(Forever-Bright)를 개발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국가에 공급

4) 아쿠아덕트 (미국)

□ 물을 실어 나르는 기능과 물 저장장치 역할이 가능한 자전거를 개발하여 저개발 국가의 식수문제 해결에 기여.

5) 빅이슈 (영국)

□ 노숙인 자활을 돕기 위해 창간한 대중문화잡지, 영국에서 창간한 대중문화잡지로, 홈리스(노숙인)에게만 잡지판권을 부여해 자활 계기를 제공.

□ 버락오바마, 데이비드 베컴 등 유명인이 재능기부(무료 표지모델)로 이슈화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포함 세계 10개국에서 15종 발간.

제 5장. 청년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제도적 환경 분석

1. 소셜벤처의 사회적 수요 증대

1.1. 청년 일자리창출과 포용국가 기조 실현

1)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기조

□ 2018년 10월 19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포용성을 모든 경제와 사회 분야로 확대해야 함”을 강조.

□ 즉 모든 사회 분야에서 포용의 가치를 우선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며 경제성장의 혜택을 많은 사람과 나누어야 함을 강조.

2) 청년 창업의 중요성

□ 2018년 5월 15일, 포용적 혁신성장 포럼 주최,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김진태 포럼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과 재창업,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

□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포용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관련,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 규제와 대기업과의 경쟁, 사회안전망 부족 때문에 환경이 척박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에 힘써 창업 투자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민간 주도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

1.2. 사회적 가치 실현 : 공공 서비스 수요 증대

1)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양극화, 고령화, 저출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및 소셜벤처의 위상 강화

□ 유럽연합의 경우, 경제와 고용 위기 하에서 취업난에 직면한 계층의 통합에 소셜벤처가 제 기능을 했다고 평가됨.

□ 한국 역시 다양한 소셜벤처 육성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복원 등에 기여할 필요가 증대됨. 그러나 유럽연합에 비해 고용비중은 1/4에 그치고 있음.

* '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인데 비해 EU 28개국 평균은 6.%임.[48)]

2.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2.1. 행위자에 관한 제도적 규정

1)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혁신기업을 포괄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상이한 법적 근거 위에 존립함에 따라 지원·육성정책도 분절적으로 추진.

□ 사회적 가치실현,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 성과 공유 등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과 경영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개념 정립 및 지원육성책 필요.

<표 13> 사회적경제기업별 관련 법령

구 분	관련 법령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육성법」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7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48) 관계부처 합동 회의.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2018.7.3. 1쪽 참조.

2.2. 체계적인 시스템의 미비

□ 소셜벤처 영역에서 활동할 청년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소셜벤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함

□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미비는 인프라의 부족을 야기하고 소셜벤처 생태계의 위축이라는 악순환의 구조를 초래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격별로 담당 부처가 상이하다는 것도 실태파악과 정책개선 등에 부정적 요인임.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재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음

□ 정부 부처의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적 양성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인 문제가 상존함. 정부지원으로 육성된 소수만 자립운영이 가능하며, 자활기업의 과반 이상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함. 유사 사업군임에도 고용노동부를 비롯 다수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되어 중복지원되는 경향은 정부 지원체계의 사회적경제 통합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방증함

□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각 기관 간 연계와 협업 그리고 통합을 중시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구축된 거버넌스를 통해 정부의 지원 체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제고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며,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관리체계를 단일화하는 한편,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 중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과거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국토부의 마을만들기 사업 등 다수의 파편화된 정책 사업들은 각 부처의 독자적인 고유사업으로 고립화 되지 않고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과 진화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통합·연계 되도록 개편될 필요를 지님.[49] 시스템 정비는 공청회 등 사회적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마련된 법제도적인 틀 하에 진행되어야 함

49)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4.4.10.

2.3. 개념과 법제의 취약성

□ 지원대상인 소셜벤처의 범위에 있어서도 본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유연한 정의처럼 EU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EU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에 협회·공제회 등을 포함하나 한국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상 조직에 국한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소셜벤처의 경우 하위 조례들을 선도할 상위법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대상을 기업에 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표류 중에 있어 소셜벤처 생태계의 역동성과 사회적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실정

3. 소셜 벤처 관련 법제 검토

3.1 사회적경제 법·제도적 환경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활성화되면서 우리사회 내 사회적경제 영역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만으로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임.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임. 부처별로 통합적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주체에 관한 육성정책을 펼친 결과로 판단됨

□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제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동조합 기본법 등이 존재함. 아직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에 있음

<표 14>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과정

<table>
<tr><th>시기(년도)</th><th>법/제도</th><th>사회적기업</th><th>특징</th><th>성격</th></tr>
<tr><td>1960–
1970</td><td>농협법, 신협법</td><td>농협, 신협</td><td>강제적 제도화</td><td>억압적</td></tr>
<tr><td>1997</td><td>자활사업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td><td rowspan="2">자활사업
(2012년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td><td rowspan="6">노동통합형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경제
제도화</td><td rowspan="5">도구적
헤게모니적
동원</td></tr>
<tr><td>2000</td><td>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td></tr>
<tr><td>2003</td><td>사회적일자리사업</td><td rowspan="2">사회적기업</td></tr>
<tr><td>2007</td><td>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노동부)</td></tr>
<tr><td>2010</td><td>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행정자치부)</td><td>마을기업</td></tr>
<tr><td>2011</td><td>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td><td>농어촌공동체회사</td><td rowspan="2">신자유주의적
통치</td></tr>
<tr><td>2012</td><td>협동조합기본법(기획재정부)</td><td>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td></tr>
<tr><td>2014</td><td>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td><td>포괄적
사회적경제 조직</td><td>정치적제도화</td></tr>
</table>

자료 : 이해진, 2015, “한국의 사회적경제-제도화와 정치과정과 지역화 전략,”「지역사회학」제16권 제1호, 155쪽.

□ 사회적경제는 공공영역과 시장영역 사이에 위치하면서 각각의 영역과 교차하는 부분을 가짐. 또한, 영리와 비영리의 융합, 정부와 비정부 조직의 융합 등이 나타나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법체계는 비영리와 영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어 사회적경제라는 하이브리드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률이슈를 완전히 담아내기 어려움[50)]

□ 또한, 기존의 공공영역이 수행하던 역할을 사회적경제가 대신하거나 사회적경제가 시장영역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면 서 생기는 충돌에 대해서 아직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셜벤처라는 사회적경제기업 개념의 확장과 재정립,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가진 제3의 법인격 도입, 사회적경제의 법 제도적 승인과 통일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51)]

50) 이경호, 양동수, 이예은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공익과 인권」통권 제17호(2017) 340쪽.

51) 또한 조달, 금융, 부동산 등 개별영역에서도 사회책임조달, 사회적금융, 사회적부동산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이끌 필요성이 있음. 이경호, 양동수, 이예은. 전게서 340쪽.

3.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검토 및 제언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준비 (19, 20대 국회)

□ 19대 국회에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

○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사경법)은 19대 국회서 첫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 상태임. 여야 모두 법안을 제시하면서, 기본적 의의에는 초당적 합의(2013년 12월, 새정치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신계륜 의원 최초 대표 발의 ▶ 2014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안으로 발의함

○ 사경법의 입법 취지에 관하여 당시 새누리당은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함

○ 그러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필요에 의해 준비되기보다 정당의 아젠다로 다뤄지면서 제정 의도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미칠 영향력에 관하여 우려와 기대도 공존함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015년 11월 27일, 사경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사경법이 민간활동을 촉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기타 법률과의 연계성, 사회적경제 개념의 몰이해 등 19대 국회 상임위 회기 종료도 폐기됨

□ 20대 국회에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2016년 8월 17일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과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서형수 의원 대표 발의) 등을 함께 발의함(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 추진 목적)[52]

52) 19대에서 법안을 발의했던 유승민 의원(2016년 10월 발의)도 재발의.

○ 그러나 영역별 기본 법률과의 중복 적용 문제, 새누리당의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하다' 는 비판 등으로 다시 표류함

2)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추진

□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100대 국정과제로 삼고 각종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사경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 상승. 국정과제 26번 사회적경제 활성화(기획재정부), 39번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중소벤처기업부)

□ 지난해 11월 22일에는 전국의 79개 협의체/연합회와 4개 단위 농협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발족. 시민행동은 기재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입법 촉구 활동을 벌였으나 2017년 국회 회기 종료.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경제 종합지원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

3) 주요 내용[53)]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유승민의원 등 15인이 발의안 2002616호와 윤호중의원 등 27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3대 법안으로 발의한 의안으로 구분됨

□ 주로 입법 목적, 상위법으로서의 지위와 지자체의 지역계획수립과 위원회설치, 컨트롤 타워로서의 한국 사회적경제원 설립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다루고 있으나, 대동소이함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대표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 사회적경제조직들 간 연대와 각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53) 이로운넷 홈페이지 [긴급점검/5년째 표류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① "지자체까지 움직일 근거법 필수, 더는 미룰 수 없다" 참조. https://blog.naver.com/erounnet/221374559627 검색일 10월 24일.

□ 주요내용은 △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열거와 등록제를 통한 보완 △ 국가 등의 책무 및 민-관 협력의 강화 △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운영 △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의 설립 등 중간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 사회적경제연합조직 △ 사회적경제금융의 정비 △ 사회적경제발전기금·지역·민간기금의 설치 및 운용 △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및 육성 △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등이 포함

4) 법안상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와 '소셜벤처' 개념의 수용성 검토

□ 해당 법안은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

□ '사회적가치'는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인권, 고용기회의 확대, 사회통합 등을 포괄하는 가치로 정의.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안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법인단체,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 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음. 유승민 의원 안은 여기에 장애인표준작업장,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자활센터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포함.[54]

54) 이경호, 양동수, 이예은. 전게서. 355쪽.

<표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상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 비교

발의법안(1) 유승민의원 등 15명	발의법안(2) 윤호중의원 등 27인
나.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라. "사회적경제기업"을 제3조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대조직에 해당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 기업·법인·단체**로 정의함(안 제3조제3호 및 제6호).

<표 16>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상 사회적경제조직과 준거법령

[2002616]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의원 등 15인) (2016.10.11.)

제2조(정의)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55]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더.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 기업 등 영리 중심의 소셜벤처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사회경제조직에 포함한 유승민 중심의 법안(2002616)는 의미가 있으나, 제2조 더.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소셜벤처 성격을 지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아우르는 사회적가치지향 조직의 개념이 수용되는지에 관한 부분이 다소 모호하므로 수정과정에서 법인의 제한을 확장할 필요성을 가짐.

□ 중소기업벤처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소셜벤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소셜벤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셜벤처'가 법안에 직접적으로 명기될 필요성도 있음.

□ 유승민 발의 법안에 명기된 사회경제조직의 정의 중 기존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인증제와 청년 운영 실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익적 성격의 재단법인의 경우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지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음.

□ 이경호·양동수·이예은(2017) 역시 동일한 지적을 함.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임. 예를 들어 법안은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농업회사법인 등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포섭하고 있지만, 위 조직들의 설립 배경 및 실제 운영방식은 사회적가치와 목적을 우선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됨. 사회복지법인을 모두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시킬 경우 한국의 복지서비스 대부분을 사회적경제가 수행하고 있다는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복지의 민영화로 악용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단기준 및 범위 설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함.[56]

5) 사회적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

□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적으로 실체화 한다는 점임.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완화하는데 그간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사회적으로 각인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가 됨.

---

55) 사회적경제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계를 작성하는 데 대한 부담도 정부 내에는 있다.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사회적경제와 해당 기업 포함 여부도 제각각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지원 대상을 16개로 분류하는 반면 윤호중 의원은 17개, 유승민 의원은 19개로 서로 다르다. 아시아경제. "정부, 사회적경제 분야 통계 만든다" 2018년 9월 28일자.

56) 이경호, 양동수, 이예은. 전게서. 356쪽.

□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으로 세분화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및 정책환경을 마련하는데도 기본법은 필요함.

□ 종합적인 실행지원조직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통합지원기관 설립 근거가 됨. 지역은 근거법을 만들지 않으면 조례 만드는 작업에 소극적인 성향을 보임.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정책 실행에서 중요한 건 현장 조직들과 소통하며 만들어내는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법이 없으니 만들 근거가 없다고 호소한 바 있음. 김대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민간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다양한 연대조직을 결성할 근거가 된다"며 "개별 섹터가 그동안 하기 어려웠던 걸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평가.

□ 민-관 협력의 토대가 된다는 점도 기대됨. 즉, 관 주도가 아니라 민의 자조와 협동, 연대를 기초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음.

3.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검토 및 제언

1) 추진 배경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가치기본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6월(세월호 참사 2개월 후),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최초 입법 발의를 한 바 있고, 20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적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법안으로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과 함께 재차 발의함.[57)]

□ 법안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등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57) 프레시안, “먼지만 쌓여가는 사회적경제 입법안” 2018년 10월 15일.

2) 주요내용

□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음.

□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는 한국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신뢰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임.

□ 동 법안은 공공부문 업무 수행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구현토록 하고 있음. 또한 정책수행과정 시, 공사 및 용역, 물품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의 수주 기회 증대를 모색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역할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이해 당사자들에게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고 장려되도록 하는 구조이며, 공공 부문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성과를 자체 평가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포상하는 것 등이 법안에 담겨 있음.

<표 17> 사회적가치기본법안(박광온의원 등 21인)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에서 실현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준수해야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본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하는 공공서비스의 사업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금융지원, 사회적경제 지원, 국·공유재산 활용지원, 재정지원 등의 지원체계와 원칙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자. 사회적 가치 실현을 근거로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책임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차.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기본원칙과 평가주체, 평가과정을 규정하고, 사회적가치성과평가에 있어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와 평가기준을 달리 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카.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법안이 미칠 영향

□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게 되므로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계약 업체로 선정되는 등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존에 제한적으로 증가되었던 인증제 사회적 기업의 숫자가 인증 기준 완화 및 허가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태계가 확장되고 선의의 경쟁구도가 예상됨

□ 다만, 사회적 가치 평가기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계약 혹은 조달이 이루어질텐데, 그 척도와 지표가 모호하거나 부재하다는 지적도 존재함

□ 또한 기존 인증제를 통과한 사회적 기업과 비 인증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음.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등의 사회적 기업 유형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기본법에서 어떻게 가치를 제시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기존 사회적기업, 특히 소규모 경제조직들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임

□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가치 측정 모델로는 파주, 시흥시 등 지자체의 시도를 참고할 수 있으나, 규모있는 경제조직에 유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파주시는 SK의 SPC(Social Progress Credit)라는 지표를 참고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 규모가 작은 조직에 대한 정성적 지표 도입 역시 고민되어야 할 지점임

□ 사회적 가치 정책이라는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 문재인 정부의 우선 과제는 사회적 숙의 토론 과정을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을 구축하는 일이 될 것임

3.4.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검토 및 제언

1)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내용과 특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

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본 법령의 목적으로 함

□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제2조 1항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 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전통적으로 비영리영역의 조직이라고 여겨졌던 조직들을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포함하고 있음

□ 다만, 법규상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절차가 까다로움. 예비 창업가들이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장되기 쉬우며, 기존의 인증 기업 중심으로 지원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또 하나의 진입장벽임[58)]

2)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지방자치단체별 수용

□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및 특별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조사 결과, 9개 광역자치단체(특별, 광역시, 도 단위)가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시, 구 130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한 조례명으로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하여 운용 중에 있음. 그리고 27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령 집행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별첨 #3 참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특징 및 경향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58) 김진수 외, 전게서 31쪽. 29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공통적인 목적으로 함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및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는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그리고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는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를 두는 등 시·도·구별로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두기로 함

○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시행 지자체 별로 내용이 일부 상이하지만, 공통사항으로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르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음. 경영지원, 재정지원, 시설비·사업비 등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 또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를 우대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 등을 지원하거나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시세 감면, 도세 감면, 조세 감면, 구세 감면 할 수 있음.

○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와 민간기업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민간 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과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등의 사항을 강구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규칙의 특징 및 경향성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신청 및 절차·취소 등을 할 수 있음. 전반적으로 시행규칙에 재정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과 재정지원금의 교부방법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음.

○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음.

○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협의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운영사항을 마련하고 있음.

3)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검토(청년 소셜벤처 포함)

□ **상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표 18>「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 -258호(2018년 6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소셜벤처 등 혁신적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완화 (안 제9조제1항)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비율을 30%, 혼합형의 경우 각각 20%로 완화

나. 새로운 서비스 분야 예시 (안 제9조제1항5호 신설, 제2항)

- 도시재생, 친환경 등 사업의 특성 상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예시

다. 영업활동 실적 판단기준의 유연한 적용 (안 제10조)

-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하나, 사업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 그럼에도 혁신적 기업의 범주 안에 소셜벤처를 포함시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대목이나, 청년에 대한 기준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에 한정한 법령상 정의와 비영리 법인을 아우르는 사회경제적 조직, 즉 소셜벤처의 확장적 개념과는 상충되는 지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법령명을 수정하여 전면 개정을 시도하거나 소셜벤처 개념을 조작적 정의하여 수정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검토 및 제언

1) 지원 기관의 확대 검토 : 중소기업 ▶ 소셜벤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제1조(목적)에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당초 올해 말까지 유효한 일몰법이었으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함.

□ 고용노동부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힘.[59)]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직업안정법」을 근거법령으로 청년고용에 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음.

59) 이데일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유효기간 2023년까지 연장” 2018년 6월 4일자.

<표 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주요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 2017.1.1. 법률 제14501호)

제2조(정의)

①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①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교육·보건·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사업, 환경감시단, 산불감시단, 그 밖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또는 지원에 관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분야별 고용계획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법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청년고용 시 민간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청년들의 수급도가 기타 영역보다 활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전제로 하는 청년 소셜벤처로까지 고용주체를 확장, 명기한다면, 청년고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2) 지원 대상인 청년의 연령 설정 문제

: 동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이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법령에서 규정하는 '청년'과 '청년상인'의 연령이 상이하므로 고령화 사회 추세에 따라, 이를 검토하는 한편, 향후 '사회적경제 3법' 이나, 소셜벤처 지원법령 등이 추진될 때에 범주에 관한 합의가 필요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41호, 2018. 10. 23, 일부개정]

○ 동 법은 최근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 병력 기간은 청년의 기간을 근로계약 현재 연령에서 제할 것을 적시하고 있음.

>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8.8.28. 개정).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80호, 2017.10.17, 일부개정]

○ 동 법은 청년 창업자가 창업촉진사업과 관련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남녀 청년의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 제5조의 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 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 동 법은 청년 상인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제6조의 2(청년상인의 기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 "(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 검토 결과 대통령령 아래에서도 조세특례 제한법은 34세까지, 상인이나 창업 현장에 있는 청년은 그 범주를 39세까지 확대하는 면에서, 법령 별 기준이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음.

3.6.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검토 및 제언

: 사회적경제 및 청년일자리와 관련 신규법령 제안의 기초자료로서 서울특별시의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검토함.

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의 검토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정의) 2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의미함.

<표 20>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정의)

제3조(정의) 2항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내용을 보면, 제3조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에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와 법인을 포함시켜 '기업'과 '비영리조직'을 기업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부조화 현상을 보임. 즉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음.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상에는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일임하고 있으며, 육성법 상으로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 더구나 현재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내 소셜벤처 개념이 확정 적용되거나, 부분 혹은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내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경제기업 개념의 혼용은 대상자들의 혼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2)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의 검토

□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근거조례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기능하고 있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

한 조직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안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됨.

<표 21>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및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상정한다.

제6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이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본조례 제16조를 따른다.

3)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의 검토

□ **서울시는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시행 중에 있음. 서울특별시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표 22>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일자리 수급 전망,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시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제5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매년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은 다시 2021년말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여 서울시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 단, 일몰제 방식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관한 지자체 조례의 성격으로 때마다 현행화를 하기보다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였을 때, 시 자체적인 기본 조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4)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의 검토

□ 서울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시행할 예정임. 동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표 23>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지원 대상인 청년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및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함(안 제4조 ~제11조), 라. 청년창업활동 관련자 지원 및 특례보증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동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 소셜벤처 조직들도 일부 혜택을 볼 여지가 있으나, 대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창업을 하려는 청년'의 범주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7.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검토 및 제언

1) 성동구는 성수동 소셜벤처밸 리가 소재한 자치구로서, 사회적경제 및 청년, 청년 소셜벤처에 관련한 네 개의 조례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선도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2) 전국 최대의 소셜벤처 밸리가 소재한 서울시 성동구는 서울시 최초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 상응하는 조례로서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한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 운용 중에 있음.

3) 기본조례

□ 서울시 최초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13년 7월)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 **전국 최초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14년 12월)**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청년 기본 조례 제정 (2017년 11월)**

4) 특별조례

□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2015년 9월).**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로 소셜벤처의 안정적·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

□ **전국 최초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 조례」 제정** (2017년 9월)

5) 조례 검토(1)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혁신기업 등' 으로 정의하고 있음.**

<표 24> 성동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혁신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6.3.17.>

가.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나.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라.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3.17., 2018.9.20.>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사. '사회혁신기업 등'이란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3.17.>

□ **'사회혁신기업 등'에서 '등'을 통해 관한 비영리법인 혹은 단체를 기타 지원 조직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본조례로서 소셜벤처의 유연한 범주를 대상에서부터 명기할 필요를 지님.**

6) 조례 검토(2) :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다양한 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반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제정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조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금융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조례는 기금의 조성 재원, 용도, 관리,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소셜벤처밸리 입주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양극화 해소, 공동체 회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왔으나 재정적 기반이 약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활용 근거 조례로서 기타 자치단체들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 단, 기금 집행의 모호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언급된 '사회혁신기업 등'이 생략되어 있으며, 중간조직지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표 25>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지원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또는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이나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3.사회적경제 관련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지원
4.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5.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6.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
7.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7) 조례 검토(3) : 「청년 기본 조례」

□ **성동구는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고 청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청년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음.**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목적·기본이념·정의·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 ~ 제5조),

나.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 정책연구(안 제6조 ~ 제7조),

다. 청년정책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규정(안 제8조 ~ 제11조),

라.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금융생활 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문화체육활동 강화, 병역의무이행 지원, 권리보호 등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근거 마련(안 제12조 ~ 제21조),

마. 청년 시설의 설치·운영(안 제22조 ~ 제23조), 바.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안 제24조 ~ 제25조)

□ **청년 기본 조례 상 청년의 연령은 19세부터 39세로 정의되어 있음. 선거연령의 하향 추세 및 대통령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명기되어 있는 청년의 최소 연령인 15세 이상을 고려하여, 19세보다 하향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

□ **청년 기본 조례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소셜벤처와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신설 또는 참여하는 청년에 관한 지원을 원활하게 촉진할 수 있음.**

<표 26>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고 청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청년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8) 조례 검토(4) :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동구가 채택하고 있는 소셜벤처 지원 조례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표 27>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 지원 조례의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를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 “소셜벤처” 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청년 소셜벤처 생태계”란 청년 소셜벤처의 창업과 성장, 이해 당사자 간 협업과 상생, 투자와 지원 등이 선순환되는 환경을 말한다.

□ 조례 상의 사회경제적조직 범주는 소셜벤처에 국한하고 있음. 즉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한정되어 있음.

□ 상위법 및 조례로는 중앙정부의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의 지침을 근거법규로 명시하고 있음

□ 제4조 청년 소셜벤처의 요건에 갖추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있으며, 2항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명확하게 규정할 경우 비영리단체까지 소셜벤처의 요건에 포함하고 있음.

□ 즉,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상 사회적경제조직 정의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범주 내에 비영리 법인 조직을 포함하는 정책상 고민을 조례상 내포하고 있어, 향후 개정의 필요성을 지님.

<표 28>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 지원 조례 상 요건

제4조(청년 소셜벤처의 요건)

① 청년 소셜벤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마을기업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자활기업

② 제1항 이외에도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가치 실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3.「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4.「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5조(청년 소셜벤처의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기업이 청년 소셜벤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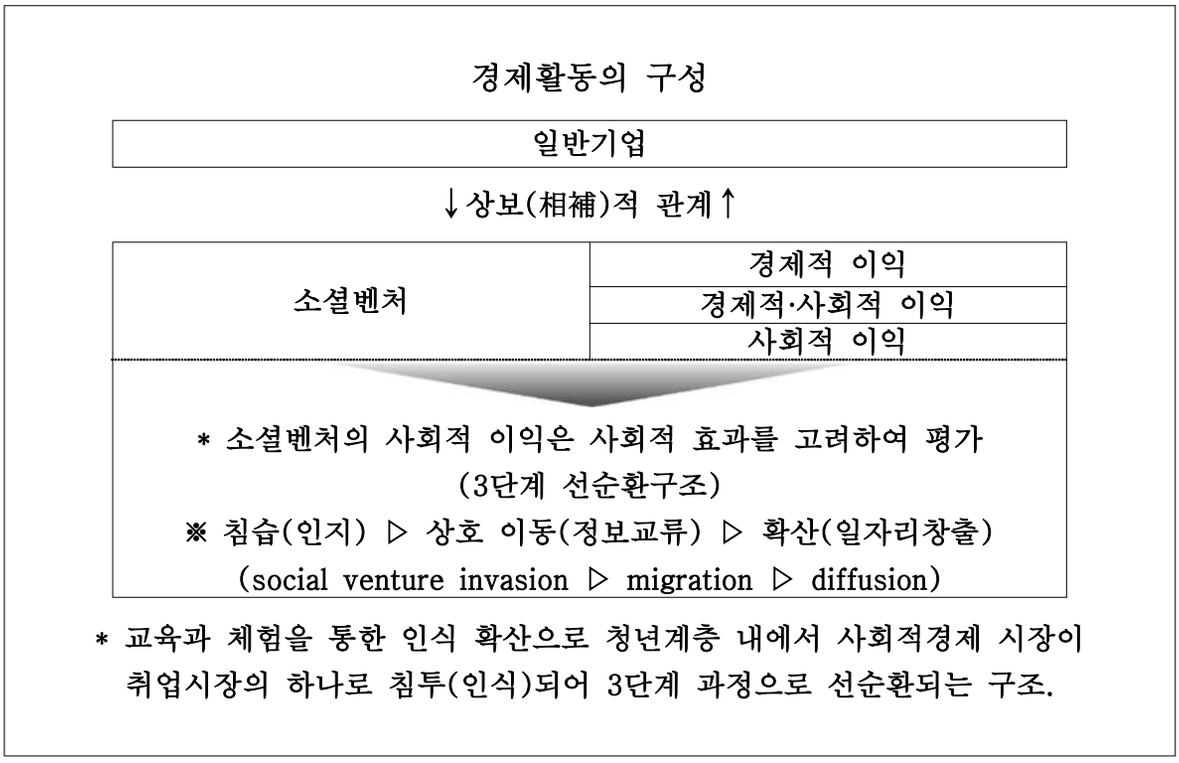
제 6장. 청년 소셜벤처 지원 특별법(안) 제안

1. 소셜벤처 확산의 필요성

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소셜벤처의 중요성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등장과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됨.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사회적 기업의 증가 추세가 뚜렷함.

<그림 7> 이익 관점에서 본 소셜벤처와 선순환구조



□ 소셜벤처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동구 소셜벤처 밸리 사례에서 보듯 청년들이 선행 창업사례를 참고하여 교육·인식이 확산되고 후속 소셜벤처를 창업하는 3단계 선순환 구조는 소셜벤처가 갖는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평가받아야 하는 가치임(청년계층 내 사회적 가치를 지닌 소셜벤처가 시장의 하나로 침습→상호 이동→확산 로 정의내릴 수 있음).

□ <그림 7>에서 보듯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조직이 모두 소셜벤처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소셜벤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며, 정부가 주도하는 지원정책을 통해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기능함.

□ 소셜벤처 내 비영리 조직이 경제적 이익 대신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도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받는 기조가 확산되어야 함. 결과적으로 소셜벤처는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들을 의미하며, 안정적으로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함.

2) 소셜벤처의 성장과 확장 가능성

□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대기업이나 시장경제의 난점을 보완하기 위한 상보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성장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최근 임팩트 투자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는 단계에 있음.

□ 2015년 기준 540억원의 시장 규모에서 2017년 760억원 규모로 확대되었고 소셜벤처분야에서 임팩트 투자는 소셜벤처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도 연내 1,000억 원 규모 임팩트 투자 펀드를 조성할 방침임.

□ 모태펀드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각종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 등에 자금을 출자하면 투자조합에서 소셜 벤처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이뤄짐. 세계 임팩트 투자 규모는 현재 259억달러(28조9640억원)으로 추정되며 2020년 400조원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60]

2. 기존 법령 개정의 필요성

1) 기존 법령 및 조례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비영리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까지 검토 필요)을 포함한 소셜벤처의 유연한 범주를 담아내지 못함.

60) GIIN에서 발간한 '2017 임팩트 투자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시장에 운용되고 있는 임팩트 투자 자산 규모는 1140억 달러(약 123조 원)이며, 2020년에는 4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일리한국, "임팩트 투자① 새로운 투자 물결 '임팩트 투자'가 뜬다" 참고.

2)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은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및 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 적의나 기본원칙의 설정 없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왔음.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법제도의 체계적인 수립과 시행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적인 지원 또는 불필요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비롯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 관련 3개 법안이 제정되면 일부 해결될 수 있음.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에 적합한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개념의 재정립 및 인증제도 문제, 사회적 금융, 사회적 부동산의 도입 등의 산적한 현안을 비추어 봤을 때,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법·제도는 현행 법령 및 국회 계류 중인 3개 법안의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함. 여기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직 지원 법령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61]

3) 기업중심의 대상화에 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입법예고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기업의 범주 하에 비영리 조직을 담아내며 법령 혹은 조례상 어색함을 지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입법이 선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됨. 서울시와 성동구의 경우에도 기업정의와 비영리 조직을 아우르는 소셜벤처 개념이 자치법규상 어울리지 않는 공존에 관한 개정이 필요함.

4)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경우, 법령 명의 변경 등 전면적인 수정작업이 요구되나,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적용 중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소셜벤처 개념을 관련 조례 즉, 사회적경제

61) 법무법인태평양·동천, (2018)『사회적경제법연구』. 파주: 경인문화사. 40-41쪽.

조직 및 사회적기업의 정의 하에 일부 수용하는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청년’의 연령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1) 행정부처마다, 지자체마다, 정당마다 '청년'에 관한 기준이 상이함. 20~30대의 거주가 드문 농어촌지역은 49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인정.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함.

2) 대통령령은 만29세까지로 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군필자의 경우)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에 따라 39세까지도 청년에 포함함. 경북도가 2017년 제정한 청년기본조례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며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청년 범위를 기존 만 15~34세에서 만 15~39세로 상향 조정했음.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는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나이를 만 19~39세로 규정하고 있음. 성남시는 청년나이를 만 19~24세로 정하고 있고, 부산시는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을 만 15~29세로 규정함.

3) 지자체별 인구구조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취업 및 지원과 관련 현행법상 청년 나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 정책상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고려, 청년 소셜벤처 환경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4. 제도개선에 관한 제언

1) 전반적으로 개별 영역에서 요구되는 법·제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지속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주체별 지원법 및 분야별 특별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함.

2) 주체별 지원법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소셜벤처를 아우르는 사회적기업 개념의 재정립, 인증제 현실에 부합하는 제3의 법인격도입을 비롯해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협동조합 기본법」 역시 협동조합, 특히 일반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기업이 아니라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성격과 사업체로서 성격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의 보완이 필요함. 62)

3) 사회적경제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자활기업, 마을기업 및 농어촌공동체회사 외에도 청년 소셜벤처의 영역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복지법인 등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조화를 이루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또는 법·제도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됨.

62) 이경호·양동수·이예은. 전게서. 360쪽.

5. 청년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1)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본 연구에서 소셜벤처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부처 별 산재되어 있는 정책을 모을 수 있는 근거로 기능할 상위 기본법이 필요함. 기본법 제정 시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법령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부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계류 중인 추진법안이 존재함으로 별도 소셜벤처 지원 법령 제정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 한편, 이와는 별도로 청년 실업률은 사회적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따라서 소셜벤처 생태계에 유입되고 있는 청년계층의 증가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기업 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논의의 확장형인 소셜벤처 관련 법안의 추진이라는 흐름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셜벤처 지원 특별법」을 제안하고자 함.

□ 특별법 추진 시, 소셜벤처의 정의를 확장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추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셜벤처 정의 및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유연한 개념의 소셜벤처 개념을 명기할 것을 제안함.

□ 각 법안 별로 개정을 요하는 일은 부처 간 이해관계와 사회적경제 행위자 간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는 데 비해, 청년고용 특별법 제정은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한 사회 전반의 공통된 정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도 추진 동력임. 본 연구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된 제안법안은 <표 28>과 같음.

2) 제안 법안의 주요 내용

□ 내용을 보면, 가. 에서 청년 소셜벤처조직의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명기하고 있음. 나. 에서는 소셜벤처의 정의에서 인권, 평등,

자유, 평화 등의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담고 있으며, 사단법인 등 확장된 범주에서 비영리 기관을 정의하고 있음. 다. 청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청년창업가 및 청년상인의 기준을 고려, 남녀 39세까지로 규정하며, 라. 계획수립 및 지원으로는 공공기관의 소셜벤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기관 성과에 반영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마. 에서는 청년 소셜벤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한편, 바. 에서 차. 까지 지원센터 설치, 기금 마련, 위원회, 협의체 구성, 실태조사 등의 제반 행정사항 등을 담고 있음.

□ **추후 민관 전문가 및 소셜벤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를 통해 법안의 내용이 개선, 보완될 필요가 있음.**

<표 29>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셜벤처 지원 특별법안(가칭)

제안이유

- 지난 5년간 청년 일자리 정책 예산은 약 3배 증가하였지만,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계류되어 있는 5개의 청년기본법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함. 사회 진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현실을 고려, 동등한 기회와 시간의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 이에 청년이 중심이 되고 있는 소셜벤처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청년 기본법안 추진의 흐름을 반영하였을 때,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마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년 소셜벤처조직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나. (소셜벤처의 정의) 소셜벤처란 인권, 평등, 자유, 평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관, 기업, 법인 등의 조직을 의미한다. 제도적으로 현행법 체계에서 규정한 모든 형태의 기업 및 법인 중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혁신성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경제단체를 의미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증된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호,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이 정의한 마을기업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공익법인을 포함) 및 개인사업자 중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연계 및 선순환을 지향하는 경제단체(중소벤처기업부 등 소셜벤처 인증 기관의 허가를 받은 조직으로 지원 대상을 분류)

다. (청년의 정의) 청년의 나이는 19세~39세로 정의한다.

라. (계획수립 및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년 소셜벤처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청년 소셜벤처조직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며 지원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소셜벤처조직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본 법령은 청년 일자리 정책 예산 집행 시 기타 법령보다 우선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년 정책과 소셜벤처 지원과의 연계를 시도하여 전국 단위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며, 청년 주체 스스로가 문제 해결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공공기관이 소셜벤처조직과 체결한 개발, 조달, 위탁 사업 계약에 관한 성과를 사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마. (청년 소셜벤처의 확인) : 중소기업벤처부에 등록된 소셜벤처이면서, 조직의 대표가 만39세이하 또는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 수의 50% 이상이 만39세 이하일 경우, 청년 소셜벤처로 인정한다.

바. (청년 소셜벤처조직 지원센터의 설치) : 중앙정부의 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청년 소셜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소셜벤처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사. (기금의 설치) : 중앙정부의 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민·관이 출자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비롯한 청년 소셜벤처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아. (실태조사) : 지원기관의 장은 청년 소셜벤처조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소셜벤처조직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년 단위로 지원하되 실시 결과는 지역내 청년 일자리 통계 및 사업에 반영한다.

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 소셜벤처 육성위원회를 둔다.

차. (협의체 구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 소셜벤처 협의체 구축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청년 소셜벤처 실태 자료 공유 및 개선방안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추후 법안 입법 과정의 수정은 기존법령인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외에 추진 중인 사회적 경제조직 기본법안,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 청년 기본법안의 수립 과정을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및 별첨

참고문헌

(국내문헌)

고동현 외. (2018).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 파주: 한울.
국회입법조사처 (사)한국경제법학회,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인법전망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사)한국경제법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자료집(2015 년10월 15일).
김진수 외. (2016). 「소셜벤처 창업하기」 서울: 청람.
법무법인태평양·동천, (2018) 『사회적경제법연구』 2018 파주: 경인문화사.
사회투자지원재단, (2012)「자활사업 협동조합 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3. “사회적 경제 생태계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엄형식. (2005). 유럽적 의미의 사회적기업 개념과 시사점, 도시와 빈곤 76
임혁백 외. (2007).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한국형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모색. 서울: 송정.
이경호, 양동수, 이예은. (2017).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공익과 인권」 통권 제17호(2017).
정선희. (2003). 이익을 만들고 행복을 나누는 사회적기업. 서울: 다우.
최종태. (2008). 사회적기업, 새로운 세계: 미국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서울: 정책연구원(2쇄).
박지연·문경연·조동호. (2016).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3권 제2호.

(해외문헌)

Auteri, M. (2003). The enterpreneurial establishment of a nonprofit organization. Public Organization Review, 3(2): 171-189.
Campbell, S. (1998). Social entrepreneurship: How to develop new social purpose business ventures. Health care Strategin Management, 16(5).
Kydland F, Stokey N, Schelling T. Smart Development Goals. Available at http://www.copenhagenconsensus.com/post-2015-consensus/nobel-laureates-guide-smarter-global-targets-2030. 검색일 : 2018.10.20.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t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ddressing Unfinished Agenda and Strengthen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artnership.
OECD. (1999). Social Enterprise. Paris: OECD.
Pearce, J. (2003). Social Enterprise in Anytown, London: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별첨 #1 「사회경제에 관한 2009년 2월 19일 유럽 의회 결의문」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9 February 2009 on Social Economy)

1. 유럽 경제에서 사회경제는 사람을 우선에 놓는 민주적 가치를 가진 경제의 하나로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혁신을 지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익성과 연대의 조화를 이루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적·지역적 결합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고, 시민들의 활동을 촉진한다.

2. 사회경제는 산업민주주의와 경제 민주주의 강화에 있어서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모두 중요하다.

3. 사회경제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발전할 수 있으려면 사회경제 관련 기관의 특수성과 풍부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적절한 정치적, 입법적, 경영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4. 사회경제 기업은 일반기업처럼 똑같은 경쟁의 규칙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 사회경제 기업이 일반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수한 가치를 인정하는 속에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5. 현재 경제에는 주주의 감시나 규제기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기업이 존재하며, 이들로 인해 금융시장은 투기에 노출되어 있다. 사회경제 기업은 금융시장이 투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점에 중요하다.

자료: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3. “사회적 경제 생태계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8-9쪽.

별첨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 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를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소셜벤처”이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재생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및 정보·교육 격차 해소

   라.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인권 보호

   마. 윤리적 생산과 공정한 유통

   바.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사. 그 밖에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청년 소셜벤처 생태계”란 청년 소셜벤처의 창업과 성장, 이해 당사자 간 협업과 상생, 투자와 지원 등이 선순환되는 환경을 말한다.

5. “지역협력기금”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조례」 제4조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용도로 민·관이 출자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청년 소셜벤처를 육성하고 기업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소셜벤처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소셜벤처의 요건) ① 청년 소셜벤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마을기업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자활기업

② 제1항 이외에도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가치 실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3.「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4.「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5조(청년 소셜벤처의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기업이 청년 소셜벤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청년 소셜벤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년 소셜벤처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청년 소셜벤처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청년 소셜벤처의 확인 절차, 유효기간, 증명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청년 소셜벤처의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소셜벤처의 창업·창직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상담 등

2. 청년 소셜벤처의 공간지원, 협력사업 발굴, 판로개척 등

3. 청년 소셜벤처의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청년 소셜벤처 활동가의 재도전 지원

5. 청년 소셜벤처의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7조(청년 소셜벤처 육성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소셜벤처 육성과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 소셜벤처 육성구역(이하 “육성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육성구역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육성구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육성구역을 지정 할 경우에는 육성구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소셜벤처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육성구역 범위 등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청년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소셜벤처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청년 소셜벤처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소셜벤처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청년 소셜벤처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소셜벤처를 육성하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소셜벤처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소셜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 소셜벤처 공간, 회의장, 운영장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을 받을 자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을 받은 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청년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 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청년 소셜벤처 업무 담당 국장, 과장

3. 청년 소셜벤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청년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성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청년 소셜벤처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청년 소셜벤처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소셜벤처 육성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 소셜벤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3「국내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조례 현황」

1. 광역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황(특별, 광역시, 도 단위)

	제정 단위	제정 시기
1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0.31.] [충청북도조례 제3710호, 2014.10.31., 일부개정]
2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 2017.9.22.] [전라북도조례 제4457호, 2017.9.22., 일부개정]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2.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81호, 2016.12.30., 일부개정]
4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1.5., 타법개정]
5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 1.] [부산광역시조례 제5793호, 2018. 8. 1., 일부개정]
6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1.10.] [대구광역시조례 제4291호, 2011.11.10., 일부개정]
7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 24.] [광주광역시조례 제5111호, 2018. 7. 24., 일부개정]
8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4.20.] [대전광역시조례 제5116호, 2018.4.20., 일부개정]
9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10. 2.] [울산광역시조례 제1384호, 2013. 10. 2., 일부개정]

2.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황(시, 구 단위)

	제정 단위	제정 시기
1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2.29.]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880호, 2009.12.29., 제정]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7.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250호, 2018.7.4., 일부개정]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94호, 2016.12.30., 일부개정]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30.]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902호, 2010.12.30., 제정]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6.8.]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102호, 2017.6.8., 일부개정]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30.]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919호, 2010.12.30., 제정]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5.]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083호, 2015.11.5., 일부개정]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2.12.]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975호, 2015.2.12., 일부개정]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238호, 2014.12.30., 일부개정]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시행 2018. 10. 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

	및 지원 조례」	1357호, 2018. 10. 1., 일부개정]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9.16.]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845호, 2010.9.16., 제정]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1.3.14.]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714호, 2011.3.14., 제정]
13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1.7.22.]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081호, 2011.7.22., 제정]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1.4.1.]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923호, 2011.4.1., 제정]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1.6.16.]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893호, 2011.6.16., 제정]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216호, 2014.12.26., 일부개정]
17	「강원도 고성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8.13.]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228호, 2015.8.13., 일부개정]
18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9.15.]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091호, 2017.9.15., 일부개정]
19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0.6.]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869호, 2014.10.2., 일부개정]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1.2.11.]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981호, 2011.2.11., 제정]
21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30.]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643호, 2010.12.30., 제정]
22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시행 2016.6.22.]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161호, 2016.6.22., 일부개정]
23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20.]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937호, 2010.12.20., 일부개정]
24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1.5.6.]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833호, 2011.5.6., 제정]
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시행 2010.5.1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927호, 2010.5.10., 제정]
2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26.]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045호, 2014.12.26., 일부개정]
27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107호, 2017.1.1., 일부개정]
28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30.]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881호, 2010.12.30., 제정]
29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시행 2010.12.3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618호, 2010.12.31., 제정]
30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1.4.7.]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832호, 2011.4.7., 제정]
31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0.18.]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563호, 2010.10.18., 제정]
32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3.1.]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1202호, 2018.3.1., 일부개정]
33	「경기도 의왕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4.3.]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419호, 2015.4.3., 일부개정]
34	「경기도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시행 2014.4.10.]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028호, 2014.4.10., 일부개정]
35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시행 2018. 9. 17.]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939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호, 2018. 9. 17., 일부개정]
36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5. 11.]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971호, 2017. 5. 11., 일부개정]
37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7.1.]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989호, 2017.6.15., 일부개정]
38	「경기도 가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12. 31.]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382호, 2014. 12. 31., 일부개정]
39	「경기도 과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4. 14.]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556호, 2018. 4. 14., 일부개정]
40	「경기도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 31.]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372호, 2018. 7. 31., 일부개정]
41	「경기도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4. 18.]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390호, 2017. 4. 18., 전부개정]
4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7.3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088호, 2015.7.31., 일부개정]
43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002호, 2014.12.30., 일부개정]
44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21.]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094호, 2017.11.10., 일부개정]
4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5.1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484호, 2017.5.10., 일부개정]
46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9.]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087호, 2014.12.30., 일부개정]
47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1.2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964호, 2014.11.20., 일부개정]
48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2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808호, 2010.12.20., 제정]
49	「인천광역시 강화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1.3.2.]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033호, 2011.3.2., 제정]
50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24.]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801호, 2010.12.24., 제정]
51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시행 2016.3.11.]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148호, 2016.3.11., 일부개정]
52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3. 7. 29.]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040호, 2013. 7. 29., 일부개정]
53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7.11.]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188호, 2016.7.11., 일부개정]
54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 10. 1.]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296호, 2018. 10. 1., 일부개정]
55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3.11.]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148호, 2016.3.11., 일부개정]
56	「경기도 남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5.14.]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247호, 2015.5.14., 일부개정]
57	「경기도 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30.] [경기도연천군조례 제2963호, 2010.12.30., 제정]
58	「경기도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2.13.]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008호, 2012.2.13., 일부개정]
59	「강원도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7.12.22.]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607호, 2017.12.22., 일부개정]
60	「강원도 양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시행 2018.9.21.]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249호,

	관한 조례」	2018.9.21., 일부개정]
61	「강원도 영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7.1] [강원도영월군 제2394호, 2016.7.1., 일부개정]
62	「강원도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 [강원도원주시 제 1374호, 2015.1.2., 일부개정]
63	「강원도 태백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7.1]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832호, 2018.9.19., 일부개정]
64	「강원도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1.]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373호, 2017.12.1., 일부개정]
65	「강원도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1.25.]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049호, 2011.11.25., 제정]
66	「충청북도 괴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7.1.]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197호, 2015.6.5., 일부개정]
67	「충청북도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4.6.]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418호, 2018.4.6., 일부개정]
68	「충청북도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8.31.]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502호, 2018.8.31., 일부개정]
69	「충청북도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8.1.]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672호, 2018.8.1., 일부개정]
70	「충청북도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3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692호, 2017.11.30., 일부개정]
71	「충청북도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9.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328호, 2016.9.5., 일부개정]
72	「충청북도 증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2.24.]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412호, 2012.2.24., 일부개정]
73	「충청북도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3.2.]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367호, 2015.3.2., 일부개정]
74	「충청북도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1. 11.]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562호, 2016. 11. 11., 일부개정]
75	「충청북도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시행 2014.12.26.]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1254호, 2014.12.26., 일부개정]
76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6.12.]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372호, 2012.6.12., 제정]
77	「충청남도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084호, 2016.11.1., 일부개정]
78	「충청남도 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9.29.]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108호, 2017.9.29., 일부개정]
79	「충청남도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154호, 2017.12.29., 일부개정]
80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499호, 2015.12.15., 일부개정]
81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8.18.]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103호, 2014.8.18., 일부개정]
82	「충청남도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8. 11.]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379호, 2017. 8. 11., 일부개정]
83	「충청남도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2.22.]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1826호, 2012.2.22., 제정]
84	「충청남도 태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6.]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110호, 2015.1.6., 일부개정]
85	「충청남도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시행 2015.6.5.]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186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6.5., 일부개정]
86	「전라북도 고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 2015.1.27.]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136호, 2015.1.27., 일부개정]
87	「전라북도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5.1.]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072호, 2013.5.1., 일부개정]
88	「전라북도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8.19.]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856호, 2013.8.19., 일부개정]
89	「전라북도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1.14.]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126호, 2014.11.14., 일부개정]
90	「전라북도 무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0. 5.]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300호, 2018. 10. 5., 일부개정]
91	「전라북도 부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2.9.]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137호, 2015.2.9., 일부개정]
92	「전라북도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1.1.]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011호, 2010.11.1., 제정]
93	「전라북도 임실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 31.]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371호, 2018. 8. 31., 일부개정]
94	「전라북도 장수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12. 29.]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048호, 2014. 12. 29., 일부개정]
95	「전라북도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145호, 2014.12.30., 일부개정]
96	「전라북도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1. 13.]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332호, 2015. 11. 13., 일부개정]
97	「전라북도 진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시행 2017. 6. 30.]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281호, 2017. 6. 30., 일부개정]
98	「전라남도 광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550호, 2017.12.27., 일부개정]
99	「전라남도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8.3.]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2930호, 2015.8.3., 일부개정]
100	「전라남도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6. 23.]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250호, 2015. 6. 23., 일부개정]
101	「전라남도 장흥군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0. 1.]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380호, 2018. 10. 1., 전부개정]
102	「전라남도 함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1.]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188호, 2014.12.31., 일부개정]
103	「경상북도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6.8.]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913호, 2015.6.8., 일부개정]
104	「경상북도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 31.]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304호, 2018. 8. 31., 일부개정]
105	「경상북도 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2.6.29.]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1989호, 2012.6.29., 일부개정]
106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7.31.]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076호, 2015.7.31., 일부개정]
107	「경상북도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7.15.]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924호, 2013.7.15., 일부개정]
108	「경상북도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9.11.]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136호, 2017.9.11., 일부개정]
109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962호, 2015.1.1., 일부개정]
110	「경상북도 영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	[시행 2015.3.1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1997호,

	원에 관한 조례」	2015.3.13., 일부개정]
111	「경상북도 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29.]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908호, 2014.12.29., 일부개정]
112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10. 12.]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1967호, 2011. 10. 12., 일부개정]
113	「경상북도 울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 24.]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907호, 2018. 8. 24., 일부개정]
114	「경상북도 울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3. 23.]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390호, 2018. 3. 23., 일부개정]
115	「경상북도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590호, 2017.12.29., 일부개정]
116	「경상북도 청도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1.4.22.]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1999호, 2011.4.22., 제정]
117	「경상남도 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7.20.]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328호, 2016.7.20., 일부개정]
118	「경상남도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121호, 2015.10.2., 일부개정]
119	「경상남도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 1.]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198호, 2017. 12. 28., 일부개정]
120	「경상남도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 1.]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446호, 2017. 12. 28., 일부개정]
121	「경상남도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 1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356호, 2018. 9. 11., 일부개정]
122	「경상남도 양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2. 31.]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158호, 2015. 12. 31., 일부개정]
123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0. 1.]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278호, 2018. 9. 28., 일부개정]
124	「경상남도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2.23.]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007호, 2012.2.23., 제정]
125	「경상남도 창녕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2.12.]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175호, 2015.2.12., 일부개정]
126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2. 28.]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826호, 2015. 12. 28., 일부개정]
127	「경상남도 통영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0.6.]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065호, 2014.10.6., 일부개정]
128	「경상남도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9.]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336호, 2017.1.9., 일부개정]
129	「경상남도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1.7.8.]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1924호, 2011.7.8., 제정]
130	「경상남도 합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7.24.]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065호, 2014.7.24., 일부개정]

3. 전체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현황

	제정 단위	제정 시기
1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9.11.12.] [서울특별시규칙 제3703호, 2009.11.12., 제정]
2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1.15.] [서울특별시중구규칙 제691호, 2017.11.15., 일부개정]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시행 2011.6.1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규칙 제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599호, 2011.6.15., 제정]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6.25.]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717호, 2015.6.25., 일부개정]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5.26.] [서울특별시도봉구규칙 제702호, 2011.5.26., 제정]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2.17.]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629호, 2011.2.17., 제정]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6.23.] [서울특별시동대문구규칙 제550호, 2011.6.23., 제정]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11.26.] [서울특별시강남구규칙 제660호, 2010.11.26., 제정]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3.10.] [서울특별시구로구규칙 제625호, 2011.3.10., 제정]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4.15.] [서울특별시마포구규칙 제539호, 2010.4.15., 제정]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6.23.] [서울특별시동대문구규칙 제550호, 2011.6.23., 제정]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5.26.] [서울특별시도봉구규칙 제702호, 2011.5.26., 제정]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9.20.] [서울특별시양천구규칙 제592호, 2010.9.20., 제정]
14	「경기도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11.29.] [경기도구리시규칙 제787호, 2010.11.29., 제정]
15	「경기도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7.6.] [경기도용인시규칙 제682호, 2012.7.6., 제정]
16	「경기도 시흥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12.31.] [경기도시흥시규칙 제702호, 2010.12.31., 제정]
17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 [경기도규칙 제3810호, 2018. 10. 1., 일부개정]
18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7. 11.] [부산광역시규칙 제3956호, 2018. 7. 11., 일부개정]
19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9.6.] [충청북도규칙 제2682호, 2010.9.6., 제정]
2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6.9.]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241호, 2010.6.9., 제정]
21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11.27.] [전라북도규칙 제2991호, 2015.11.27., 일부개정]
22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5.20.] [대구광역시규칙 제2793호, 2015.5.20., 일부개정]
23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9.1.] [광주광역시규칙 제2962호, 2014.9.1., 일부개정]
24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7.17.] [대전광역시규칙 제3003호, 2015.7.17., 일부개정]
25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12.9.] [울산광역시규칙 제572호, 2010.12.9., 제정]
26	「경상남도 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8.13.] [경상남도거창군규칙 제1064호, 2010.8.13., 제정]
27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12.15.] [경상남도창원시규칙 제208호, 2011.12.15., 제정]

별첨 #4 언론보도

동아일보 2018.10.18.

아시아소셜벤처경진대회 동북아라운드, 오는 23일 성수동헤이그라운드서 개최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과 임팩트 창출을 하고 있는 아시아소셜벤처경진대회(SVCA)의 역대 수상팀. 국내 유일 사회혁신기업 글로벌경연스테이지

동북아시아 대표 사회혁신기업들이 함께하는 '제13회 아시아 소셜벤처 경진대회(Social Venture Competition Asia, 이하 SVCA)' 동북아시아라운드가 오는 23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를 공식 후원한 하나금융그룹은 '하나 파워 온 챌린지 : 사회혁신 앙트프러너' 스페셜에디션으로 기획했으며, (사)소시얼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Social Enterprise Network, SEN)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주최한다. 또한 사회혁신 전문 컨설팅·임팩트 투자기관인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와 한국임팩트투자네트워크(KIIN)가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 SVCA는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재무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사회혁신기업 발굴 등용문으로도 불린다.

대표적인 수상 기업으로는 게임을 통해 나무를 심는 '트리플래닛(2010)', 촛불만으로 작동하는 LED램프를 개발해낸 소셜벤처 '루미르(2014)', 점자형 스마트워치를 만든 스타트업 '닷(2014)', 자동차 폐기물로 패션 용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기업 '모어댄(2015)', 대나무 칫솔을 만드는 회사 '닥터노아(2016)', 장애인·어르신들도 사용 가능한 석션기능을 갖춘 칫솔 제작업체 '블루레오(2017)', 버려지는 우유로 안전한 장난감을 만드는 '크리에이터스랩(2017)' 등이 있다.

이번 대회는 스타트업 부문(일반인 창업팀 및 법인 설립 3년 이내 기업)과 아이디어 부문(대학생·대학원생 창업팀만 참가 가능)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스타트업 부문 중 2개 팀은 UC버클리경영대학원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소셜벤처 경진대회(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 GSVC) 결선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MYSC 김정태 대표는 "소셜벤처의 혁신적인 도전들이 잘 검증되면 대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스케일업도 가능하다"라며, "이번 시도들로 인한 혁신성장의 의미가 높아 질것이다"라고 이번 대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주최 기관인 (사)소시얼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SEN)의 이종현 상임이사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청년들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접어든 길목에서 글로벌 시장 변화의 트랜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러한 변화의 트랜드가 결국 우리사회를 건강하고 가치있는 삶으로 돌아오게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참가 기업들을 응원했다.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활용한 패션소품, 시각장애인을 위한 포용적 디자인을 적용한 지갑, 생태계 교란종을 활용한 펫 제품 등 혁신적인 솔루션을 가진 소셜벤처의 비즈니스모델을 피칭한다. 또 직접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공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공개형 데모데이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참관을 원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더나은미래

2018.2.20

6명의 소셜벤처 리더 성장 스토리 담은 책 나왔다...'젊은 소셜벤처에게 묻다' 저자 인터뷰<上>

성공한 기업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35)

초기 전략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혁신하는 조직들이 결국 목표를 이루더군요(이새롬 서울대 경영학 박사·31)

도 대표와 이 박사는 지난 2년간 초기·중기·성숙기 단계에 있는 6명의 젊은 소셜벤처 리더들의 '고군분투 성장 스토리'를 마주했다. 그리고 최근 이들의 성장기를 엮은 '젊은 소셜벤처에게 묻다'(남해의봄날·1만5000원)를 출판했다. 청년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시 기회를 제공하거나 수익활동을 연결하는 **'위누'**의 허미호 대표,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 데이터를 분석해 재해지역의 복구 지도나 쪽방촌 소방 지도 등을 제작하는 **'엔젤스윙'**의 박원녕 대표, 영세농가들의 채소와 과일로 건강한 음료를 만들며 청년자립기금을 조성한 **'머시주스'**의 문정한 대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진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비욘드'**의 김경환 대표, 점자 교육 기기와 보급에 힘쓰는 **'오파테크'**의 김항석 이사, 정신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해 자립을 돕는 **'히즈빈스'**의 임정택 대표가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포기할까 고민하는 예비 창업가들에게 '단비' 되어주길

지난 19일 저자 두 명을 만나, 책 속에 담긴 차별점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다. 이새롬 박사는 예비 소셜벤처 창업가들에게 '교과서'가 아닌 '지침서' 같은 책을 내놓고 싶었다며 입을 열었다. 이 박사는 "대학원에서 테드엑스(TEDx)를 설립해 활동하던 중 소셜벤처를 창업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대학원 선배이자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을 하는 도 대표에게 출판 제의를 했다"고 말했다. 지역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경영정보시스템을 연구한 이 박사는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TEDxSNU'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같은 개방형 협업이나 사회문제를 시민들이 해결하는 형태의 혁신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도 대표는 이 박사의 제안이 반가웠다. 마침 과거에 읽었던 '세상을 바꾸는 대안기업가 80인'(실벵 다르니·마튜 르 루 지음)의 한국 버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 2007년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에서 나와 임팩트 비즈니스 전문조직인 임팩트스퀘어를 설립한 도 대표는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에 투자와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사업 노하우를 넘어서 예비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창업가들이 가져야할 덕목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소셜 이노베이터에게 투자하고 엑셀러레이팅하는 도 대표는 평소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창업에 관해 질문세례를 받는다고 했다.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차이는 무엇인가' '창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등 질문도 가지각색이다. 도 대표는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많은데 궁금증을 해소할 방법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무엇보다 사회적경제는 시대적 흐름이자 사회적인 현상인데, 이론처럼 정의해 공부하려는 이들이 많아 잘못된 포인트를 짚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데 국내에는 이런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다는 것. "사회적경제에 입문하는 친구들에게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사례로 보는 성공담과 실패담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책 속엔 6명의 소셜벤처 리더들의 진솔한 창업 과정은 물론 김재구 전(前)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과 글로벌 기반 임팩트 투자사 디쓰리쥬빌리의 이덕준 대표의 성공한 기업의 키포인트(Key Point)도 담겼다.

◇소셜 이노베이터 6人6色 이야기-①엔젤스윙·프로젝트 비욘드

엔젤스윙와 프로젝트 비욘드는 초기 단계의 소셜벤처다. 박원녕, 김경환 두 대표 모두 대학생 신분으로 사업 모델을 구상해 창업 3년차에 접어들었다. 저자들이 이 두 조직에 주목했던 이유는 비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동기 때문. 두 대표 모두 사회문제 해결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단다. 홀어머니 아래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낸 김경환 대표는 자신이 디자인을 통해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패션교육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을 돕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다. 박원녕 대표는 미국 조지아공과대학을 휴학하고 네팔 지진 현장에서 드론으로 약품을 전달하다 사업을 구체화시켰다. 드론기술을 이용해 취약계층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초기 기업들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줄 순 있어도 사람은 바꿀 수 없더라고요.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벌면서도 좋은 일을 하겠다는 추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어떤 사회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반드시 풀겠다는 목표를 명확히하고, 구체적인 의지를 가져야합니다. 동기가 강하다는 것은 그 회사의 스토리가 강하다는 뜻이거든요."(도현명 대표)

아시아경제 2016.05.03.

[미리보는 아시아미래기업포럼]

소셜벤처 + 대기업 '상생 컬래버'

연 매출 2000만원대 지역의류브랜드, 현대차 멘토링 받고 매출 15배 급증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 대구 동구 신천동에 소재한 수제화 업체 브러셔는 '이재용 구두'로 대박을 터뜨렸다. 최근 대구를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곳 신발을 구입한 것이 인연이 됐다. 금강제화에서 구두를 제작했던 제화 명인과 청년 창업자가 손잡고 타이어 패턴을 밑창에 적용한 인체공학적인 신발을 만들기 시작한 지 불과 1년여만이다. 하루 10켤레가 팔리던 매출은 이제 10배 이상이 됐다. 온라인 쇼핑몰 접속자는 하루 30명에서 3000명 이상으로 폭증하며 연말까지 3600켤레 판매라는 목표까지 세웠다.

#2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소규모 봉제공장들과 지역 의류 브랜드를 생산하는 '000간(공공공간)'은 지난해 매출 3억원을 올렸다. 2012년 매출 2000만원에 불과하던 기업이 3년새 15배로 성장한 것이다. 이 회사는 일대 봉제공장과의 협업을 통해 창신동의 경제 문제와 환경 문제까지 해결했다. 청년 봉제사를 육성해 지역에서 협업을 이뤄낸 것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와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해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지역 기업이 단기간 내 성장한 배경에는 대기업의 지원이 숨어 있다. 소셜벤처와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현대차그룹과 삼성, SK 등 국내 대기업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에 나선 결과다. 창신동 의류 브랜드 업체 000간의 15배 매출 성장은 현대차그룹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창업 멘토링에 나서면서 가능해졌다. 이제는 상호명보다 '이재용 구두 가게'로 유명해진 브러셔 역시 지난해 삼성으로부터 재원 투자와 컨설팅을 받으며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중장기 지원에 팔 걷은 대기업= 소셜벤처 기업 지원에 나선 대기업들은 과거 무작위 단발성에서 이제는 중장기 지원책으로 방향을 바꿨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게 산업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정부의 '1호' 창조경제혁신센터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모델로 자리 잡았다. 2014년 9월 스타트업 18개팀(1기)으로 출발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표적 창업보육프로그램 C-랩은 현재 2기를 거쳐 3기(13개 팀)째를 맞았다. 이들은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총 61억원의 매출과 110억원의 투자 유치를 기록했다. 이중 16개 기업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진출에도 성공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2013년, 4년 내 500개 창업, 2500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제조·서비스 분야 대표 소셜벤처 모델을 육성하고 신규 사업을 선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소셜벤처 육성 부문은 세부적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요양보호사 800여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노인요양보호사업인 '안심생활'과 노인·장애인 복지차사업인 '이지무브', 초기 소셜벤처 창업지원인 '서초창의허브'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비는 물론 사업지와 컨설팅까지 지원에 나서고 있다.

SK는 2010년 1월 대기업 최초로 사회적 기업단을 출범시켰다. 사회적 기업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SK가 내놓은 전략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과 SK그룹 관계사 고유 역량을 활용한 'SK 역량 활용'이다. 각 사안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해 소셜벤처의 사업 역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SK그룹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청년자립프로그램 'SK뉴스쿨' 등을 통해 서비스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이은 성공 신화, 힘 받는 소셜벤처= 지난해 말 삼성의 C-랩을 졸업한 2기의 마이크로코어는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 재봉기의 핵심 부품인 밑실 공급장치를 만드는 이 스타트업은 지난해 7월 대구센터의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모습을 보였다. 재봉기 밑실 공급장치 기술은 지난 70년간 일본 기업이 독점했지만 마이크로코어는 일본 기술 대신 주름이 적고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는 체인형 바느질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대구센터는 시제품 제작과 투자 유치, 박람회 참여 등의 지원을 했다. 최근까지 3억3000만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SK그룹이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고택 리조트 '구름에'는 지역상생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1970년대 안동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한 고택을 SK가 리조트 사업으로 부활시킨 곳으로 지역 장인들이 공급한 식음료와 침구류를 사용하고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코오롱의 혁신 실험으로 불리는 '커먼그라운드'는 유통사업 진출과 지역사회와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컨테이너 200여개를 쌓은 건축물에 지역 소상공인이나 청년 창업자를 입점시킨 프로그램으로 오픈 100일 집계 당시 100억원의 누적매출, 11월까지 1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콘셉트의 비즈니스가 성공한 순간으로 코오롱은 이같은 커머셜 버전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선순환 끌어내는 지원 사업= 대기업들의 소셜벤처 중장기 지원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인근 대학과의 창업 컨설팅 협약이 이뤄진 게 대표적이다.

대구·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근 29개 대학에 '창업 교육과정'을 개설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삼성은 각 대학의 창업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며 해당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가 성공할 수 있도록 C-랩과 연계한 창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만큼 사회에 기부하는 형식도 늘고 있다. 종이 옷걸이 광고 플랫폼 업체 두손컴퍼니는 현대차그룹에 창업 지원을 받은 후 매출이 12배 뛴 후 노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 탈출'을 슬로건으로 이제는 '고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숙인 자활의 성공적인 롤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SK가 카이스트와 함께 제공하는 MBA 프로그램도 비슷하다. 2013년에 개설한 '카이스트 사회적기업가 MBA'로, 혁신적 창업역량과 경영 전문성을 겸비한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개설한 2년 전일제 과정이다. 매년 미국, 영국 등 혁신적 창업 사고와 사회적기업 역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지원하며 글로벌 영감과 통찰력 확대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37명의 학생이 졸업하여 사회적기업 창업 및 경영 스케일업(Scale-up)을 실현했다. 올해 2월에는 4기 학생들이 입학하여 사회적기업 창업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시사IN “소셜벤처의 성지 성수동에 가다” 2016. 05. 23.

성수동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동네다. 성수동의 사람과 단체들이 서로 얽혀 만들어내는 변화를 읽어내면 지금 조성되고 있는 사회 혁신 생태계의 꼴이 보인다.

고재열 기자 scoop@sisain.co.kr 2016년 05월 23일 월요일 제453호

청년들이 서울 곳곳에서 희망을 짓는다. 이 ‘농사’가 흉년일지 풍년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헬조선에서 버티기 위해 청년과 청년이, 청년과 지자체가 손을 잡았다. 활동도 성과도 아직까지는 모호하고 막연하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지금도 묵묵히 판을 깔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낸 ‘청년 성지’ 네 곳을 둘러봤다. 청년들이 일궈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요즘 부동산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지역이 있다. 그동안 변두리로 간주됐던, 서울 성수동이다. ‘재벌 3세가 개발에 들어갔다’ ‘어떤 연예인이 빌딩을 샀다’ ‘서울시장이 주목하는 동네다’ 따위의 소문이 퍼졌다.

이런 풍문 때문에 성수동을 방문한 부동산 투자자들은 동네를 몇 바퀴 돌아본 뒤 대개 한숨을 짓고 돌아간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어서다. 조용한 주택가라 유동인구도 적다. 더욱이 사방이 막혀 있다. 남쪽 한강 방향엔 아파트 단지와 빌라, 북쪽으로는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이 버티고 있다. 서쪽으로는 중랑천이 유유히 흐르고, 동쪽은 자동차 수리점, 인쇄소 등 작은 작업장으로 빽빽하다. 성수동은, 더 이상 확장될 여지가 없는, 도시 가운데 고도(孤島) 같은 느낌을 준다.



ⓒ시사IN 이명익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22일 성수동 공장에서 ‘성수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성수동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동네다. 누가 안내하느냐에 따라 마을의 느낌이 천차만별이다. 성수동을 '사회혁신 골목'으로 아는 사람들은 곳곳에 숨어 있는 소셜 벤처들에 주목한다. 어떤 안내자에게 성수동은, 홍대 앞 스타일리시한 예술가들이 이주한 동네다. 서울시나 성동구청은 성수동을 '수제화 골목'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수동을 제대로 알려면, 이 같은 여러 겹의 얼굴을 동시에 봐야 한다. 성수동의 사람과 단체들이 서로 얽혀서 만들어내는 복잡다단한 변화를 읽어내야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생태계의 꼴이 보인다.

걸어서 1분 거리인 '소셜 벤처' 이웃사촌

김윤지 · 박선경씨가 사회적 기업 핑귀노스를 창업하게 된 계기는 '베이비박스'다. 문자 그대로 갓난아이를 넣어두도록 설계된 이 박스는 갓난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게 된 부모들이 주된 이용자다. 한국의 경우, 교회 두 곳에 설치되어 있다. 6년여 동안 1000여 명의 갓난아이가 베이비박스를 통해 시설로 입양되었다.

두 활동가가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베이비박스에 대한 사회의 논의 수준이 너무나 초보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생명 하나라도 구하려면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영아 유기를 조장할 뿐이라고 맞선다. 김윤지 · 박선경 두 활동가는 현장 조사를 거친 뒤 베이비박스가 다른 사회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사IN 신선영

성수동은 홍대 앞 스타일리시한 예술가들이 이주한 동네이기도 하다.

김윤지씨에 따르면, 베이비박스는 한국 사회 모순의 집약체다. “많은 한국 아이들이 여전히 해외로 나가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엔 혼혈아를 주로 보냈다. 경제개발기에는 빈곤층 자녀들이 해외에 입양되었고, 지금은 장애아를 보낸다.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영아를 버리는 이들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집단은 경제력 없는 청소년들이다. 불법 체류자들이 영아를 유기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자녀만은 한국 국적을 갖게 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이런 문제의식을 핑귀노스란 사회적 기업을 통해 풀어나가게 된 것은 루트임팩트라는 ‘체인지 메이커(사회문제를 혁신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 지원 조직’을 접하면서부터다. 루트임팩트를 통해 사회문제를 공감하고 후원하려는 사람과 단체를 많이 만났는데, 그중 상당수가 성수동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 두 사람과 핑귀노스도 같은 식구가 되었다. ‘성수동 사람’들은 김윤지·박선경씨의 구상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영상물 제작을 돕고 발표회도 마련해주었다. 김씨는 자신이 일종의 ‘클러스트’에 들어왔다는 것을 서서히 실감하게 되었다. “실리콘밸리가 벤처 기업들의 클러스트라면, 성수동은 ‘소셜 미션(사회적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 벤처’들의 클러스트다. 이런 클러스트는 다른 나라에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성수동 골목에는) 대체로 1~2분, 멀어도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다양한 소셜 벤처가 있다. ‘공공선을 위해 고민하는 이웃들’이 근처에 있다는 게 큰 힘이 된다. 서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시사IN 신선영

성수동에는 ‘소셜 미션’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 벤처들이 많다. 박선경·김윤지씨(위 왼쪽부터)가 만든 ‘핑귀노스.

성수동 혁신골목에는 핑귀노스처럼 시작 단계인 소셜 벤처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두손컴퍼니처럼 이미 큰 성공을 거둔 곳도 있다. 두손컴퍼니는 ‘일거리를 통해 빈곤을 퇴치한다’는 슬로건 아래 노숙자들을 고용해 포장배송을 하는 기업으로 창업되었다. 5년 전 대학 동아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사업을 크게 키워 건물 몇 개 층을 사용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그림을 활용해서 인테리어 용품을 만드는 ‘마리몬드’ 역시 성수동 혁신골목에 있다. 마리몬드의 매출이 늘어난 덕분에 배송업체인 두손컴퍼니 역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소셜 벤처계의 메세나, ‘루트임팩트’와 ‘소풍’

핑거노스를 도와준 체인지 메이커 지원단체 ‘루트임팩트’의 대표는 현대해상 정몽윤 회장의 장남인 정경선씨(<시사IN> 제426호 인터뷰 ‘조연의 피가 흐르는 재벌 3세의 위대한 도전’ 기사 참조)다. ‘당신의 첫 번째 발걸음을 루트임팩트와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소셜 벤처들과 소통하며 지원 방법을 찾는다. 이런 후원에 힘입은 소셜 벤처들이 모여 ‘성수동 혁신골목’을 이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혁신파크(서울시가 은평구 녹번동에 조성한 ‘사회혁신 플랫폼’)의 모델로 성수동 혁신골목을 들곤 한다. ‘성수동처럼 소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라’는 것이다.

지원단체 가운데 루트임팩트와 함께 주목할 곳으로는 소풍(Sopoong)이 있다. 소셜 벤처들이 자신의 다리로 설 때까지 키워주는 ‘인큐베이팅’ 회사다.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씨가 설립했다. 눈에 보이는 실적도 있다. 소풍이 초기에 투자한 쏘카(자동차 셰어링)나 텀블벅(크라우드 펀딩) 등은 수십억 원 이상을 투자받으며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금 소풍 대표인 한상엽씨 역시 소풍의 투자를 받아 위즈돔(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한 경력이 있다.

소풍은 자사 건물을 소셜 벤처 창업자들에게 개방한다. 1층에는 소셜 벤처 관계자들이 작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페가 있다. 2층에는 모임 공간이 있다. 3~4층은 사무실이다. 희망제작소 부소장을 지낸 이진순 박사의 ‘와글’도 여기 입주해 있다. 와글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정치 벤처기업’인데, 풀뿌리 시민정치 연구와 확산에 몰두하고 있다.

‘좋은 사람들’을 찾아온 개성 있는 자영업자들

소셜 벤처, 체인지 메이커 지원단체 외에 성수동 혁신골목 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집단이 자영업자들이다. 소셜 벤처 관계자들과 생각이 통하고,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동네에서 커피 맛이 가장 좋다고 소문난 카페 메쉬(Mesh)는 지난해 초에 문을 열었다.

아름다운가게에서 바리스타로 일했던 메쉬 주인 김기훈씨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성수동으로 왔다고 했다. “사회적 기업들이 밀집한 곳이라면 좋은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았다. 그런 면에서는 성공했다. 여기 사람들은 늘 서로 안부를 묻고 걱정해준다. 정말 시골의 동네 같은 느낌이다.” 다만 가게 임차료가 크게 올라 걱정이다. 요즘 들어 의외로 고객이 늘어나서일 터이다.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창업한 가게 몇 곳은 이미 문을 닫았다고 한다.



ⓒ시사IN 신선영

카페 메쉬의 김기훈 바리스타(오른쪽)와 김현섭 로스터(왼쪽)는 소셜 벤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기훈씨처럼 '개성 있는 자영업자'들이 성수동 골목에 조그만 가게들을 계속 내고 있다. 제과나 제빵 전문가들이 차린 상점들 사이에 수제 맥주집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런저런 특색 있는 가게를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다. 어떤 가게는 이미 맛집으로 인정받아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했다.

'소녀방앗간' 같은 식당은 산지에서 직거래한 우리 농산물로 담백한 요리를 만들어 성수동 활동가들의 발길을 끌어당기고 있다. 버려진 지하공간을 파티룸으로 꾸민 '스페이스 사이'에서는 대규모 파티를 열 수도 있다.

디자이너나 예술가들이 직접 차린 가게도 있다. 디자이너가 연 '자그마치'와 원예가가 꾸민 '필로소피' 등이다. 판화가 남천우씨가 운영하는 카페 '페이퍼 크라운'에는 판화를 제작하고 인쇄할 수 있는 공방이 마련되어 있다.

문화기획자들이여 성수동으로 오라

서울 성수동이 개성 넘치는 마을로 변신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홍대 앞 건물주들 덕분이다. 홍대 앞을 문화명소로 꾸몄던 주역들, 즉 홍대 출신 1990년대 학번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성수동으로 대거 이주하고 있는 것이다. '홍대 망명단'을 이끄는 대표적 인물로는 김윤환 뚝도기획단 단장이 있다. 김씨는 12년 전, 각종 비리와 특혜의 온상으로 거품을 키우던 끝에 공사 중단 사태에 이른 목동 예술인회관을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게 만들자는 제안으로 주목받았다. 이 공간을 예술인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해서 점유하는, 이른바 '오아시스 프로젝트'였다. 돌이켜보면 일종의 해적 같은 짓이었지만, '버려진 예술인회관을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발상은 매우 신선했다. 이를 계기로 김윤환씨는 한동안 서울시 창작공간추진단의 단장을 맡기도 했다.
김윤환 단장의 역량이 가장 눈부시게 드러났던 사건은 성수동 뚝섬의 '뚝도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다. 뚝도시장은 한때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과 더불어 서울의 3대 시장으로 불렸다. 일제강점기까지는 한강 물류의 집산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동네 시장 규모로 전락했다. 시장을 가로지르는 2차선 군사도로 때문이다. 더욱이 뚝도시장과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이마트 매장이 들어섰다. 김 단장에게 맡겨진 소임은 문화예술의 힘으로 뚝도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김 단장이 뚝도시장을 부활시키기 위해 쓴 카드가 바로 한강 도하작전용 부두를 활용해 만든 활어시장이었다. "간단한 발상이었다. 분단 이후 한강 하구가 막히면서 뚝도시장에 물고기를 운반하려면 수조차가 필요했다. 마침 경인운하의 연결로 서해의 고깃배들이 한강을 통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김 단장은 1920~1930년대 건축가 및 개발업자로 성수동에서 일종의 '뉴타운 사업'을 벌인 정세권이란 인물에게서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정세권은 일본인들이 명동 등을 일본식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보고 '우리 식의 한옥마을을 조성해야 한다'며 성수동에 개량한옥 지구인 '새촌'을 조성했던 사람이다. 시인 백석, 화가 정현웅 등이 새촌으로 이주해 살았다.



ⓒ시사IN 신선영

김윤환 뚝도기획단 단장(오른쪽)과 아내 김강씨(왼쪽)는 성수동 뚝섬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김윤환 단장 이외에도 성수동에는 실력 있는 문화기획자들이 활동 중이다. 신세대 문화기획자인 신윤선씨가 '유쾌한 아이디어 성수동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기업 호오디자인생활예술, 도시재생 전문 건축회사 어반소사이어티 등과 함께 <성수애서>라는 잡지를 만들기도 했다. 올가을에는 성수동 공장 지대의 벽들을 미디어아트의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스트리트 미디어그램' 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근에는 '지리산 프로젝트'의 총괄 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김준기 전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이 성수동 '홍대 망명단'에 결합했다. 김 전 실장은 1990년대 홍대 미대 토론그룹의 주축으로, 자율공공실천회의라는 미술계 이슈를 공론화하는 그룹을 이끌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색깔의 인물들이 모여들면서 당분간 성수동의 열기는 뜨거울 것 같다. 대기업도 성수동 소셜 벤처를 돕는 행렬에 동참했다. 롯데면세점이 서울숲 진입로 부지에 컨테이너 116개로 쌓은 언더스탠드애비뉴는 예술가들의 작업실은 물론 사회적 기업의 매장, 청소년 취업교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서식품에서도 '맥심카페-모카책방'을 열고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한다. 청강문화산업대학도 성수동에 '카페 성수'를 열어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성수동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IN (http://www.sisa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2016.11.21.

['임팩트 투자' 새로운 실험]

'임팩트 투자 중심 메카' 성수동에 20여곳 둥지.. 서로 협업 제안하고 투자 받기도

가치관.지향점 서로 비슷해 크고 작은 모임 끊임없이 가져
소풍.루트임팩트 중심으로 골목 구석 구석에 자리 잡아



서울숲과 인접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엔 현재 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자리를 잡아 '소셜벤처밸리'를 이루고 있다. 오래된 수제화 공장들과 낮은 주택들이 있는 조용한 동네였던 이곳에서는 현재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겠다는 '임팩트투자' 실험이 한창이다.

성수동을 '소셜벤처밸리'로 만든 일등공신은 임팩트 투자기관들이다. 성수동에 둥지를 튼 대표적 임팩트투자기관 소풍(Sopoong)과 루트임팩트는 분당선 서울숲역 출구를 나와 만나는 차로를 기준으로 양 방향에 각각 둥지를 틀었고 이 근방에 관련 기관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각 기업을 발굴.지원.육성하고 생태계를 만드는 등 중심 역할을 톡톡히 맡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창업자인 이재웅씨가 지난 2008년 설립한 소풍은 'Social power of networked group'의 약자로, 소셜벤처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뿐 아니라 커뮤니티,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특히 신생 및 초기 단계의 소셜벤처를 위한 3개월(12주) 기간의 기수별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소셜벤처엔 시드투자를 실시하고 단계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풍 사무실 건물 1층에 자리를 잡은 '카우앤독' 카페는 '협업(co-work)'과 '좋은 일을 한다(do Good)'의 합성어로 소셜벤처들의 협업공간이다. '개나 소나(cow&dog)' 자유롭게 와서 일하되 창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며 소셜벤처 투자업체인 소풍이 지었다. 때때로 투자설명회가 이뤄지기도 하고 크고 작은 모임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서 성수동의 '시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문제를 혁신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체인지메이커'를 발굴.육성하며 이들 사이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의 정경선 대표는 2014년 성수동에 자리를 잡았다. 현재 혁신가들의 커뮤니티 공간 '디웰 살롱'과 혁신가들의 셰어하우스 '디웰하우스'를 운영 중이며 임팩트 투자회사인 HGI(Holistic Growth Initiative)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HGI는 특히 핵심가치인 다양성, 포용성, 웰빙 측면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벤처들을 육성하며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 대표는 성수동 근방에 연면적 약 6611㎡(2000평), 500명 정도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셰어오피스, 즉 공유 사무공간을 설립 중이다.

이 밖에 D3 쥬빌리, 미스크(MYSC) 등의 임팩트투자기관도 성수동에 입주해 있다. 임팩트투자 연구.컨설팅 기관인 임팩트스퀘어, 서울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 운영기관 팬임팩트코리아도 모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임팩트투자기관의 투자 손길을 기다리는 다양한 소셜벤처도 성수동 골목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다.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두손 컴퍼니', 위안부 할머니들이 미술치료를 받을 때 그린 그림을 이용한 디자인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기부하는 '마리몬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멘토링 교육을 실시하는 '공부의 신', 농촌과 도시를 잇는 한식 밥집 '소녀방앗간' 등이 대표적이다.

박보혜 마리몬드 브랜드스토리 실장은 "성수동엔 비슷한 가치관과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 이야기도 잘 통하고 힘이 될 때가 많다"며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함께 컬래버레이션(협업)을 제안하기도 하고 투자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아무래도 투자는 '신뢰'이다보니 같은 동네에 가까이 있으며 쌓인 관계를 통해 투자가 더 용이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수동에 입주해 있는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앞으로 이곳도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더 많은 상징성과 힘을 가지고 사회적 트렌드를 만들어나간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이쪽(사회적 경제) 분야로 관심을 가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2017. 02. 15.

더 나은 세상 꿈꾸는 '소셜 벤처'가 뜬다

사회 문제 해결·공익 실현 추구하는 '착한 기업'
소셜 벤처 활성화 위한 '임팩트 투자'도 증가세

새해를 맞아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다짐한 당신. 연탄 기부, 학용품 기부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본다. 그런데 난관에 봉착한다. 당신의 지갑에는 단돈 2만 원이 전부다. 기부를 하기에도, 물품을 구매하기에도 약간 부족하다. 그럼에도 당신은 2만 원을 뜻 깊게 쓰고자 마음먹었다. 당신이 가진 2만 원은 과연 어떠한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바로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은 저개발국가 장애인을 위한 '인공 무릎 관절'이다. 인공 관절은 제작 과정이 복잡해 고가인 경우가 많다. 심지어 최고급 인공 관절이 부착된 의족의 가격은 1억 원대에 육박하기도 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출신 조엘 새들러와 에릭 토셀은 지난 2007년 '리모션 디자인(re:motion designs)'이라는 소셜벤처(Social Venture)를 창업했다. 그리고 플라스틱과 볼트, 너트, 베어링 등으로 구성된 인공 관절 '자이푸르니(JaipurKnee)'를 개발했다. 리모션 디자인은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인공 무릎 관절인 자이푸르니를 개발도상국의 다리 절단 장애인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놀라지 마시라. 자이푸르니의 판매 가격은 고작 20달러, 한화로는 약 2만 원 수준이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성능은 일반 인공 무릎 관절 못지않다. 이처럼 혁신적인 인공 무릎 관절을 개발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리모션 디자인은 소셜벤처가 추구하는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 해결과 공익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리모션 디자인과 같은 수많은 소셜벤처들이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요 소셜벤처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은 많지 않지만 사회 변화를 꿈꾸는 창업가들의 도전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국내 주요 투자기관과 대기업들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임팩트(Impact)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투자는 천편일률적인 사회공헌 활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포춘코리아가 새해를 맞아 창의성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소셜벤처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매서운 추위가 절정에 다다른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1번 출구 앞. 빨간색 조끼를 입은 노인 한 분이 지나가는 행인들 속에서 잡지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 잡지는 노숙인 자활을 위해 발행되고 있는 '빅이슈(Big Issue)'였다.

빅이슈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숙자'라는 개념으로 일컬어지는 홈리스(Homeless) 생활을 경험했다. 대다수 사람들의 머릿속에 스며든 노숙자의 이미지는 그리 좋지 못하다. 한 손에 소주병을 든 채, 지하철 역 구석에 박스를 깔고 누워 잠을 자는 모습. 하지만 빅이슈 판매원, '빅판'들의 모습에서는 노숙자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 혁신적 아이디어로 사회적 문제 해결

빅이슈는 지난 1991년 영국의 화장품 기업인 ‘더 바디샵’ 의 창업자 아니타 로딕의 남편 고든 로딕이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창간한 대중문화잡지다. 빅이슈는 철저히 주거 취약계층에게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한다. 서점이나 온라인 마켓, 흔히 볼 수 있는 가판대에서는 빅이슈를 구매할 수 없다.

빅이슈가 제공하는 홈리스 재활 지원 방식은 대략 이렇다. 빅판을 원하는 사람은 우선 판매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이 끝나면 ‘임시 빅판 ID’와 빅이슈 10권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최초 제공받은 10권(권당 5,000원)을 모두 판매하면 5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종잣돈으로 활용된다. 빅판은 빅이슈에서 잡지를 권당 2,500원에 구매해 5,000원에 판매하는 과정을 2주간 거친다. 2주간 성실하게 판매를 한 빅판은 비로소 ‘정식 빅판 ID’를 발급받게 된다.

현재 빅이슈는 영국,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10개국에서 발행되며 홈리스들의 자활을 돕고 있다. 그리고 빅이슈는 ‘소셜벤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소셜벤처의 개념은 빅이슈의 창간 목적과 유사하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벤처가 바로 소셜벤처다. 크게 보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과연 무엇일까?

김창현 한국사회적기업협회 과장은 말한다.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은 차이가 발생해요. 사회적 기업이 당장의 문제 해결, 혹은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소셜벤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죠. 쉽게 말해 사회적 기업이 ‘나눔’과 ‘봉사’처럼 무형의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기부, 봉사 등 사회공헌을 열심히 하는 기업을 우리는 ‘착한 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소셜벤처는 처음부터 ‘착한 기업’이라는 뚜렷한 설립 의도를 갖고 출발한다고 볼 수 있죠.”

소셜벤처는 기존 벤처기업과도 차별점이 뚜렷하다. 벤처기업은 개인 또는 일정 집단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 하지만 소셜벤처는 이러한 벤처기업의 정의에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이 추가된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셜벤처가 갖고 있는 뚜렷한 특징이다.

국내에서 처음 소셜벤처라는 단어가 등장한 시점은 2000년대 중반 무렵이다. 당시는 얼어붙은 경기 불황에 따른 청년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일반 스타트업과는 또 다른 의미인 ‘소셜벤처’라는 개념에 주목했다. 취업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창업 열기를 북돋우겠다는 의지였다. 그리고 2009년 ‘제 1회 소셜벤처 경연대회’가 열리면서 공식적으로 ‘소셜벤처’라는 단어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당시 1회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기업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교육 분야 소셜벤처 ‘공부의 신’이었다.

현재 국내 소셜벤처 업계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집계 자료는 없다. 다만 소셜벤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 사회적 기업 현황을 통해 대략이나마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곳은 총 1,713개다. 이 중 약 1,600여 곳이 여전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 소셜벤처로 출발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곳도 여럿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지난 10여년간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장을 만들어낸 국내 주요 소셜벤처의 면모를 살펴보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소셜벤처

딜라이트는 국내 소셜벤처 업계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린다. 지난 2010년 대학생 3명이 뭉쳐 만든 딜라이트는 '들을 수 있는 자유'를 표방하며 보청기 사업에 뛰어들었다.

100만 원대의 비싼 가격 탓에 보청기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30만 원대의 저렴한 보청기를 출시했다. 또 청각장애가 있는 최저 소득층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무료로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현재 딜라이트는 대원제약의 계열사로 편입돼 국내 대표 보청기 회사로 성장했다. 그리고 딜라이트 창업자인 김정현 대표는 회사 매각 후 또 다른 소셜벤처 '우주'를 창업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현 대표는 말한다. "사회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소셜벤처가 기업의 방식을 통한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효율성과 확장성을 모두 가진 아주 매력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소셜벤처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사회적 취약 계층 중 신체적인 장애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셜벤처는 딜라이트뿐만이 아니다.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를 활용한 영상도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열린책장'도 착한 소셜벤처로 주목받고 있다. 강화평 열린책장 대표는 말한다. "처음 제가 생각한 사업모델은 취약계층에게 책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그 와중에 우연히 농아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제1 언어는 무엇일까요? 같은 한국인이지만 농아인들에게 한국어는 제2의 언어예요. 첫 번째 언어는 바로 수화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수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의 소통을 돕는 동시에 그분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현재 열린책장은 국내 주요 도서관에 수화영상 도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엄지장갑을 제작·판매하는 공익 프로젝트 설리번(Sullivan)을 후원하며 또 다른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마리몬드'는 소셜벤처 업계에서 보기 드문 한류 브랜드다. 한류 스타인 배우 박보검, 가수 겸 배우 수지가 마리몬드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알려지며 중화권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마리몬드가 특별한 이유는 비단 한류 브랜드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마리몬드가 추구하는 브랜드 철학은 '잃어버린 존귀함의 회복'이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있다. 마리몬드를 창업한 윤홍조 대표는 "대학 시절 우연히 접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압화(꽃과 잎을 눌러서 말린 그림) 작품을 접하고 이를 응용해 제품을 만들어보면 괜찮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며 "지금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텐트를 제조·개발하고 있는 '바이맘', 도시 양봉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반비즈', 환경문제 해결을 목표로 '전 세계 1억 그루의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트리플래닛' 등은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소셜벤처로 자리 잡았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지면에 소개하지 못한 수많은 소셜벤처가 각자가 꿈꾸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 소셜벤처의 씨앗 '임팩트 투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소셜벤처. 하지만 이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금전적인 부분이다. 당장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 구조상 초기 투자를 받는 것은 필수다.

소셜벤처가 떠오르면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의 투자가 바로 '임팩트 투자'다. 임팩트 투자는 일종의 '착한 투자'다.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 투자자들의 목적이 완전한 '수익 창출'이라면 임팩트 투자는 수익 이상의 가치 창출을 추구한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임팩트 투자 규모가 급성장 중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글로벌 임팩트 투자 규모는 70조 원 수준까지 성장했다. 오는 2020년에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 규모가 4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0여개의 임팩트 투자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재웅 다음 창업자가 설립한 '소풍'을 포함해 'D3쥬빌리', '크레비스',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등이 대표적이다.

소셜벤처에게 임팩트 투자기관은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다. 특히 '죽음의 계곡(데스밸리 · Death Valley)'이라 불리는 창업 3년차를 넘긴 소셜벤처들은 일반 투자기관에서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과연 무슨 뜻일까?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소셜벤처 대표 A씨는 말한다. "민간 투자기관들은 데스밸리를 넘긴 소셜벤처를 더 이상 '소셜벤처'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사업 방향성은 무시한 채 일반 벤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수익'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죠. 솔직히 일반 벤처기업에게 기대하는 수익률을 소셜벤처가 달성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설사 우여곡절 끝에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수익이 담보되는 영역으로의 진출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애초에 추구했던 소셜벤처라는 방향 자체가 틀어져 버리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소셜벤처의 가치와 방향성을 알아주는 임팩트 투자기관은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임팩트 투자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 마련에 고심하는 대기업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대기업에게 임팩트 투자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임팩트 투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은 SK그룹이다. 최태원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지난 2015년 시작된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담당한 '사회성과 인센티브 추진단'에 따르면 1차 프로젝트에 선정된 44개의 사회적 기업은 1년간 총 104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44개 기업에게 평균 6,000만 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최태원 회장은 인센티브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번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는 사회적 기업의 단기적 성장을 이끄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사회적 가치를 꿈꾼다"며 "세상에 그 꿈을 전달하고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언어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같은 임팩트 투자에 대한 관심은 비단 SK그룹에 그치지 않는다. LG전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LG 소셜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친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LG 소셜펀드' 조성을 위해 LG전자와 LG화학은 각각 20억 원을 출자했다.

커피 찌꺼기에 버섯균을 배양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해 사업화한 친환경 사회적 기업 '꼬마농부',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 계층을 고용해 자립 의지를 심어주는 한편 버려지는 유용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존에 이바지하는 '강산리사이클링' 등이 LG 소셜펀드를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소셜벤처다.

이밖에 현대자동차는 교통 약자들의 지원을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된 교통 소셜벤처 '이지무브'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특히 이지무브의 경우 현대차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가 아닌 독립된 기업으로 사업을 꾸려가고 있다. 이지무브는 현재 현대차의 든든한 지원을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여가며 2018년 매출 100억 원 달성이라는 목표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다.

그렇다면 임팩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대다수 임팩트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예비 창업자들이 소셜벤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활성화의 열쇠라고 말한다. 임팩트 투자업계 관계자 B씨는 말한다. "저는 소셜벤처가 독립기업으로서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창업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일반 벤처기업은 성장할수록 대기업의 타깃이 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회사를 성장시켜 매각한 뒤 그 돈을 기반으로 또 다른 창업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는 또 다시 불확실성 속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반면 소셜벤처는 상황이 달라요. 소셜벤처가 일종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대기업의 임팩트 투자가 늘어나면서 소셜벤처가 개척한 사업영역을 대기업이 앞장서서 보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도 해요. 자신만의 확고한 영역을 구축하기에는 소셜벤처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희는 언제나 소셜벤처 창업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비즈니스 모델 마련이 '생존의 열쇠'

취재 도중 오랜 만에 3년여 전 벤처업계 취재차 만났던 모 회사 대표 C씨를 만날 수 있었다. 당시 그는 기부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소셜벤처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새롭게 건넨 명함에는 과거에 알고 있던 소셜벤처가 아닌 다른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시원하게 말아먹었다"는 말과 함께 웃는 C씨에게 그간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솔직히 소셜벤처라는 끈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응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무엇보다 스스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에 포기를 결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당시 저희가 내건 철학은 분명 '올바른 일'이었지만 기업 존속을 위한 전략의 방향은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공익성만 추구하다 보니 수익 모델도 부족했고, 프로젝트 하나의 성패에 따라 회사 전체가 휘청거리기도 했으니까요."

소셜벤처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장 영역이다. 하지만 C씨의 말처럼 그저 '올바른 일'이라는 목표에만 집착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지속 가능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소셜벤처 생태계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은 과연 무엇일까?

라준영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말한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우선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면 어느 순간 존속 자체를 고민하는 시점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민간 차원의 임팩트 투자나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위태로운 회사에 호흡기를 부착하고 억지로 숨 쉬게 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셜벤처도 엄연히 하나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셜벤처는 착한 기업이다. 착한 기업은 사회를 착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특히 소셜벤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미처 보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소셜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착하고 멋진 소셜벤처가 꾸준히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2030 체인지 메이커들의 꿈이 자라는 ‘디웰하우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은 최근 소셜벤처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20여개의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탓에 최근 ‘소셜벤처밸리’로 불리기도 한다.

이곳에는 조금은 특별한 공간이 있다. 한적한 주택가 가운데 위치한 3층 건물에는 소셜벤처를 통해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이른바 ‘체인지 메이커(Changemaker)’들이 살고 있다. 이 공간의 이름은 ‘디웰(D-well)하우스’다.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가 마련한 디웰하우스에는 사회적 기업 운영자, 소셜벤처 및 비영리 활동가 등 다방면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체인지 메이커 20여명이 살고 있다.

입주 시 고려되는 유일한 부분은 연령이다. 디웰하우스 입주민의 나이는 20~30대의 미혼으로 한정된다. 지난해 기준 디웰하우스 입주민의 평균 연령은 29세다. 물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입주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조건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35만원 수준이다. 위치와 시설을 고려하면 꽤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다현 루트임팩트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말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일하려는 의지, 잠재적 역량, 긍정적인 사회적 임팩트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체인지 메이커들과 교류하며 영감과 자극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디웰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체화시킨 사례도 있고요.”

실제로 디웰하우스는 새롭게 소셜벤처 세계에 뛰어드는 창업가에게 기회의 공간으로 불린다.

선배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점자를 활용한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는 도트윈(Dotween)의 박재성·박재형 대표는 말한다. “저희가 처음 디웰에 입주했을 당시는 이제 막 사업을 준비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때 다른 선배 입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허성용 아프리카인사이트 대표, 정재성 로앤컴퍼니 공동 창업자, 김수진 위워크 코리아 커뮤니티 매니저 등 많은 분들이 경영 전략, 디자인, 패키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완성품에 대한 피드백도 얻을 수 있었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닷윈을 어엿한 주식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경선 루트임팩트 대표는 “디웰하우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2030 청년 체인지 메이커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돕는 커뮤니티 하우스”라며 “오는 하반기에는 체인지 메이커 500여 명이 업무를 보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무공간 ‘헤이그라운드’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포춘코리아 편집부/김병주 기자 bjh1127@hmgp.co.kr

조선일보 **2017. 03. 28.**

[더 나은 미래] 1세대 소셜벤처, 제 2의 도약!

빅워크 · 두손컴퍼니 · 비카인드 등 주목받던 1세대 소셜 벤처 기업
아이템 · 비즈니스 모델 바꾸며 재도약 시도하는 회사 늘어나

소셜벤처 두손컴퍼니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회사 운영의 최상위 가치로 두며 '핸디맨' 이라 부른다.
"종이옷걸이 사업을 3년 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B2B(기업 간 거래)로 주문을 받다보니, 일거리가 들쑥날쑥했습니다. 물량이 많을 때는 한 달에 노숙인분들이 100명가량 옷걸이 제작에 참여했지만, 없을 땐 또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를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일거리도 중요하거든요. 간간이 버는 돈으로 술을 드시거나, 경마장에 가기도 했고….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데는 임팩트가 없었습니다."(박찬재 두손컴퍼니 대표)

2012년부터 연예인 옷걸이, 디즈니 캐릭터 옷걸이 등으로 주목받은 소셜벤처 '두손컴퍼니'는 주요 사업 분야를 '제조업'에서 '물류업'으로 바꿨다. 기업 홍보 문구나 홍보 모델 등을 새긴 옷걸이 판을 기업 · 단체로부터 주문받아 쉼터의 노숙인들에게 제작을 맡긴 게 기존 사업 모델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B2B 방식으로는 노숙인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도 없었다. 두손컴퍼니의 미션인 '일자리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실현이 어려워 보였다.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게 소셜벤처 '마리몬드'의 물류 대행 사업이었다. 마리몬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꽃 작품을 이용해 휴대폰 케이스, 가방, 노트, 텀블러 등을 만드는 패션 브랜드로 아이돌 '수지'가 든 휴대폰케이스로 유명해진 소셜벤처다. 박 대표는 "물류업은 거래가 일어나면 수작업이 무조건 발생하게 된다"면서 "옷걸이 회사가 아닌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로서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텀블벅, 와디즈 등 크라우드펀딩 업체와 협약을 맺고 물류사업을 대행, 사업과 일자리 규모도 늘려나갔다. 18평짜리 창고에서 시작한 사업은 2년 만에 495㎡(150평) 규모 2곳, 231㎡(70평) 물류센터 1곳으로 확장됐다. 현재 두손컴퍼니에서는 23명의 노숙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5억원, 두손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사는 50여 개가 넘는다.

"2년가량 3000종이 넘는 제품의 물류를 담당하다보니,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누적됐어요. '어떤 색상이 어떤 유통 채널에서 잘 팔린다' 등 고객사별로 맞춤화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죠. 작년 말에 '창고대방출'이라는 쇼핑몰을 시범 버전으로 만들어봤는데, 한 고객사가 6개월에 걸쳐 판매했던 물량을 두 달 만에 다 팔았어요. 올해도 물류 스타트업으로서 혁신적인 모델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제조업에서 물류, 모금 플랫폼에서 콘텐츠 회사로… 소셜벤처들의 변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구단 공식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슛포러브 챌린지 영상.
1세대 소셜벤처들이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다. '슛포러브'라는 캠페인 이름으로 더 유명한 소셜벤처 '비카인드'도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14일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가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앞에서 열린 슛포러브 챌린지에 참여했다. 슛포러브는 2014년 비카인드가 시작한 소아암 환자를 돕는 축구 기부 캠페인으로, 지금까지 참여한 국내외 유명 축구선수와 연예인은 80명이 넘는다. 박지성, 안정환, 이천수 등 국내 선수뿐 아니라 FC바르셀로나의 대표 수비수였던 카를레스 푸욜, 브라질의 유명 축구 스타 카카 등도 참가했다. 선수들은 축구공을 차 1점부터 10점까지인 10m 앞의 과녁을 10번 맞힌다. 축구공으로 양궁 과녁을 맞히는 것이다. 만점은 100점이고, 1점당 1만원의 기부금이 적립된다. 스타들이 슈팅을 하면 점수만큼 후원사가 기부금을 낸다. 지금까지 자생한방병원, 국내 게임회사 플레이독소프트 등 파트너사와 유명인들이 참여해 '슛포러브' 챌린지로 2억원을 기부했다.

비카인드가 처음부터 축구 캠페인을 기획한 것은 아니었다. 2012년 창업 당시에는 'IT 기술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며 모금 플랫폼을 개발했다. 비카인드 플랫폼은 누구나 펀드레이저가 될 수 있는 모델로, 온라인 생일 모금, 도전 모금, 기념일 모금 등 각종 프로젝트를 열어 모금할 수 있었다. 김동준 비카인드 대표는 "IT에 뛰어난 재능과 전문성이 없다보니, 굳이 이 방법을 고집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IT라는 대세론에서 벗어나 멤버들이 가장 재밌게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소아암 모금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알게된 아이들의 소원이 '축구를 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에 착안, 2014년부터 슛포러브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

'연예인 섭외의 귀재'라는 별칭을 들을 추진력 덕분에 비카인드는 페이스북에서 이미 유명스타다. '슛포러브' 페이스북 구독자 수는 35만명이 넘고, 동영상 조회 수도 평균 60만회가 넘는다. 일종의 스포츠 콘텐츠 회사다. 운영비는 광고비로 충당하고, 기부금은 한국소아암재단,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백혈병소아암협회 등 파트너 비영리단체를 통해 100% 수혜자에게 전달된다.

"최근엔 후원사와 비카인드가 일대일 대결을 펼쳐서 이기는 쪽 소원을 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현재 최대 후원사인 자생한방병원이랑 저희 직원이 고삼차 마시기 대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14잔을 마셔서 이겼고, 그 대가로 자생한방병원한테 보약을 1000만원어치 받아서 소아암 환자 부모님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담았죠. 재밌는 콘텐츠에다 공익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면서 기부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요."

◇빅워크, 걷기 앱에서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진화를 꿈꾸다

2012년 출시 당시 걸으면 기부되는 앱으로 주목받았던 '빅워크'도 지난해 리뉴얼을 했다. 한완희 빅워크 대표는 "초창기에는 보여주기식 미션에 매몰돼 서비스가 큰 발전이 없었다"고 그간 고민을 토로했다. 2014년 문을 닫을 뻔한 위기에 처했던 빅워크는 회사의 미션을 재정립했다. 워킹앱에 그저 '공익성'만 덧입힌 것은 지향하는 바가 아니었다. 약 1년 동안 정리한 것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밌게,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였다. 미션을 바로 세우니, 구성원들이 같은 그림을 보게 됐다. '걸으면 기부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걸음'이 가진 의미를 구체적으로 부여하기 시작했다.

"유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왜 다른 걷기 어플이 아닌 '빅워크'를 쓰는지 물어봤죠. 기존 서비스는 걸어서 기부금만 모이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걸음이 쌓이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니 그 점을 유저들이 좋아하더라고요. “

단체나 기업만 후원사로 참여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개인이 '모음통'을 개설해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다.
빅워크 유저들은 본인이 공감하는 '모음통'에 참여하며 걸음을 쌓고, 적립된 걸음은 10m당 1원이 적립돼 현금이나 물품을 기부하게 된다. 캠페인이 개인으로 확산되며, 한동안 시들했던 빅워크 어플도 되살아났다. 한 커플은 지난달에 결혼식 답례품으로 소셜벤처 '크래프트링크'의 수공예 팔찌 100개를 준비해 남미 원주민 여성들과 아이를 후원하겠다는 물품 기부형 모음통을 개설했고, 현재 560명이 참가해 1만4771㎞의 거리를 걸었다(3월 21일 기준).

어플 안에 사회문제를 알려주는 매거진 코너도 개설했다. 70만명 빅워크 사용자들에게 '당신들의 참여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한완희 대표는 "서비스 성격이 헬스케어인지 사회공헌 플랫폼인지 헷갈렸는데, 이제 후자를 집중하고 있다"면서 "올해 목표는 개인이 기부나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2017. 04. 14.

“임대료 걱정 말고 소셜 벤처여 도약하라”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 캠퍼스소셜캠퍼스 온(溫) 서울’ 12일 개소
제로(0) 임대료, 촘촘한 네트워크로 사회적기업육성 허브 꿈꿔

막 싹을 틔운 사회적기업이 가지를 뻗고 무성한 잎을 단 나무로 성장하게 돕는 ‘인큐베이터’가 정부 주도로 서울에 만들어졌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 키워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놓인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은 12일 서울 성수동에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인 ‘소셜캠퍼스 온(溫) 서울’(이하 ‘온(溫)서울’) 개소식을 했다. 행사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완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안재웅 YMCA전국연맹유지재단 이사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오광성 사회적기업진흥원장, 사회적기업 대표 및 종사자, 사회적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성장지원센터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셜벤처들의 도약을 돕는 역할을 한다. 우선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시행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출신 70개 기업이 업무공간을 얻어 입주한다. 이들 기업에는 교육, 멘토링,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센터 조성자금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었다.

임대료는 없애고, 소통은 두배로

‘소셜캠퍼스 온(溫)서울’ 이 내세우는 장점은 입주기업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는 다는 것과 네트워킹을 할 기회가 넓다는 것. ’ 소셜창업’ 을 지원하는 곳은 서울시내에만 해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청년허브’,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 이재웅씨가 조성한 ‘카우앤독’, 사회연대은행이 운영하는 ‘LG소셜캠퍼스’ 등 22개소가 있다. ’ 온(溫)서울’ 은 이들과 ’ 임대료’ 와 ’ 네트워킹’ 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입주기업들은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면 된다. 창업 초기인 사회적기업에 임대료 부담이 없다는 것은 큰 힘이 될 수 있다. 최장 2년까지 입주가 가능하지만 많은 스타트업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6개월 마다 평가를 통해 입주를 연장할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는 사회적기업이란 점을 고려해 매출이나 종사자 수 등의 양적 지표뿐 아니라 커뮤니티 참여도 등도 중시한다.

“임대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큰 도움이죠.” 개소식에서 만난 입주예정기업 ‘임팩트써클’의 대표 박병춘(32)씨는 말했다. ‘임팩트써클’은 소상공인의 홍보활동, 브랜딩 등 마케팅을 돕는 소셜벤처다. 이 일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박씨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보람도 있지만 반 토막이 된 수입 등 경제적 안정성이 가장 큰 고민”이라며 “같이 일하던 직원이 경제적 이유로 다시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임대료 걱정을 덜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입주기업들이 활발히 소통하는 가운데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도 ‘온(溫)서울’이 중시하는 점이다. 한국판 ‘소셜밸리’로 불리는 성수동에 자리 잡은 ‘온(溫)서울’은 창밖으로 중랑천이 보이도록 시원한 설계를 했다. 내부 인테리어도 소통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계획되었다. 입주기업들의 사무공간에는 낮은 칸막이를 설치했고, 조망과 채광이 가장 좋은 위치에는 공유공간을 배치했다. 독립된 업무를 위한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업무 공간, 폰 부스, 여성입주자들을 위한 여성휴게실도 있다. 입주 기업 간의 친목을 위한 매월 1회 ‘런치 파티’ 등 이벤트는 물론 입주기업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신입사원연수(OJT)도 기획하고 있다. 사무실 관리에 관한 제반 상담을 담당할 ‘매니저’들은 물론 기업 운영에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멘토도 상주한다.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맡은 ㈜상상우리의 신철호 대표는 “‘온(溫) 서울을 사회적기업의 허브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개소식이 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간배정 및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다. 공간배정은 형평성을 고려해 ‘뽑기’ 로 했다. 입주에 앞서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은 기대와 우려, 제안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은 같으나 업종, 사업 규모, 기업 문화 등이 다른 사회적기업들이 함께 모인 만큼 단순한 프로젝트성를 넘어 의미 있는 협업이 되려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들이 함께 하기에 시너지효과나 협업이 원활하리라 기대한다”면서도 “제조업의 경우 창고 공간이 필요하다. 서비스뿐만이 아닌 다양한 업종을 고려해달라”, “사회적기업도 기업이기에 전면 오픈 공간보다는 독립 공간이 필요하다”, “입주 기간이 짧다”는 등의 공간사용, 운영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진흥원 쪽은 “지원받기를 원하는 다른 창업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운영 방식에서는 지속해서 입주기업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장지원센터는 입주기업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기업 창업 강좌도 개설한다. 심리, 사회적 지원센터 ‘아트온어스’를 홀로 운영하며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송정은(37)씨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해도 인건비 등 초기 운영비를 감당하는 어려움이 커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며 “창업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육성 대상으로 선정돼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일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온(溫) 서울’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소셜캠퍼스 온(溫) 전주, 부산’ 등 전국에 총 9개 성장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개소식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셜캠퍼스 온(溫)’은 우리 사회의 혁신을 이끌어갈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을 배출하여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등 전국에 사회적기업 창업을 통한 도전과 혁신의 바람이 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전자신문 2017.06.21.

소셜벤처, 사회적 기여는 덤...'돈'도 된다

공익사업으로만 인식되던 소셜벤처가 최근 투자 유치와 수익 등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교육, 봉사 위주에서 환경개선, 질병치료, 공유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기업군으로 자리잡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어린이 차량공유서비스 '셔틀타요'의 에티켓은 최근 대규모 투자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성남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분당, 판교로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했다. 이용 학원도 40개로 늘어나는 등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됐다. 신규 고객 증가와 함께 기존 고객 재계약도 100%에 달할 정도다.

손홍탁 에티켓 대표는 “어린이 통학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세림이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잦은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한다”며 “학원차량 공유서비스를 통해 안전장치 마련, 기사 근무환경 개선 등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에코맘산골이유식은 경남 하동지역 친환경 농산물 이유식 제조·유통 스타트업이다. 지역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지난 2015년 SK행복나눔재단 투자를 시작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3월 백화점에 첫 입점했고 5월 하동군과 20억원 가량 설비증설 투자협약도 맺었다. 올해는 매출은 지난해 13억원보다 4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 소외계층 해소에 나선 작은 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에도 도움을 준다. 지난 2010년 전북 장수군에 첫 영화관을 연 것을 시작으로 강화, 홍천, 고흥 등으로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사업 초기 어려움도 겪었지만 지난해 매출 76억원 가량을 기록했다.

안준호 작은영화관 이사는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는 있지만 2015년 55명이던 고용인원이 216명까지 늘었다”며 “현재는 상업영화 위주지만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다양하게 서비스 장르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벤처에 대한 관심은 창업 숫자로 나타난다.

5월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1975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했고, 1741개 업체가 활동 중이다. 특히 2007년 55개이던 인증 업체가 2013년 269개로 늘었다. 이후 매년 200개 이상 업체가 새롭게 시장에 뛰어든다.

착한 기업을 선호하는 소비자 인식 변화와 소셜벤처 사업영역 확대가 관심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소셜벤처는 교육, 가난, 환경과 같은 공공 이슈에서 문화, 예술 등 사회서비스로 영역을 확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작은영화관, 질병진단키트 등 소셜벤처 인증기업이 다양해지고, 착한기업을 원하는 소비자는 늘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표하면서 해당 분야는 더 성장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한국경제 **2017. 06. 30.**

10살 맞은 소셜벤처, 자생적 생태계로

2007년 사회적기업 제도와 함께 성장한 국내 소셜벤처
SK행복나눔재단 등 임팩트 투자로 자생력 확보

에코맘 산골이유식은 경남 하동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유기농 현미와 무항생제 한우 등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이유식을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사업 초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5년 SK그룹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의 사회영향 투자(임팩트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대했다. 지난 3월에는 백화점(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도 입점했다.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네 배 이상 늘어난 5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7월1일 시행 10년을 맞는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생산·판매 및 영업 활동을 하는 조직을 일컫는다. 2007년 55개에 그쳤던 사회적기업은 지난 5월 기준 1741개로 30배 이상 늘었다. 사회적기업 근로자는 3만8146명에 달한다.

시행 초기 법인세 감면과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사회적기업이 임팩트 투자를 통해 소셜벤처로 거듭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미술작품을 응용한 휴대폰 케이스 등 디자인 제품을 제작하는 마리몬드는 창업 초기인 2013년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투자와 사업 노하우 지원을 받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래에셋벤처투자와 포스코기술투자 등 일반 투자사들도 사회적기업펀드를 운영하며 소셜벤처에 투자하고 있다. 단순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경영과 사회적기업 창업 교육을 병행하는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을 통해 소셜벤처 예비 창업가도 양성하고 있다.

서울 성수동 일대에는 40여 개 소셜벤처가 모인 소셜벤처밸리까지 등장했다. 협업 공간인 카우앤독과 커뮤니티 공간인 디웰살롱을 중심으로 소셜벤처 생태계가 조성된 덕분이다. 6월에는 사회적기업가 500여 명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지상 8층 규모 오피스인 헤이그라운드도 문을 열었다. 김용갑 SK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은 "사회적기업가 육성과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지속적인 투자 등 3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소셜벤처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동에 특별한 기업들이 모였다, "성수동 소셜밸리"

[Culutre]

2015-10-28 17:51

성수동에 특별한 기업들이 모였다, "성수동 소셜밸리"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한국에는 '성수동 소셜밸리'가 있다. 사단법인 '루트임팩트'가 사회적기업과 창업자에게 성수동 일대에 공간을 제공하는 '서울숲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소셜벤처가 성수동으로 모여들었다. 이제 20여개 소셜벤처의 터전이 된 '성수동 소셜밸리'를 소개한다.

1. 공정거래에 앞장서는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AFN)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출처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AFN)는 성수동 소셜밸리의 사회적기업들 중 성수동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다. 이 회사는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이들의 출자로 설립됐다. 베트남·필리핀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협력해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캠페인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공정무역을 전파한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시민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강연과 행사를 주최한다.

공정무역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하기도 한다. 판매제품은 카카오차·홍차·보이차 등 차 종류와 캐슈넛·건망고·게피·초콜릿·커피 등 식료품이다.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베트남산 1등급 캐슈넛과 유기농 원두로 제조해 뛰어난 품질을 자랑한다. 또한 마루 초콜릿은 순수 수제 초콜릿인 빈투바(Bean-to-Bar) 초콜릿으로 만들었다. 빈투바 초콜릿은 카카오 원두의 로스팅과 초콜릿바의 제작, 가공, 포장 등 전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별도의 화학처리나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는다.

주소: 서울 성동구 서울숲4길 17 3층
홈페이지: www.asiafairtrade.net

2. 체인지메이커들의 울타리, 디웰(D-well)



디웰 살롱 내부=출처 디웰 홈페이지

디웰은 '다양한 사람들이(DIVERSE PEOPLE) 함께 꿈꾸는(DREAM TOGETHER) 특별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디웰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진 16명의 입주민이 거주하는 '디웰 하우스'와 다양한 사람이 교류할 수 있는 '디웰 살롱'으로 이뤄져 있다. 디웰 살롱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웰 살롱은 멤버로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유료로 공간 대여도 가능하다.

디웰에서는 매달 1~7일 프렌즈 멤버십 가입신청을 받는다. 회원으로 선정되면 3개월 6만 원, 6개월 10만 원의 회원비를 납부한다. 디웰 프렌즈 회원이 되면 디웰 프로그램 무료 참석과 디웰 살롱 상시 이용, 살롱 대관료 1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매주 살롱에서 진행되는 행사 정보도 알 수 있다.

주소: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29 1층
홈페이지: d-well.in

3. 따뜻한 사회를 꿈꾸는 청년공동체, 인액터스(Enactus)



인액터스 국내대회 조추첨 현장=출처 인액터스 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

인액터스는 'Entrepreneurial. Action. Us'의 약자다. 인액터스 구성원은 기업가정신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학생·교육인(지도교수)·기업인 등이다.

인액터스에 소속된 대학생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기획한다. 학생들이 구축한 비즈니스 모델은 지역사회 기업인·교육인의 도움을 받으며 발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획한 사업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홈리스 자활을 돕는 '두손컴퍼니', 위안부 할머니들의 작품을 제작하는 '마리몬드' 등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인액터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세워졌다.

인액터스는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년 7월에는 전국의 인액터스 회원들이 모여 각 지역사회의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국내대회(National competition)를 연다. 국내대회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프로젝트는 전 세계 인액터스 회원들에게 공유된다. 신입회원 모집은 매년 3월과 9월이며, 대학별로 진행한다.

전국매일
2016년 07월 25일
09면 (서울)

성동구,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 조성 호평 '사회적경제 최우수'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16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일자리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성동구는 '사회적약자의 도전·나눔·자립을 위한 창조적 공익 공간,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 조성'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 조성사업은 '우리 사회가 낮은 자세(Under)로 삶의 각 영역에서 취약계층이 자립(Stand)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는 대규모 민관 협력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공공과 기업, 비영리단체가 힘을 합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11.3*5.8)cm

전국매일
2016년 07월 28일
09면 (서울)

성동구,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개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8일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우수기업과 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25개 기업이 참여한다. 연간 공공구매 계획을 기초로 참여기업과 구청·도시관리공단·문화재단 구매담당자들과의 매칭상담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구매로 연결시킴으로써 공공구매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는 참여 기업의 제품, 서비스 홍보부스와 함께 공공구매 우수사례 전시, 사무공간에 필요한 서비스 및 제품 전시, 사회적경제 홍보용 게임 등 다양한 전시와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한 특별 이벤트로 '스위스 군악대(Swiss Military Small Band) 2016 아시아 투어' 공연도 마련돼 있으며 스위스 가곡, 행진곡, 아리랑 등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11.3*6.1)cm

産經日報
2017년 02월 16일
09면 (지역)

성동구, 전국 최초 사회적 지역기금 13억 조성

사회적 가치 실현 목적

성동구는 14일 오후 소셜벤처 투자기관, 사회적 금융 등 5개 기관과 성동지역협력기금(이하, 성동협력기금)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성동협력기금'은 성동구가 지원한 10억원과 사회적경제와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민간 임팩트 투자 회사들이 3억원을 보태어, 총 13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참여 5개 기관은 소풍, HGI, 크레비스파트너스, 비플러스, 논골신협이다.

'성동협력기금'은 서울숲 일대 청년혁신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소셜벤처밸리와 성동구간의 다양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성사됐으며 우선적으로 서울숲 주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에 대한 융자를 계획하고 있다.

융자 시 금리는 연 2%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부문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해 지원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향후 지역협력기금과 성동구 사회적경제기금을 연계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임팩트 투자가 활성화되면 지역 아동, 여성, 청년 문제에 대한 지역 혁신가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져 지역사회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ips3458@skilbo.com



◇ 사회적경제 지역협력기금 협약식

新亞日報
2017년 05월 10일
13면 (서울)

성동구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 자립기반모색 등 위한 8개 사업 선정 추진

서울 성동구는 청년들의 참신하고 역량 있는 아이디어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청년도전 프로젝트'를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도전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원해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동구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지원해 해당 사업비를 확보했다.

구는 지난달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최종 8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프로젝트 당 2백만원에서 10백만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사업은 △ 주민참여형 지역축제를 만들기 위한 '지역축제 청년 코디네이터 운영' △뚝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소셜다이닝 Bridge cook' △ 지역 대학생들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놀이+터 플레잉 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이다.

'청년W(WangSimNi)Festival' 사업으로 프로젝트에 선정된 '성동청년플랫폼'의 염윤석씨는 "지역 청년 활동가들의 자발적 기획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자립기반 조성과 관계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년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도전을 통해 미래를 향한 희망을 키워나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수요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지역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장(場)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

일간투데이
2017년 05월 11일
16면 (수도권)

서울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 기업 모집

사회적기업·마을기업·소셜벤처 등 3개 선정해 사무실 입주 지원

양경섭 기자 yks2015@dtoday.co.kr

서울 성동구는 이달 중 개관 예정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구는 지난달 19일 센터에 입주할 기업으로 장래성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등 3개 기업을 1차 선정했으며,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와 구청장 간담회를 갖고 향후 구와 기업이 협업해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번 2차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혁신기업(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 3개소이다. 구는 11일 입주기업 모집 설명회를 하고 오는 1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 희망자는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제출양식을 내려 받아 24일까지 성동구청 도시재생과(12층)에 △입주신청서 △기업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사회적경제기업 증명서 △재무상태 증명서 등 제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입주 지원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3개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30일까지 개별통지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업체별 11.5㎡ 규모의 사무실에 최대 2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오는 6월부터 바로 입주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장래성 있는 사업계획안을 가진 우수한 기업(창업)자가 많이 참여해 우리 사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17.6*8.9)cm

서울일보
2017년 08월 14일
08면 (지역)

성동, 청년문제 해소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년문제 해소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5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 창출 분야 최우수상, 2016년 사회적경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9회째 맞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확산하고자 만들어진 대회다.

올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충남연구원 공동주최로 지난 9일~10일 이틀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325개 사례를 응모하였으며, 1차 심사(서류심사) 결과 152개 우수사례가 본선(현장발표)에 진출했다.

심사는 시민사회, 학계, 언론인 등 지방자치 전문가로 위촉된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경진대회 참여 공무원, 시민평가단의 현장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동구는 청년문제 해소 분야에서 22개 지자체의 우수사례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가운데 '청년일자리, 소셜을 만나다'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공 주도 정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성동구는 청년 소셜벤처를 중심으로 청년혁신가를 배출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간 공공과 청년 소셜벤처가 유기적인 협업을 이루어 좋은 일자리,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단계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례'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아울러 뚝도시장 내 청춘상회 창업 지원, 사회공헌 창조문화공간 '언더스탠드에비뉴' 조성, 카우앤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소셜창업·협업 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 소셜벤처의 원활한 활동 공간 마련에도 힘썼다.

또한 청년 소셜벤처들에게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고자 민관이 힘을 합쳐 지역협력기금으로 13억 원을 조성한 데 이어 소셜벤처기업 지원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에도 나섰다.

청년이 만드는 디자인 페스티벌 '성동 디자인위크' 개최, 성동구 내 소셜벤처밸리 업체 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협업체계도 확립해왔다.

취업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2030 세대 10명 중 8명이 연애, 결혼, 출산 등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 한가지 이상을 포기한 'N포 세대'로 조사된 가운데 성동구가 청년 소셜벤처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물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까지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사회 청년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라며, "성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사회적기업 150개 이상이 집적된 '소셜벤처밸리'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우리구는 전국 최초 청년 소셜벤처 지원 조례 제정 등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우기자

문화일보
2017년 06월 28일
17면 (기획)

사회적기업 150여곳… '소셜벤처 밸리' 형성

소셜패션생태계도 구축하기로
'언더스탠드…' 月15만명 방문

서울 성동구가 일군 일자리 성과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다. 성동구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전국 자치구 최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조례 제정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사회적경제조직과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민선6기 성동구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이전 64개에서 122개로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또 성수동에는 현재 150여 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집적된 '소셜벤처 밸리'가 형성됐다. 구는 오는 9월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성수동 소셜벤처기업 100여 개와 대학 및 특성화고 취업준비생들이 참여하는 소셜벤처기업 엑스포를 언더스탠드에비뉴와 서울숲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4일 개관 예정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혁신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수제화, 봉제 등 지역 토착산업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한 사회적경제 지역특화모델인 '소셜패션생태계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협력해 2020년까지 연면적 최대 5400㎡의 성수사회적경제 패션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복합문화공간인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성동구의 자랑거리 중 하나다. 지난해 4월 개장 이래 월평균 15만 명이 다녀가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구는 지난 1년간의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일자리창출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셜·오픈스탠드 공간을 확충해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몰로 조성한다. 또 창업카페를 설치하고 상시적인 취업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창출을 위한 소규모 가게도 꾸릴 계획이다. 또 성수동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연계한 소셜벤처기업 엑스포를 오는 9월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열고, 시민 참여형 도시농업 마켓, 소상공인 수공업 마켓 등도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도연 기자

서울신문
2017년 07월 11일
12면 (지역)

성동 상생도시센터 오늘 오픈
공동체·청년지원센터 등 입주

서울 성동구의 '상생도시센터'가 11일 성수동1가에 문을 연다.

10일 성동구에 따르면 성동 상생도시센터는 연면적 860.21㎡,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복합문화지원센터다.

성수도시재생지원센터(3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8층),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6~7층), 마을공동체지원센터(4층), 청년지원센터(4층), 서울숲실버문화센터(2층) 등이 상생도시센터 안에 모이게 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골목경제 살리기와 같은 지역 주민 주도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입주 기업 6곳이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지난 4~5월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 1곳, 협동조합 1곳, 소셜벤처 4곳 등 6곳을 선정해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지원센터는 창업 등 청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청년활동 거점공간으로 운영한다. 서울숲실버문화센터는 노후 여가생활에 필요한 문화·복지·건강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 상생도시센터를 마을에 활기를 돋우고 청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성동의 새로운 허브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11.2*8.5)cm

아시아일보
2017년 07월 26일
05면 (서울)

성동구, 사회적경제기업진흥원과 맞손 소셜벤처기업 생태계조성 및 활성화 나서

성동구에 위치한 성수동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으로 공장 기름 냄새와 구두가죽 냄새가 나던 골목이었으나 최근 2~3년 사이에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이 모여 들면서 '성수동 소셜벤처 밸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이렇게 형성된 소셜벤처기업들이 150여 개로 성동구는 이들 기업들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들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해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 21일 성수동에 위치한 '소셜캠퍼스 온(溫)"에서 서울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 4월 성수동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 기업들의 육성과 창업 지원을 위한 코워킹(Co-working) 및 사무공간으로 설립한 '소셜캠퍼스 온(溫) 서울'을 개관하면서 성사되었다.

주요 협약내용은 △소셜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 성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물적 교류 및 행정적 지원 △소셜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공감대 확산 △소셜벤처기업이 참여하는 과제 개발 및 행사의 발굴 등이다.

그동안 구는 소셜벤처기업의 자립 지원을 위해 2014년 12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고, 소셜벤처투자기관들과 총 13억원 규모의 지역 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올해 상반기에만 관내 소셜벤처 7개 기업에 4억원의 투자와 융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구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셜벤처기업의 협업과 주거와 사무실공간을 지원하는 루트임팩트의 '디웰'과 '헤이그라운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소셜캠퍼스 온 서울'과 함께 소셜벤처기업이 커 나갈 수 있는 성장토양을 더욱 견고히 다지게 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이 중앙정부 산하기관과 지방정부, 민간의 소셜벤처기업과 합심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목표로 성동구라는 단단한 토양 아래 사회적 가치라는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관 기자

문화일보
2017년 08월 17일
16면 (서울)

相生·배려… 區마다 '사회적 경제' 바람

소셜 벤처·협동조합 등 지원
성동구, '협력기금' 13억 조성
성북구, 제품 의무구매제 시행
서초구, 사회적기업 장터 운영





▮서울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인권·노동권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17일 서울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성동구는 전국 최초의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조례 제정' 등을 비롯해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혁신기업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소셜 벤처 기업들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언더스탠드 에비뉴(왼쪽 사진)'를 조성한 것을 비롯해 '사회적 경제팀' 신설, 성동구만의 '기금운용모델 개발' 등 구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국 최초의 사회적 지역 기금인 '성동지역협력기금' 조성도 주목할 만하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만든 '성동협력기금'은 총 13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성북구도 성동구 못지않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성북구는 '사회적 경제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서초구는 오는 9월 28~29일, 10월 26~27일 ,11월 23~24일 등 총 3회 6일 동안 서초장날(자매도시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과 연계해 사회적 장터인 '서리풀 SE마켓'을 열 예정이다. 서초구청사와 보건소 앞 광장에서 열리는 서리풀 SE마켓에는 사회적 기업, 청년·여성창업가, 푸드트럭 등 40여 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한다. 오는 9월까지 구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카페 5개소에 공정무역제품 판매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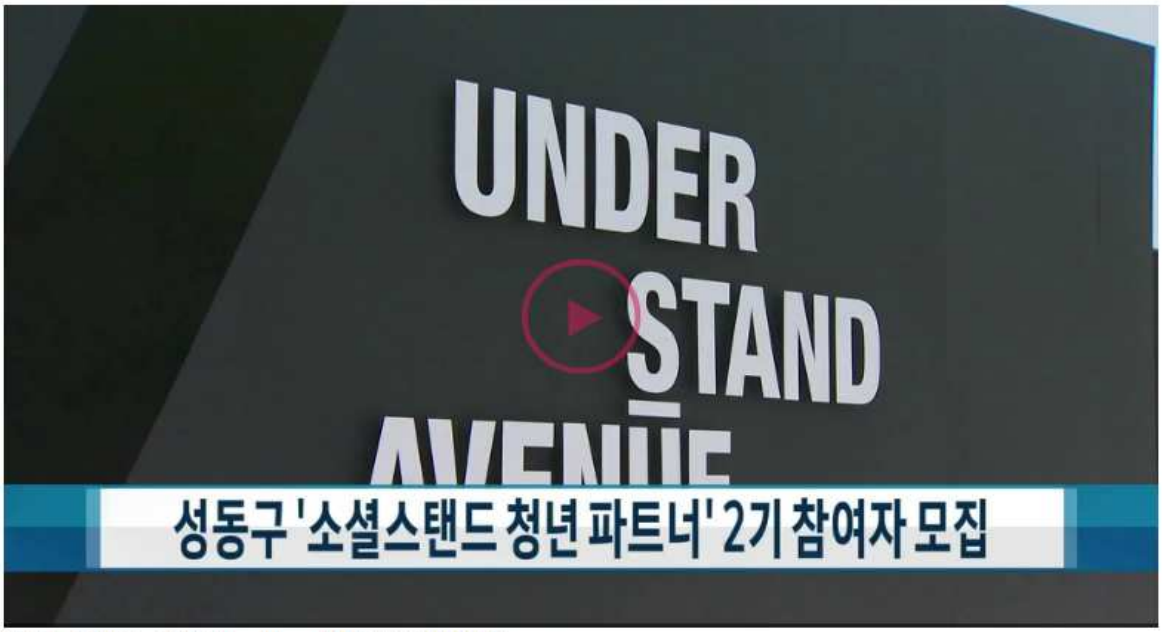
마포구는 오는 12월까지 사회적기업(39개), 마을기업(8개), 협동조합(171개)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총 14억4700만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상설전시·판매관 운영 및 박람회 개최 등 판로 지원에 나선다.

지난 7월 한남동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오른쪽)'를 개소한 용산구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해 매년 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김도연 기자 kdychi@

<서울>성동구 '소셜스탠드 청년 파트너' 참여자 모집

2017-08-21 19:01:13

공유



[티브로드 임세혁기자]

[기사내용]
성동구가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 내에
창업 공간을 제공해주는 '소셜스탠드 청년 파트너'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청년창업가는 10월부터 6개월 동안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 내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매장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와 브랜드 홍보도 지원받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창업가는 다음달 5일까지
언더스탠드 에비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촬영/편집-박우진 기자>

서울매일
2015년 10월 15일
05면 (지역)

'착한기업과 손잡고 하나로'

성동, 18일 왕십리광장서 사회적경제 한마당 열려



박건화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왕십리광장에서 '2015 사회적경제 마을에서 협동하다' 행사를 개최한다.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 성동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지원단과 함께 하는 이 번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 경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년부터 시작된 '마을에서 협동하다'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마을공동체가 직접 기획·운영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마을공동체 축제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을 통해 지역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40개 기업과 마을공동체와 공동주택의 40개 단체가 참여해 장터, 공연, 체험공방, 먹을거리, 건강검진, 놀이터 등 5개의 마당으로 꾸며진다. 공정무역제품, 워킹화, 한우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장터와 인형, 천연비누 체험공방은 물론 구강 건강검진도 함께 진행된다.

(15.4×10.5)cm

기고

사회적 경제와 포용적 성장

입력 2018.02.14 19:00 | 21면 3단

전국 '비리유치원' 실명공개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 청년실업, 고령화 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부작용이 만만찮다. 정부가 복지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소득불균형 등의 문제를 정부 재정만으로 다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 2010년 영국 보수당 정부가 14년 만에 집권하면서 제시한 정책 비전이다. '빅 소사이어티'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시민 주도로 해결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국민끼리 서로 돕는 '큰 사회'를 말한다. 영국은 시장경제가 창조된 국가다. 자본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와 같은 경제학자를 배출했으며, 근대적 은행을 최초로 설립했고, 증기기관을 발명해 산업혁명을 선도했다. 이처럼 영국은 시장경제가 고도로 발전한 국가지만, 동시에 사회적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한 곳이기도 하다. 영국의 사회적 경제기업은 7만개다.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GDP의 4%, 일자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성수동 인근에는 250여 개 소셜벤처기업이 몰려 있다. 사회적 가치를 의미하는 소셜(social)과 창의적 도전정신을 의미하는 벤처(venture)의 합성어로, 미국의 '탐스슈즈'와 영국의 '빅이슈'와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다. '탐스슈즈'는 고객이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하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한 켤레의 신발을 기부한다. '빅이슈'는 유명인의 재능 기부로 잡지를 제작

하고 판매권을 노숙인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자활을 돕는다. 2014년 성수동 서울숲 주변으로 12개, 100여명의 사회혁신가들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는 '마리몬드',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채용해 물류대행 서비스업을 하는 '두손 컴퍼니',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한식밥집을 운영하는'소녀 방앗간',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력 증진을 돕는 '점프' 등 약 3,000여명의 청년 혁신가들이 '소셜벤처밸리'를 형성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가 담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과 더불어, 이들의 창업과 경영을 돕는 중간지원조직, 재정을 뒷받침하는 소셜임팩트 투자기관이 성수동을 중심으로 한데 어우러져 독자적인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셜벤처기업들은 작고 경험이 적다. 훌륭한 아이템과 창업자의 높은 열정만으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성동구는 소셜벤처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성수동에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조성중이다. 임대료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경영컨설팅, 인큐베이팅과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한 '소셜벤처 이노스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망라한 '소셜벤처기업 지원 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시장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없다면 사회는 빈곤해진다. 사회가 피폐해지면 시장도 함께 파산한다. 자유로운 시장과 건강한 사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생 관계다. 시장경제에서 창출된 부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재정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은 시장경제에서 탈락한 약자들을 돌보고 재활시키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경제활동의 가치를 이윤보다 사람에 두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하면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방지하고 시장과 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사회혁신을 꿈꾸며, 윤리적 목적 의식과 경제적 효율성의 융합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리 경제의 포용적 성장 동력이 되리라 믿는다. 한 알의 작은 씨앗이 울창한 숲을 이뤄내듯, 사회 혁신가들이 일궈낸 성과가 온 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 특성화고 취업 총력 지원

기사입력 2018.03.27 07:12 최종수정 2018.03.27 07:12

▎특성화고 취업지원협의체 구성 '찾아가는 취업컨설팅'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협력,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교육부터 일자리 연계까지 취업 전 단계에 걸쳐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청년실업문제는 심화되고 있어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성수동 지역이 41개의 지식산업센터와 2500여개의 기업체가 밀집돼 있다는 이점을 살려 지역 내 특성화고 학생과 중소기업의 취업연계로 청년 일자리문제와 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관·학 협력의 청년 일자리 창출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한국전력공사 광진성동지사(이하 성동지사), 특성화고등학교 5개교와 더불어 '산관학 전기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특성화고 5개교는 '성동구 특성화고 취업지원협의체' 참여학교 중 전기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성수공업고등학교, 경기기계고등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성동공업고등학교, 휘경공업고등학교)로 선별됐다.

체결된 협약에 따라 성동구는 특성화고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취업연계 등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성동지사는 기업의 자원을 활용, 전기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기업현장견학 및 체험, 특성화고 출신 현직자와 멘토링 등 취업지원사업을 제공, 학교에서는 취업지원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운영하는데 협조한다.



또 같은 날 언더스탠드에비뉴의 교육장에서는 '2018년 상반기 특성화고 취업지원협의체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내 26개교 취업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향상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으며, 청년 일자리카페 육성방안, 특성화고 취업희망 기업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등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2011년 구성된 '특성화고 취업지원 협의체'는 성동구의 특성화고 3개교와 더불어 서울시내 특성화고 8개교 참여를 시작으로 현재는 총 26개 특성화고로 확대 운영돼 다양한 취업지원 및 일자리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성동구의 특성화고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서도 뜻을 모으고 있다. 2012년부터 현대모비스와 함께한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은 지난해부터 특성화고 학생들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1 컨설팅, 모의면접, 면접이미지 컨설팅 등 컨설턴트의 전문 강의와 함께 현대모비스 현직자 멘토링, 생산공장 견학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특

성화고 취업지원협의체의 26개교를 대상으로 1965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 지난해 열린 특성화고 취업 박람회에서 47개업체 531명 참여해 구직등록 173명, 2차면접 81명, 현장에서 6명이 채용됐다.

아울러 2018년에도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역량강화 교육'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NCS 직업기초능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와 소셜벤처밸리의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 '소셜벤처 이노스쿨 상상교실'에서는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 12명이 강사로 나서 사회혁신 비즈니스 강좌를 4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이런 특성화고 취업 지원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2013년과 2017년에 두 차례 감사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그동안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올해도 지역 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새로운 기회를 폭넓게 제공, 청년 일자리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News Agency
GUKJENEWS

성동구-한양대, 소셜벤처 발굴•양성 위한 MOU 체결

2018년 06월 19일 (토) 00:24:16 안종원 기자 leot9@naver.com

(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성동구는 "지난 17일 한양여자대학교(총장 이보숙)와 소셜벤처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셜벤쳐 활성화 정책을 구체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초석으로 성동구와 한양여자대학교의 협력을 통해 소셜벤처를 양성하는 청년일자리 혁신학교 '서울숲 소셜벤처 이노스쿨(Innovation School)'을 운영하게 된다.

청년일자리 혁신학교 '서울숲 소셜벤처 이노스쿨'은 혁신적인 일자리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청년 소셜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원스톱 창업교육 체제로 그간 글로벌 인재 양성 및 4차산업혁명, ICT 기술교육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한양여자대학교와 함께 함으로써 교육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서울숲에 입주해 있는 소셜벤처기업 및 중간지원조직은 물론 지역 내 대학과 서울시내 26개 특성화고 협의체를 총망라한 집합적 임팩트 체계의 공동운영단을 구성한 후,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7월부터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온라인·오프라인 강좌로 구성되며, 인식개선단계부터 예비창업자를 양성하고 신규 소셜벤처기업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상상lab-도전lab-성장lab 3단계의 교육과정으로 진행하게 된다.

성동구와 한양여자대학교는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지식,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지역·청년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하여 소셜벤처기업가를 양성하고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청년일자리 선순환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차적으로 3,000여명의 교육생을 양성하고, 200개의 소셜벤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16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6차 회의를 통해 성수동 일대에 소셜벤처 지원 역량을 집중·연계해 성수동을 소셜벤처 창업·성장 및 성공사례 창출의 중심지(Hub)로 육성하기로 하고 1,200억 원 규모의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보증·금융지원 확대,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성장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는 경쟁을 통한 이윤추구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통합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인 소셜벤처를 통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방송/연예/이슈

[성동구청-서울] 청년 사회혁신가 창업 지원 위해 성동구-KT&G 협력

승인 2018.09.03 22:30:04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8월 31일 구청 전략회의실에서 KT&G(사장 백복인)와 청년 사회혁신가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국가적 과제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지원 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청년 창업 지원 플랫폼 조성과 사회혁신 창업가 발굴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mart mall

성동구 성수동은 약 250여개 소셜벤처가 모여들면서 소셜벤처밸리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소셜벤처 플랫폼에 KT&G의 청년창업지원 플랫폼이 더해져 명실상부한 소셜벤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동구와 협력을 약속한 KT&G는 상상 스타트업 캠프 운영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소셜벤처 분야를 집중 지원해 왔다. 성동구 성수동2가 연무장길 82번지에 지하1층~지상8층 규모의 청년창업지원센터를 2020년 상반기 준공하여 청년 사회혁신가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소셜벤처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셜벤처기업 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해 청년일자리 해결방안으로 소셜벤처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성동안심상가 내 소셜벤처 허브센터 등 협업공간을 마련하고 지역협력 기금을 조성하여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소셜벤처 기업과 협업을 통해 제1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기업 엑스포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에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올해도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2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기업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개최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6차 회의를 통해 성수동 일대에 소셜벤처 중심지(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발맞추어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역량강화를 위해 서울숲 소셜벤처 이노스쿨 운영하며 소셜벤처기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어플리케이션과 웹페이지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으로 능력 있는 청년 사회혁신가를 발굴하고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성동구청]

시민일보

성동구, 청년창업 지원 플랫폼 조성한다

이진원 기자 승인 2018.09.03 17:40

KT&G와 업무협약 체결
청년사회혁신가 육성 맞손
창업지원센터 2020년 완공



▲ 정원오 성동구청장(왼쪽), 김흥렬 KT&G 수석부사장(오른쪽)이 '청년 사회혁신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구청 전략회의실에서 KT&G와 '청년 사회혁신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구청 전략회의실에서 KT&G와 '청년 사회혁신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적 과제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지원 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청년창업 지원 플랫폼 조성과 사회혁신 창업가 발굴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성수동은 약 250개 소셜벤처가 모여들면서 소셜벤처밸리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는 기존 소셜벤처 플랫폼에 KT&G의 청년창업지원 플랫폼이 더해짐에 따라 명실상부한 소셜벤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KT&G는 '상상 스타트업 캠프' 운영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소셜벤처 분야를 집중 지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 성수동2가 연무장길 82번지에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오는 2020년 상반기 준공해 청년 사회혁신가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양기관의 상호협력으로 능력 있는 청년 사회혁신가를 발굴하고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전국 최초로 '소셜벤처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셜벤처기업 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해 청년일자리 해결방안으로 소셜벤처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성동안심상가내 소셜벤처 허브센터 등의 협업공간을 마련하고, 지역협력기금을 조성해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 11월에는 소셜벤처 기업과 협업을 통해 '제1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기업 엑스포'를 성황리에 개최해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에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도 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2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기업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개최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발표된 성수동 일대에 소셜벤처 중심지(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발맞춰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역량강화를 위해 서울숲 소셜벤처 이노스쿨 운영하며, 소셜벤처기업 플랫폼을 구축해 어플리케이션과 웹페이지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진원 기자 yjw@siminilbo.co.kr

[대학탐방/한양여자대학교 下] "'사랑의 실천'…지역과 상생하며 실력 갖춘 '한양女人' 양성"

허지은 기자 | 승인 2018.09.19 10:39



▲ 소셜벤처 이노스쿨 상상랩 수업 모습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한양여자대학교(총장 이보숙)은 건학이념 '사랑의 실천(愛之實踐)'을 대학 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으로 거듭나는 한편, 사회 곳곳에 봉사의 손길을 뻗고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 및 지역 민간기관, 산업체와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한양여자대학교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스타트업인 소셜벤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재학생들의 취업처를 발굴하는 동시에 창업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의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이는 서비스 시행을 앞둔 '소셜벤처 이노스쿨' 사업을 통해 더욱 본격화될 예정이다.



▲ 사랑의실천 팀프로젝트 모습.

■ **건학이념을 교과목으로 구체화** = 한양여자대학교에서는 건학이념 '사랑의 실천(愛之實踐)'을 습득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사랑의 실천' 과정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사랑의 실천'은 '사랑의 실천 리더십' 과정과 '사랑의 실천 팀플' 과정으로 구성됐다.

'사랑의 실천 리더십'은 '인성'과 '전문성'을 지향하는 특성화 대학으로서 인성 핵심가치인 근면·정직·겸손·봉사의 정신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 사회 활동과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나의 발견 △원만한 대인관계 △지도력 △봉사의 4개 영역으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강의 중심이 아닌 체험위주의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는 점이다. 교수자는 학생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 학생들이 전공교과목에서 실천하기 어려웠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방향 설정 등을 통해 비전 구축과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리더십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은 심화프로그램인 '사랑의 실천 팀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팀플사업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4~6명으로 된 팀을 구성해 △문화예술 공연 △행복나눔 봉사활동 △지역사회 연계 사업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팀별 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일정금액의 사업비(약 100만원 내외)를 지원받아 운영된다.



▲ 사랑의 실천 팀프로젝트 경진대회 활동 모습

■ **사회 기여 활동으로 실무 경험까지** = 한양여자대학교는 '사랑의 실천' 정신의 적용 범위를 교문 밖으로 확대했다. 지역 및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의 애로를 해소해주는 동시에 학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게 된다.

산업디자인과는 '디자인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최근 4년간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등과 협력해 대학 인근 마을의 △범죄예방 디자인 환경개선 △여성 안심 골목길 조성 △마을 재생 프로젝트 △금연거리 조성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관광객과 주민들 간 마찰이 있었던 거제도·낙월도의 문제를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해결한 사례는 'KBS 월요기획'에 소개되는 등 관심을 모았다. 올 6월부터는 종로구청과 함께 종로구 돈의동 103번지 일대 독거노인 쪽방촌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위생과는 지난 3월 15일 제10회 '잇몸의 날'을 맞이해 대한치주과학회, 동국제약과 공동으로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사랑의 스케일링'을 실시했다. 활동에는 치위생과 3학년 30여 명이 치주학회 소속 치과의사 30여 명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 성분도 복지관 원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스케일링과 구강관리방법을 교육했다. 이 활동을 통해 김수화 치위생과 학과장은 대한치주학회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한편 호텔관광과 학생들은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8·15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했다.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 및 온정각 등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총 두 차례 열렸으며 8월 20~22일 열린 1차 상봉은 남측 이산가족 89명과 동반가족 108명 등 197명이 북측 가족 185명과 해후했고.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2차 상봉은 북측 이산가족 83명이 남쪽 가족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호텔관광과 학생들은 환영 만찬과 점심·저녁 식사 서비스 등을 담당했으며, 이를 위해 17일부터 북한에 출경해 서비스 교육을 받았다.



▲ 사랑의실천 팀프로젝트 경진대회 후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 중인 모습.

■ **지역·산업·대학협력 활동 … '소셜혁신대학'으로 발돋움** = 한양여자대학교는 지역 의류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산·학 협업화 모델의 성공적 주역으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 내에 민·관·산·학 컨소시엄을 통해 산학디자인센터, 성동의류기술지원센터, 청실홍실 마을공방을 세우고 이곳에서 의류패션 분야의 디자인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교육-생산 및 마케팅을 모두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산·학 협업은 2013년 지역 내 성동협동사회적경제추진단 등 민간기관과 성동구청, 산업체 등 7개 기관과의 협약으로 이뤄졌다. 이후 △의류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산·관·학 협약(2014) △성수 사회적 경제 패션클러스터조성 협약(2015) △성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공동협약(2015) 등 서울시·성동구·민간기관·지역산업체 등과의 지속적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협업화 모델 속에서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지원을 위한 △의류패션 디자인교육 △봉제기술교육 △창업지원 △협동조합 조성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 모델에 기반해 한양여자대학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소셜 패션 공모전 △패션현장학교 △소셜 패션쇼를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LINC+사업을 통해 의류패션을 토털패션 특화교육 및 사업으로 확장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토털패션 디자인개발 및 제품생산 교육 △주얼리 제작 교육 △패션문화예술 디자인콘텐츠 전문가 양성교육 △니트 지역산업체 근무자 재교육 △서울시 창의제품개발 창업과정 △서울시 새활용 디자이너 양성교육 등 의류를 포함한 토털패션 특화교육의 전당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한양여자대학교의 성공모델은 지역사회대학으로서의 전문대학이 지역혁신과 공동체형성을 위한 상생모델을 창출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행복과 희망을 주는 소셜혁신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 해양수산부로부터 우수민간재능기부팀 부문 깨끗한 바닷가 만들기 대상 수상 모습(좌측) 및 2017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모습.(우측 아래)

그 뿐만 아니라 올해는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셜벤처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숲 소셜벤처 이노스쿨'도 구축했다. 이노스쿨은 최근 정부가 집중육성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셜벤처 생태계를 육성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청소년·대학생·일반인·취업준비생에게 소셜벤처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수강생의 소셜벤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

이노스쿨은 2017년 서울시 상향·협력적 일자리 선정사업으로 지난 6개월간 운영 협의체 구성-강사풀 구축-프로그램 개발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10월 초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정은 △상상랩(소셜벤처에 대한 이해), △도전랩(소셜벤처로 취직하기, 소셜벤처 창업하기), △성장랩(소셜벤처로 사회적가치 실현하기)의 3단계로 이뤄지며 16주 온·오프라인 교육이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소셜벤처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0월 초부터 가능하다.

특히, 한양여자대학교는 이노스쿨 기초과정인 상상랩 16강을 수강하는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해주고, 2019년부터는 상상랩을 수강하는 고등학생에 대해 한양여자대학교 진학 시 이수학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이노스쿨 상상랩 강좌를 수업과정에 신설하고, 학점을 인정해주는 대학을 늘려 소셜벤처 전문인력을 역점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 산업디자인과가 진행한 2018 국민 디자인단 종로구 돈의동 맞춤 방제 솔루션 디자인 재능 나눔 모습

■ **체계적 비즈니스 모델 갖춘 창업지원** = 소셜벤처 외에도 한양여자대학교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창업계획수립에서부터 인큐베이팅까지 4단계 맞춤형 창업체계를 갖췄다. △1단계 창업 콘텐츠 개발 △2단계 창업 시뮬레이션 △3단계 창업 사업화 △4단계 실전창업이 그것이다.

1단계에서는 △창업경진대회 및 3D프린팅 공모전 △창업지원조직 재설계 △창업교과 재설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단계에서는 △창업플랫폼 설계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창작실 구축 사업을 통해 창업 시뮬레이션을 돕는다. 3단계는 △교수·학생 창업지원 사업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4단계는 창업 홍보 및 전시회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창업 플랫폼으로는 창업센터를 중심으로 대내적으로는 각 학과와 지원센터, 대외적으로는 지역 자치단체와 기업 간 유기적 연계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원스톱 창업지원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 지난 4월 18일 열린 페스티벌 하이유(HYWU) 모습.

특히 한양여자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의 창업교육프로그램은 △ Start-up Cafe △ Simulation LAB △ Start up Village △ 하이유(HYWU)쇼핑몰 △ 하이유(HYWU) 협동조합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R&BD 체계의 One Stop 창업지원 등 청년창업가의 창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마련돼있다. 이는 산학협력단 및 비즈니스지원팀을 컨트롤타워로 해 성공창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의자산의 선순환 수익형 구조로 운영된다. 또 이를 취·창업지원센터의 NCS 기반 현장중심 정규·비정규 창업교육 프로그램 및 창의역량지원센터, 특성화 관련학과와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창업교육으로부터 보육, 지원, 성공창업, 펀딩까지 재투자하도록 체계가 설계돼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지은 기자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2018. 5. 16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Ⅱ. 소셜벤처 현주소

Ⅲ. 기본방향

Ⅳ. 추진방안

1. 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평가체계 구축

2. 청년 소셜벤처 HUB 구축

3.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4. 소셜벤처 성장 촉진

Ⅴ. 향후 추진일정

〈참고〉 소셜벤처 국내외 성공사례

Ⅰ. 추진배경

□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부각**

○ **유럽 등**은 사회적경제가 **이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월)**'** 을 계기로 본격 추진중

* 사회적경제의 고용비중(`15년) : (EU) 6.5%, (한국) 1.4%

○ 다만,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아직 부족**

* 사회적기업 영업이익 발생기업 비중(%, 노동부) : ('14) 20.8 → ('15) 24.4 → ('16) 50.1
협동조합 사업운영율(%, 기재부) : ('13) 54.4 → ('15) 54.6 → ('17) 53.4

□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소셜벤처**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출현중**

○ **성수동을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높은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 등이 모여 **Open Innovation을 실현하는 소셜밸리 형성**

*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 溫 등에 약 250여개 소셜벤처 기업, 투자·지원 기관 입주

□ **청년 일자리창출 잠재력과 성장성**이 큰 **소셜벤처** 활성화 여건조성 필요

○ **소셜벤처**는 ① **청년고용 비중**이 높고, ② **창업**에 따라 고용창출 기대

① 소셜벤처 대표 20개사('18) : 창업당시 대표자 평균연령 30.3세, 근로자중 청년 비중은 81.2% (전체 근로자수 469명, 청년 381명, 업체당 19.1명)
② 소셜벤처 경연대회 평균경쟁률('13 ~ '17) : 28.2대1 (183팀 수상에 5,163팀 지원)

○ **혁신적 제품 생산**과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일부 기업은 매출증가*** **시연**

* 소셜벤처 대표 20개사 평균 매출액(억원) : ('15) 4.1 → ('16) 6.8 (68.6% 증가)

사례

- **(주)루미르('14. 창업)** 적정기술을 활용, 폐식용유, 양초 등 저가 자원을 이용하는 고효율 램프 개발(기존 태양광 램프 대비 50% 이상 저렴), 저개발국 보급 및 판매
  → 대표 나이 29세, 청년고용비중 100%(전체 9명)



- **토도웍스(('16. 창업)** 수동휠체어에 대해 전동 조작이 가능하도록 토도드라이브 개발, 큰 개조없이 간단하고 저렴하게 장착 가능(전동휠체어 가격 약 700만원→토도드라이브 176만원),
  → 대표 나이 43세, 청년고용비중 54.5%(11명중 6명)



Ⅱ. 소셜벤처 현주소

□ 민간의 **자생적 움직임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정책·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수준

① **(개념·인식)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사회적기업과 혼동하는 등 소셜벤처의 **혁신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

> **일반인** "소셜벤처요? 사회적기업과 같은 건가요?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
> **소셜벤처 기업가** "사람들이 소셜벤처를 잘 모르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인정해주지 않네요. 그렇다고 굳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싶지는 않고요"

② **(가치평가)** 기업가치 평가에 **재무적 성과만이 반영**되고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적 가치는 제외되어 **소셜벤처의 실질가치가 저평가**

- 반면, **영국·미국 등은** GIIRS, SROI 등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모형이 통용되어 **유망 소셜벤처 발굴 및 투자**에 널리 활용

* GIIRS(사회적기업 평가모형) : 분석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기업 성과 평가 및 비교분석
SROI(사회적 투자수익률) : 금융투자 대비 사회적·환경적 순이익을 화폐가치로 환산·측정

③ **(자금)** 투자·융자 등 **외부자금조달이 어렵고**, 소셜벤처에 적합한 수단인 **임팩트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 (`15년 540억원)

* 재무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를 의미
세계 임팩트투자 규모(조원) : ('14)10.5→('15)15.2→('16)22.1→('17) 25.9

> **소셜벤처 기업가** "일반 VC들에게 우리는 수익성이 낮고 회수에 장기가 소요되어 투자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창출하는 사회성과도 함께 고려해주고, 제대로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해 줄 수 있는 투자자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④ **(판로)** 브랜드의 낮은 인지도, 취약한 영업망 등으로 **국내외 판로 확보**가 제한적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음**

Ⅲ. 기본방향

지속성장 가능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소셜벤처 집중지원 HUB 구축 + 소셜벤처 청년창업 활성화 + 금융·기술개발·판로 등 분야별 특화지원

소셜벤처 개념 명확화 및 가치평가체계 확산

《참고 : 기존 정책대상과 차이점》

구분	벤처기업 (3만5천여개)	사회적기업 (1,937개)	소셜벤처기업 (500여개 추정)
법적정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없음**
정책대상 판별기준	**확인서 발급** * 벤처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기관이 선별·확인	**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 등 인증요건 충족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판별**
추구가치	사회성《**혁신성** * 신기술기반 고수익 창출	**사회성**》혁신성 *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성&혁신성 동시 추구** * 혁신기반 사회가치 창출

Ⅳ. 추진방안

1 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평가체계 구축

1 민간 주도의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마련

□ **소셜벤처 개념 명확화**와 **소셜벤처 여부 판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유연한 판별 가이드라인(Guide line) 제시**('18.하)

○ 인증제는 **진출분야의 다양성 및 자율성을 저해**하고 **해외**(미국, 영국 등) 역시 **획일적 기준을 도입하지 않는 점**을 고려, **소셜벤처 저변 확대**를 위해 **유연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

< 광의의 소셜벤처(예시) >

사회성 판단기준(1개 이상 충족)	혁신성 판단기준(1개 이상 충족)
① 사회적경제기업	①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벤처기업·이노비즈 기업 등)
② UN SGDs 17개 분야 영위(물, 환경 등)	②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③ 정관, 미션 등 경영 방침에 사회적 가치 추구 명시	③ 연구개발조직 보유 여부
④ 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등) 고용	④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지표, 고용 등 지속적 성장여부

* 사회성(1개 이상)과 혁신성(1개 이상)이 동시에 충족시 광의의 소셜벤처로 인정

○ 광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여 소셜벤처 판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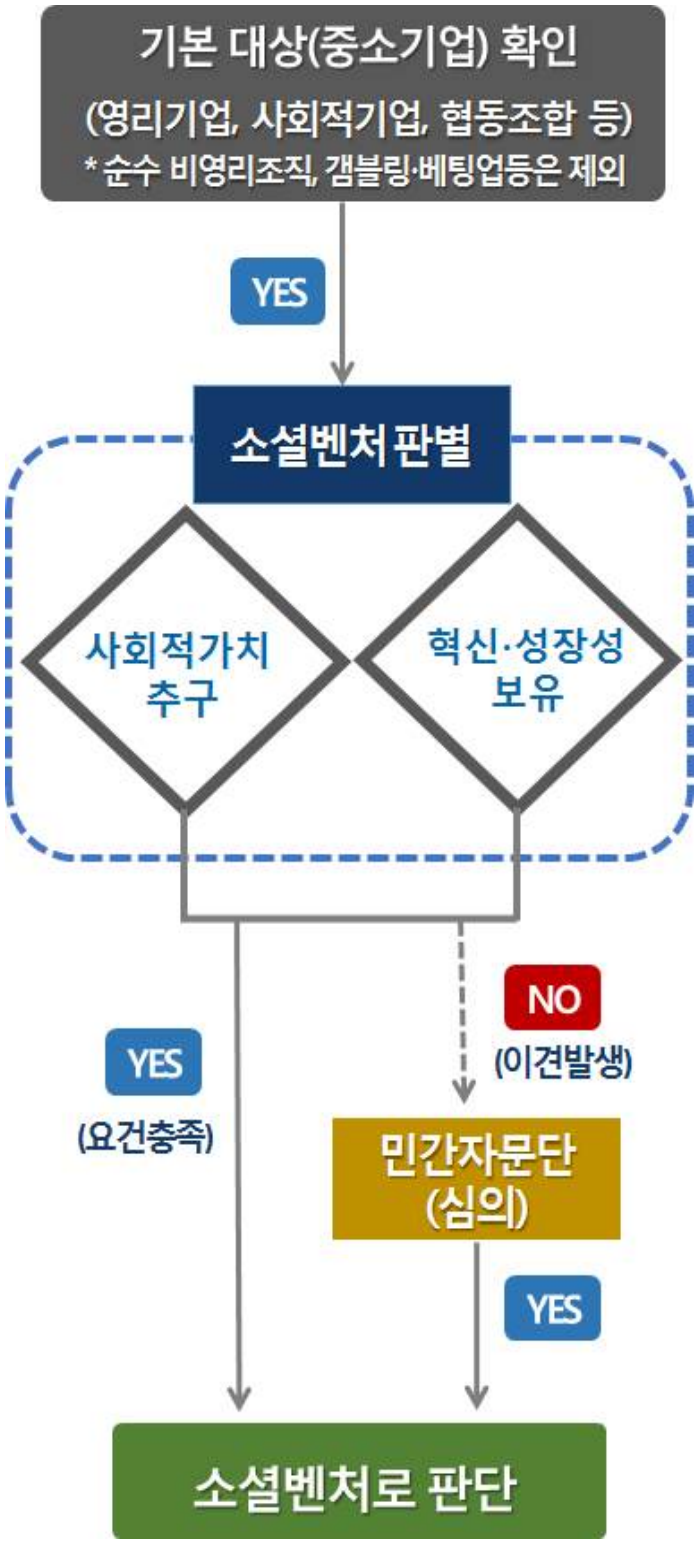
* 민간 전문가, 소셜벤처 기업가, 임팩트투자사, 공공기관(기보, KVIC,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협의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정부는 필요시 참여)

- **기관별**(임팩트투자사, 은행, 공공기관 등) **지원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자체적으로 활용**

□ **정책(보증, R&D, 판로 등) 대상으로 구분가능한 소셜벤처 기업군 확인**을 위해 **소셜벤처 현황 파악**을 상시적으로 실시('18.하)

* 임팩트투·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조사하되, 자체적으로 소셜벤처 여부를 판단받고 싶은 기업도 포함하여 현황 파악 시행

소셜벤처 판단 프로세스(예시)



< 사전제외 대상>

① 순수 비영리조직
② 창업지원법상 제한 업종
(갬블링, 베팅업 등)

<사회성 확인 지표(예)>

① 사회적경제기업
② UN SDGs 17개 분야 영위
* 물, 환경, 교육 등
③ 경영 방침에 사회적 가치 추구 명시 여부
④ 취약 계층 대상 고용
⑤ 이윤의 사회 환원
⑥ 지역사회 기여

<벤처성 확인 지표(예)>

①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 벤처, 이노비즈 등
② 지식재산권 보유
③ 연구개발활동 조직 보유
④ 재무지표, 고용 등 증가
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보유
⑥ 사회문제(환경, 고령화 등) 해결형 신기술 보유 여부

<민간자문단>

① (역할) 소셜벤처 적합 여부 이견 발생시 최종 결정
② 구성(민간중심)
- 선배 소셜벤처기업가
- 사회적경제 전문가
- 임팩트투자社 등

2 소셜벤처 가치평가체계 구축 및 확산

□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개발('18.하)

○ 경제적 성과외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 혁신성·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치평가모형 개발

* 경제적성과 위주의 현행 평가 체계에서는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가치평가가 곤란하여, 일반 기업에 비해 성과가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업가치 평가체계 변화 >

현행		소셜벤처 가치평가체계
경제적성과 * 재무제표상 지표, 고용현황 등	→	경제적성과 + **사회적성과(추가)** * 등급(5~10개), 점수(100점 만점) 등

○ **기보·사회적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협의회*(금융위)와 연계하여 **민간****과 **공동 개발**하고, 등급(5~10개), 점수(100점 만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 산출**

* 금융위, 신협, 은행연합회, 신보, 중진공, 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 KVIC 등
** 임팩트투자사, 엑셀러레이터 등

< 기존 사회적가치 평가 모형 비교 >

구분	사회적기업진흥원 (SVI:Social Value Index)	SK행복나눔재단 (SPC:Social Progress Credit)	B-Corporation 제도(미국)
내용	○사회적 성과를 14개 세부 측정지표 측정 (계량 11개, 비계량 3개) ○100점 만점으로 구성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측정 ○화폐화가 어렵거나, 간접적 사회변화분은 측정제외	○영리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평가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중
평가지표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지역사회협력 수준, 근로자 임금수준, 근로자 역량강화노력 등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익증진, 자원소비 절감 성과, 공공예산 효율성 증대 성과 등	○기업미션,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 여부, 환경개선 여부 등

○ 임팩트 투자사, 은행, 보증기관, R&D·판로 정책지원 기관 등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범용모형으로 개발**

- 다양한 지원기관이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센터 홈페이지에 평가모형 공개**

- 지원기관 등이 별도로 정한 소셜벤처 지원 기준에 따라 **등급이나 점수별 우대 지원 등에 활용**

< 우수 소셜벤처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분 활용 사례 >

공공 부문	○(기보) 보증비율 상향(전액보증), 보증료 추가 감면 (△0.5%p→△0.7%p) 등 ○(투자) 임팩트투자펀드 인센티브 성과 계산 ○(창업) 생활혁신형 청년창업가 발굴,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기술개발) 사회가치증진 제품 R&D 대상 발굴 등
민간 부문 *** 가치평가 결과 자율 활용**	○(대기업) SK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제도, 현대차그룹, LG전자·화학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 선발 ○(투자) 임팩트투자사의 투자처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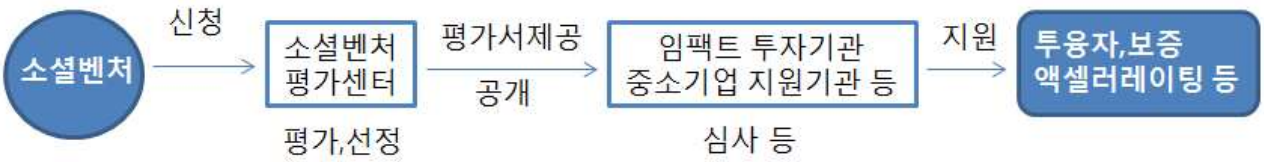
○ 유망 소셜벤처를 발굴하거나 소셜벤처 기업이 자체적으로 우수성 확인을 받고싶은 경우, 가치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가칭) 운영('18.하)

○ **기보***를 통해 소셜벤처 가치평가를 조속히 실시하고, 민간의 자율적 가치평가체계 구축을 유도

* 벤처확인제도 및 기술가치평가 운영 경험, 가치평가 수준에 따른 보증연계 가능

○ 공신력있는 평가자료 제공, 민간자문단 운영, 판별 가이드라인 관리, 현황파악 및 DB 관리, 소셜벤처 지원사업 안내 등 수행



2 청년 소셜벤처 HUB 구축

1 [수도권] 성수동 소셜벤처 밸리 조성

□ 성수동* 일대에 **소셜벤처 지원 역량을 집중·연계**하여 소셜벤처 창업.성장 및 **성공사례 창출 중심지(Hub)로 육성**

*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 溫 등 창업지원 공간이 구축되어 있고, 소셜벤처·사회적 혁신가 등 250여개 기업, 3천여명이 모여 소셜벤처 집적지를 형성

○ **旣 구축·운영중**인 소셜캠퍼스 溫(노동부), 헤이그라운드(민간), 성동 소셜벤처 허브센터(성동구청)를 중심으로, **창업공간, 시제품 제작, 제품 전시 공간** 등 제공

○ 소셜벤처 밸리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논의기구**(분기당 1회)를 설치하여 **지원기관간 역할분담, 입주기업 대상 애로사항 해결*** 등 실시

*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One-Stop 서비스지원단(가칭 소셜벤처지원단, 민관전문가 구성)

○ **민간의 아이디어를 제안***(Bottom-up) 받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셜벤처기업 집중 지원('19년)

* 임팩트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지원 관계자와 정기적 교류 기회 마련, IR·피칭 실시, 스토리텔링 홍보 동영상 제작, TED형 포럼 정기운영 등

- **공유형 물류창고 운영**, 기업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위한 **"소셜벤처기업 맵" 구성·제공**



<중기부>
논의기구 운영, 민간 주도 전문지원기관 운영 등 **성수 소셜벨리 협업 체계 구축·지원**

<노동부-성동구청-민간>
입주기관별 특성에 맞는 **창업공간 제공, 시제품제작, 제품 판매·전시공간 등 제공**

2 [지방]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소셜벤처 육성

□ 지역 수요 및 해당 지자체의 지원의지가 높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공모(5개 내외)하고 지역 혁신기관****과 협업 ('19년)

* 지자체 소유 건물을 소셜벤처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대학·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등

○ 소셜벤처 (예비)창업자 100개팀에게 창업공간, 네트워킹, 컨설팅, 제품 홍보·판로지원 등을 집중 실시

* 창업공간 제공, 민간전문가의 비즈니스모델 검증, 분야별 멘토링, 투자자들과 정기적 네트워킹 구축 등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셜벤처 지원방안(예시)>

◆ **(지원실적)** 대전센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소셜벤처를 발굴·육성(소셜벤처 전용 사업은 없음)

- 유메인('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센서 기술, '17년 26억원 투자유치), 넥스트이노베이션(시각장애인용 점자 기술, '17년 TIPS 선정) 등

◆ **(향후계획)** 지자체(입주공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하여 대전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소셜벤처 발굴 → 창업 → 성장을 체계적 지원

발굴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예비)창업자 공동 발굴	(센터) 사업화 지원(역량강화, 시제품제작, 시장검증, IP확보, 제품고도화 등) (지자체) 입주공간 제공 (민간AC) 씨드투자(0.3억), BM개발, 집중멘토링(13주) 등	판로 확보 등 타부처 사업연계 글로벌 진출지원 등
센터,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	센터, 지자체,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	센터(파트너기업 등)

* 대전시 및 대전창경센터는 대전시청과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도시재생 문제 해결에 대전 과학기술기반(출연연, 대학)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소셜벤처 육성에 관심

3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 **소셜벤처 예비창업가 육성 및 초기창업 지원(노동부)**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나 초기창업자(1년미만) 대상, **공간·창업비용(팀당 최대 5천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소셜벤처를 포함**하고, 지원규모 확대

○ 사업 공간,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성공창업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소셜캠퍼스온(溫)**' 확대('18. 6개→'19년 9개)하여 **인큐베이팅** 서비스 확대

□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소셜벤처 청년창업가 발굴('18.하, 중기부)**

○ **가치평가 활용, 사회가치 창출 및 혁신성이 우수**한 **청년 소셜벤처 창업기업***에게 **1억원**까지 **창업사업화 비용 지원**('18년 추경, 연 100개 발굴)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오픈바우처) :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 청년창업자

-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물품구매,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되, 유흥비 사용, 친족기업과 거래 등 **최소한 제한 설정**

- 바우처 사용전 창업교육 실시, 전담멘토를 매칭하여 바우처 관리

○ 일상 생활 불편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혁신형 소셜벤처 청년창업가를 발굴·지원**(예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컵 개발 등)하여 **누구나 쉽게 창업가능한 환경 조성**('18년 추경, 482억원)

- **소셜벤처 가치평가 모형을 활용**, 즉시 사업화 가능성있는 창업자는 **사업실패시 상환 의무가 없는 정책자금**(성공불융자) 최대 2천만원 지원

* 대출 3년 이후 성공시에는 심사를 거쳐 5천만원 한도 추가대출, 성실실패자 상환의무 면제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자 선발시 **소셜벤처**에 대해서는 **우대가점(최대 3점)을 부여**, 추후 소셜벤처 수요와 성과를 반영한 별도 과정 신설 검토

* 1년간 사업비(최대 1억), 교육·코칭 및 기술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을 지원

□ **민관 협력을 통한 우수 청년소셜벤처 창업 지속 지원**

○ 우수 청년 소셜벤처에 대해 **대기업·공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및 글로벌 소셜벤처**로 육성

- (**우수 소셜벤처 정보 공유**) 지원대상 선발시, **우수한 소셜벤처**를 정부·민간 상호간 추천하거나, DB화 하여 공유

- **(분야별 특성 반영 및 매칭)** 친환경분야는 LG전자·화학, 제조기술기반 소셜벤처는 현대차그룹, 도시재생·주거는 LH, 물관련 기업은 K-Water 등과 지원 연계

< 민간 대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현황 >

SK그룹	○ 사회성과인센티브: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단위로 측정, 사후 금전 보상 ○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생태계 지원 (펀드 투자)
현대차그룹	○ 매년 30여개 사회적기업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 ○ 기업당 최대 1억원 사업비 지원, 멘토링 등 실시
LG전자·화학	○ 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 공간지원(LG소셜캠퍼스), 금융지원(무상 최대 5천만원, 대출 최대 1억원) 등
LH	○ 도시재생·주거 관련 소셜벤처 예비창업팀 지원('18년 10억원) ○ 창업자금, 공간, 컨설팅 지원, 크라우드 펀딩 및 홍보
K-Water	○ 물산업플랫폼(물산업분야 벤처기업 종합시스템) 활용 ○ 대전 대덕특구 내 "K-water 스타트업 HUB"에 입주지원, 기술·연구인력 매칭,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 해외진출 지원 등

- **(가치평가모형 활용)** SK가 旣 운영중인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제도**와 연계, 사후보상 실시 및 가치평가모형 확산

○ 향후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민간 사업과의 연계 모델을 지속 확대**하고, **공기업과 연계**를 통해 지원사례 확산

4 소셜벤처 성장 촉진

1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및 TIPS 통한 투자확대

□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 모태펀드 출자(800억원, 80%)를 기반으로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1,200억원* 규모의 '소셜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중기부)

* 모태펀드 내 1,000억원(중기부) +한국성장금융 임팩트펀드 200억원(금융위)

☞ 시각 장애인용 점자 보조기기 등 사회적임팩트는 크지만 상업성이 높지않아 일반 VC관심이 낮은 분야의 **혁신적 소셜벤처**들도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증가**

○ '18년도 운용성과를 반영하여, '22년까지 조성규모 확대 검토

* (향후 계획) ('18) 1,000억원 → ('22) 총 5,000억원

□ 소셜벤처 특성에 맞게 **운용방식 차별화** 및 **민간자본 유인**('18.하)

○ 펀드 총액의 70% 이상을 소셜벤처에 투자, 성과 창출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펀드 존속 기한 장기화(보통 7년 내외→10년 내외)

○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 위험을 낮춰① 민간 자본②의 임팩트 투자 참여 확대를 유도

①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이익 발생시 모태 지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확대 등
② 옐로우독, D3쥬빌리, 소풍, 크레비스 파트너스, HGI, MYSC 등 민간 임팩트 투자사

○ 소셜벤처에 적합한 표준 투자해설서*(추구하는 사회적가치 등 반영) 제작 및 보급

* (소셜벤처 간담회) 現 투자계약서의 경우 소셜벤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곤란

<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 운용방식 >

구 분	기존 펀드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
투자범위	40~60% 이상	⇨	**소셜벤처 70% 이상**
존속기한	7년 내외		**10년 내외**
인센티브	초과수익 20% 이내		**전체 초과수익**

□ 펀드가 창출한 **사회적 성과**에 따라 **성과보수 지급**('18.하)

○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를 통해 펀드 투자기업의 사회성과(투자기간 중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산정

○ 모태펀드 초과수익 범위*내에서 운용사에 사회성과 환산 금액의 20%까지 인센티브로 지급 검토

* (현행) 초과수익의 20% 이내 → (개선) 전체 초과수익중 사회성과 환산금액의 20% 이내

□ **기술기반 소셜벤처에 특화된 팁스(TIPS) 운영사 선정('18.5월)**

○ TIPS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운영사**를 **신규 선정**하여, **우수 기술기반 소셜벤처**를 **육성**

○ 소셜벤처 전문 운영사는 최대 6년간, 매년 5~10개 내외의 창업팀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중 50% 이상을 소셜벤처에 투자

* 선정된 창업팀은 민간선투자 1억 외에 R&D 등을 위해 9억까지 추가 정부지원

2 소셜벤처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 (**보증**)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기보)을 통한 보증 공급지원 ('18.6월)

○ 향후 **5년간 5천억원 규모** 보증 공급 확대 검토

* 기보(억원) : ('18)300 → ('19)700 → ('20)1,150 → ('21)1,350 → ('22)1,500

○ 보증료 감면(△0.5%p), 전액보증 등 소셜벤처에 대한 우대지원 강화

□ (**융자**)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17, 200억원 → '18년, 350억원)

* ('17년도 지원현황) 총 225억원 지원, 지원업체 127개, 평균 대출금액 178백만원

3 소셜벤처 R&D 혁신역량 강화 지원

□ 소셜벤처의 혁신성 강화를 위한 R&D 지원 확대

○ (**준비**) **인력·과제기획역량** 등이 **부족**한 소셜벤처기업 대상,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R&D기획지원사업 실시** (20개사 지원, 중기부)

- R&D기획역량강화 교육, 개발대상 **기술·시장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획기관 매칭 및 지원

  * (소셜벤처 간담회) R&D 지원을 받으려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R&D기획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행**) 지역·사회 **혁신형 R&D** 과제 **소셜벤처 참여 확대**

- 기업 주도로,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 및 **건강·환경·안전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가치증진 제품R&D**' **시행**(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 사업 활용, 중기부)

  * (예시) 저가 점자 스마트 워치(닷), 전동 휠체어(토도웍스), 장애인 교육용 앱(에누바) 등

-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 **다부처 R&D 사업 기획·선정**시, 가점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 범위에 **소셜벤처 포함** 등 **제도개선 추진**(과기정통부)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R&D과제를 제안한 지자체 대상으로 선정('18년 55억원)

4 국내외 판로 확충

□ 국내 판로 확충 및 마케팅 촉진

○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규모(10인 이하) 소셜벤처**에 대해 **기업당 1억원 한도**내 **지원사업(판로확보, 제품개발 등)을 패키지로 지원**('18년 20억원, 중기부)

- 선정된 기업에 **기업진단팀**(사업주관기관, 경영컨설턴트 등) **배정,** 필요한 지원사업 구성 및 지원성과 점검, 추가 컨설팅 등 **성장경로 관리**

○ **온.오프라인 정책매장 입점 우대 및 소셜벤처 제품정보 DB 구축**을 통한 **판로 확대 지원**

* 공영홈쇼핑(아임쇼핑) 등 온라인을 통한 제품 홍보 및 유통지원 포털(아임스타즈, www.imstars.or.kr) 활용

○ **방송·언론, 뉴미디어**(SNS 등) 매체를 **활용**한 우수 소셜벤처 제품의 **소비자 노출 및 확산을 유도**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을 활용한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를 컨텐츠화한 전시·홍보

□ ODA 연계를 통한 소셜벤처 해외 판로 활성화(중기부, 외교부)

○ **코이카**(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을 통해 **개도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한 **소셜벤처 육성('18년 86억원)**

* (사례) **힐세리온**(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 개발, 베트남에 보급), **LS테크놀로지**(저가형 고도정수처리장치 개발, 라오스에 깨끗한 물 제공에 기여)

< CTS 단계별 지원 >

SEED 1	▶	SEED 2	▶	SEED 3
기술개발 등		시제품 제작 등		비즈니스(Scale-up)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10억원

- CTS 참여기업의 해외시장 본격 진출시, 베트남, 미얀마 등 **개도국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공간 활용 지원**

* 미국, 중국 및 베트남, 미얀마, 인도, 칠레 등 총 14개국 22개소 설치

○ CTS 참여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강화 해외연수 프로그램*** **실시**

* 해외 소셜벤처 투자자 피칭, 인큐베이팅 기업운영 프로그램 참여 등 1주일간 연수('17년 총 12개팀 참가)

- 기업주도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수요자맞춤형 연수 실시, 연수기간 연장(1주일→2주일) 등 프로그램 개편

수 소셜벤처 활성화 문화 확산

□ 소셜벤처 성공사례 및 우수 기업인 발굴.홍보 및 포상

○ 혁신적 사업모델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셜벤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상파 방송(다큐멘터리)**.SNS 등을 통해 홍보 확대

○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포상**을 신설*하여 자긍심 고취

* 벤처창업페스티벌(11월), 세계기업가정신주간행사(GEW, 11월) 등 행사의 유공자 포상부문에 해당 분야 신설

□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교육 활성화

○ (**청소년**) 초중고 **비즈쿨 지원학교 확대**('18, 560개교 → '19, 600개교) 및 사회적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소셜벤처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

○ (**대학생.일반인**)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가정신 캠프·포럼**을 개최, 소셜벤처 창업 및 사회혁신 성공사례 등을 공유·확산

* 대학기업가센터(9개) 및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주관

○ **창업선도대학***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과정을 필수 설치,**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10% 이상을 소셜벤처교육으로 운영

*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통해 창업자 발굴-교육-사업화자금(최대 1억원)-성장지원까지 창업 全단계 지원

❖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의 추진으로 **2,500여개의 일자리(청년일자리 2,000여개)**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9년)

○ **360여개 소셜벤처가 창업**하고, 약 **250개 기업**이 임팩트투자·보증·R&D 등의 지원을 받아 **성장** 가능

Ⅴ. 향후 추진일정

정책과제	일정 · 주관부처	
1. 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평가체계 구축		
(1) 민간 주도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마련	'18.3분기	중기부
(2) 소셜벤처 실태조사 실시	'18.3분기	중기부
(3) 소셜벤처 가치평가 모형 개발	'18.3분기	중기부
(4)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가칭) 운영	'18.3분기	중기부
2. 청년 소셜벤처 허브(HUB) 구축		
(1) (성수동)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19.1분기	성동구청·노동부
(2) (성수동) 소셜벤처 지원 전문 지원기관 선정·운영	'19.1분기	중기부
(3) (지 방)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 소셜벤처 육성	'19.1분기	중기부
3.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1) 청년 소셜벤처 바우처 방식 사업비 지원	'18.4분기	중기부
(2) 대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과 연계 강화	'19.상	대기업·중기부
(3) 소셜벤처 육성 팁스(Tips) 운영사 선정 및 창업 지원	'18.2분기	중기부
(4) 생활혁신형 소셜벤처 정책자금(성공불융자) 지원	'18.4분기	중기부
(5)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셜벤처 우대가점 부여	19.1분기	중기부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및 소셜캠퍼스 온 확대	'18.3분기	노동부
4. 소셜벤처 성장촉진		
(1)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18.2분기	중기부
(2) 소셜벤처 맞춤형 금융(보증, 융자) 확대	'18.2분기	중기부·금융위
(3) 소셜벤처 R&D 지원 확대(R&D기획, R&D 수행)	'19.1분기	중기부, 과기정통부
(4) 소규모 소셜벤처 제품개발·판로 패키지 지원	'18.2분기	중기부
(5) ODA 연계를 통한 소셜벤처 해외 판로 진출 지원	'18.3분기	외교부
(6)소셜벤처 성공사례 포상·홍보 및 교육 강화	'18.4분기	중기부
(7)창업선도대학 내 CSR 과정 설치	19.1분기	중기부

참고 **소셜벤처 성공사례**

 **<모어댄(한)>**	(혁신) 폐자동차 시트 등 재활용 가죽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 제작 (사회성과) 경력단절여성, 새터민 등 취약계층 고용, 폐기물문제 해결 (경제성과) 스타필드 고양, 교보 핫트랙스 등 11개 매장 입점
 **<레드스톤 시스템(한)>**	(혁신) 컴퓨터 CPU 전력절감기술 등 다수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성능 개선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사회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정보화 교육 실시 (경제성과) '17년도 381억원 매출, 장애인 39명 고용(총근로자 113명)
 **<이지앤모어(한)>**	(혁신) 국내 최초 '월경컵' 식약처 허가, 생리대 등 다양한 월경용품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 경험 공유 및 제품 판매 (사회성과) 제품 구매, 온라인 리뷰 적립 기부포인트로 저소득층 아동(매월 600명→1,000명 확대 예정)에게 월경용품 지원 (경제성과) 올리브영.왓슨스 등 입점, 여성.청년근로자 비중 100%
 **<에누마(미)>** 실리콘밸리 한인기업	(혁신) 신체적 장애, 문화.경제적 취약층 아동을 위한 읽기, 셈하기 학습용 게임 개발과 서비스(왼손잡이 사용모드, 난독자용 폰트 등 적용) (사회성과) 1,400개 미국 초등학교가 수업 교재로 활용, 8개 언어 약 150개 국가에서 활용, 하루 평균 약 40만 번의 셈하기 학습이 실행 (경제성과)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500만 이상, '18년 4월까지 총 101억 원의 투자 유치, 글로벌 러닝X프라이즈(XPRIZE) 경진대회 결선진출 1백만불 상금 획득
 **<오파테크(한)>**	(혁신) 시각장애인이 재미있고, 쉽고, 빠르게 점자를 익힐 수 있는 점자 교육보조기기 탭틸로 개발. 블루투스를 통해 모바일 앱과 연결해 점자를 읽고 쓰는 방법을 학습 (사회성과)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아는 사람은 10%미만, 탭틸로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쉽게 점자를 배워 세상과 소통가능 (경제성과) '17.3. 미국 최대 보조공학박람회 CSNU 참가, '17.7월 미국 첫 판매 개시(개당 900달러),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인도 등 진출 계획

 <이노마드(한)>	(혁신) 세계 최초로 물병 사이즈의 휴대성을 강조한 수력발전기 제품을 개발(강이나 계곡의 물을 전력 에너지로 변환해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일체형 발전기) (사회성과)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계 1/3 인구에게 '휴대용 발전기'를 보급해 꼭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경제성과) '16.9월 미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킥스타터'를 통해 펀딩 성공, '17년 9월 생산을 완료하여 '17.12월까지 총 3,200대(약580,000천원) 판매
 <토도웍스(한)>	(혁신) 기존의 수동휠체어에 조이스틱과 모터, 컴퓨팅 보드, 베터리를 장착하여 전동 조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토도드라이브 개발 (사회성과) 자기 몸에 맞는 기존 휠체어에 큰 개조 없이 간단하게 장착,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경제성과) '16.3월 설립, 개당 176만원, '16년 매출(136백만원)
 <빅이슈(영)>	(혁신) 홈리스에게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하는 비즈니스모델로 빈곤 문제 해결('91년도 창간, 판매금액 50%를 판매원 귀속) (사회성과) 총 1억5천만 파운드 사회적자금 조성, 약 1백만명 고용지원, 임대주택을 통해 3.4백만명에게 거주지 제공 (경제성과) 약 300개가 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하여 3천만 파운드 이상 매출 창출 및 재투자
 <에그리쿨(프)>	(혁신) 대도시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무농약의 신선한 과일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 컨테이터 개발('15년 창업) (사회성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물과 비료 사용을 90% 감소, 새로운 도시형 농업일자리 창출 (경제성과) '17년까지 약 43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
 <킥스타트(미)>	(혁신) 저가의 족동식 펌프 개발(약 95불) (사회성과) 아프리카 농민에게 저가 펌프 판매와 농작물 재배 컨설팅 제공, 연간 1천2백만명을 기아에서 해방 (경제성과) 총 21만명 고용 창출, 연간 2억불 매출 창출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소셜벤처 전문지원기관(액셀러레이터) 및 기업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Ⅰ 추진 배경

▢ 사회적경제 신규 주체 발굴

○ 소셜벤처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모델(BM)을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 중

○ 향후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청년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소셜벤처 특성에 맞는 지원(재정 지원보다 투자유치 등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을 선호) 필요

▢ 민관협업을 통한 소셜벤처 맞춤형 전문지원체계 구축 필요

○ 초기 아이디어를 상품화한 후 시장반응에 따라 빠르게 상품을 발전시키고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과 협력, 지원생태계 구축

➡ 사업모델 멘토링 및 투자 연계 등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제공

<소셜벤처 전문보육기관 (액셀러레이터 /창업기획자) 프로그램의 특징>

■ **창업보육과 투자의 결합** : 창업보육 과정을 통해 상품·사업모델·조직을 발전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받음

■ 창업보육 과정은 3~6개월의 단기집중과정, 전문가·선배기업가 등 밀착 **멘토링**, 전문가·투자자 및 소셜벤처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주요 특징으로 함**

■ 투자의 경우 **1~2천만원의 소액 투자**나 **10% 내외 지분 보유 방식 주로 사용**

○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에 기반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가치 측정 및 보상 체계 구축 (SK 사회성과인센티브 : 사회적경제기업의 한 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여 성과에 대한 현금보상 지원)

Ⅱ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정의) 및 제16조(재정지원 등)

▢ 추진방향

새로운 형태의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지원생태계 구축

○ 민간전문기관(액셀러레이터) 통한 소셜벤처 투자.컨설팅 등 지원

- 소셜벤처 지원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공모.선정

○ SK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시스템 구축

-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은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이 전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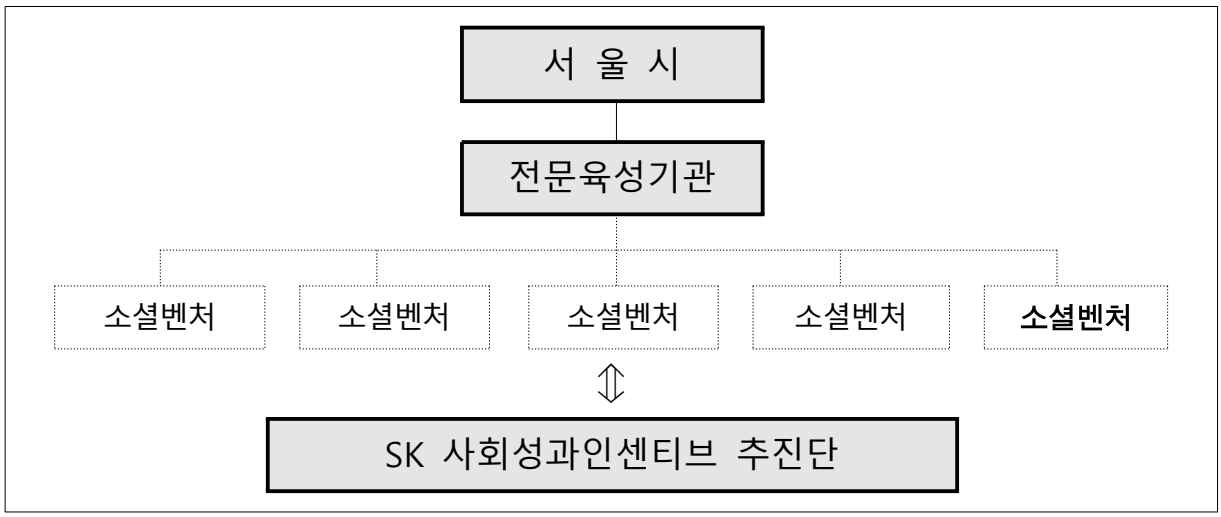
➡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유입 및 소셜벤처의 시장 경쟁력 제고

▢ 추진체계

○ 서 울 시 : 사업 총괄, 정책방향 수립

○ 전문육성기관(수행기관) : 사업모델 멘토링, 제품개발, 투자유치 등 지원

○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 :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 보상



Ⅲ 전문지원기관 공모 및 선정계획

1.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소셜벤처 육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3억원(총 예산 10억 원) / 5개 내외사업 선정
○ 접수기간 : 2018.4.2.(월)~2018.4.16.(월), 15일간

2. 신청자격

▢ 기본자격 : 서울시 소재 소셜벤처 전문육성기관 ※ 아래조건 모두 충족

○ 전문보육(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시 소재 기관이어야 함
○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상담공간, 네트워킹 공간 등 보유
○ 최근 2년간 서울시 내에서 소셜벤처 전문 지원업무를(창업기획, 보육, 투자 등) 수행한 기관으로서 지원 보조금의 10%를 자부담 할 수 있는 기관
○ 해당 업무분야에 종사한 최소 2인 이상의 상근인력 보유

[관련 상근인력 기준]
- (소셜)벤처기업의 창업자 및 3년 이상 임원급으로 재직한 자
- 투자, 멘토링 등 (소셜)벤처 창업 관련 전문지원 업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의 기준을 충족한 자

※ 수행기관과 함께 보육.투자.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또는 단체)과 컨소시엄 참여 가능
  ▸ 협약은 서울시.주관기관 양자 체결, 보조금은 주관기관에서 집행(참여기관 별도 지급 불가)

▢ 제외대상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기관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3억원

▢ 지원조건 : 지원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현물 제외)

▢ 지급절차 :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금 분할 교부

- ○ '18년 상반기 : 사업 착수 시 사업비의 50% 지급
- ○ '18년 하반기 : 월별 사업계획 및 집행상황에 따라 매월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교부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2회~5회)

4. 지원사업 수행절차 및 내용

▢ 사업절차

수행기관 선정	⇨	**소셜벤처 발굴**	⇨	**소셜벤처 적정성 심의**	⇨	**소셜벤처 지원**
<서울시>		<수행기관>		<서울시>		<수행기관>

- ○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전문육성기관(수행기관) 선정
- ○ 선정된 수행기관은 소셜벤처 기업 발굴, 선발 후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 선발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 ○ 서울시에서 적정한 것으로 심의된(사업소재지, 사업목적 등) 소셜벤처에 대해 지원사업 시행

▢ 지원사업 시행 (수행기관)

- ○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벤처를 수행기관별로 모집.선발 *※ 소셜벤처 선발 기준 준수*

소셜벤처 선발기준

- 서울시 소재 창업 7년 이내(예비 창업자 포함), 사회문제해결이 사업 목적인 기업
- 동일 아이템 및 기술로 他 기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재정지원을 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단 민간지원사업의 경우 가능
  - 중복여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인건비.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수혜여부로 판단하며 단순 교육 참여, 경진대회 수상 등은 제외
- 타인의 아이템이나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 시 선발제외

○ 수행기관은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제안, 역량 강화, 보육.지원 계획과 달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실행

- 소셜벤처 육성 계획 및 달성 목표 제시(보육 기업 수, 매출액, 투자유치액 등)

※ 수행기관 선정 시 사업목표의 적정성 심사 → 심사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취지에 적합한 목표로 수정(조율).반영

-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모델 및 기술.제품 개발에 필요한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
  - 엔젤투자자, VC 등을 활용한 후속투자 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활동 지원

5. 수행기관 심사 및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재정관리담당관 인력풀 내에서 15명 이내로 구성

○ 심의내용 : 서면심사(대면심사 대상 선정) → 대면심사

▢ 선정절차

① 지원 서류검토	지원서류 및 결격사유 검토	~ 4.17.(화)

○ 심사내용 : 지원서류 구비 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 확인

○ 심사주체 : 서울시 주관부서(사회적경제담당관)

② 서 면 심 사	최종 선정 대상기관의 2배수 내외 선정	~ 4.20.(금)

○ 심사내용 : 지원 적격심사 후 대면심사 대상 기관 선정

※ 지원단체가 최종 선정대상기관의 2배수에 미달한 경우 적격성만 심의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최고, 최저 점수 제외)

○ 심사주체 : 보조금심의위원회

○ 결과발표 : 2018.4.23.(월)

③ 현 장 실 사	사업 수행능력 현장확인	~4.26.(목)

○ 실사내용 : 서면심사 통과 기관 대상 사업수행 능력 사전점검

- 사업수행능력 점검 및 자료검토를 통해 대면심사 자료 제공

○ 실사주체 : 서울시 주관부서(사회적경제담당관)

④ 대 면 심 사	5개 기관 내외 최종선정	~4.27.(금)

○ 심사내용 : 보조금심의위원회 대면(발표)심사

-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후 최종 심의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최고, 최저 점수 제외)

○ 평가기준 : 수행기관의 역량, 프로그램 기획의 타당성 및 창의성, 세부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결과발표 : 2018.4.30.(월)

6. 사업관리 계획(점검 및 평가)

▢ 보조사업자 사전교육 및 회계지침 교육

◦ 사전교육 : 최종 선정 수행기관에 보조금 관련 사전교육 시행

◦ 회계지침 교육(수시) : 보조금관리시스템 실습 교육, 회계지침 등

▢ 현장 지도.점검

◦ 사업추진현황 점검 :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여부 등

◦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보조금 목적외 사용, 사업비 집행내역 등

▢ 추진실적 보고

◦ 정기보고 : 7월말, 사업종료 시

◦ 수시보고 : 사업비 교부 요청 시(추진상황, 집행현황 등 약식보고), 市에서 보조사업 점검을 위하여 사업진행상황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

◦ 사업수행 평가 : 사업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시행

※ 사업수행 평가계획 별도 수립

7.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 소개서. 각 1부

◦ 자격요건 확인서류 각 1부

- 최근 2년간(2016년~2017년) 유사사업 실적증명 자료
- 상근인력 자격증명 서류(경력증명서 등)
- 소셜벤처 지원 공간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 기관 자체 소유인 경우 해당 기관이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

◦ 신청대상 확인서류(해당사항 제출) : 재무제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법인(단체) 등록증(허가증),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등

◦ 대면심사 대상 기업 :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파일

IV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SK 사회성과측정시스템 활용)

○ 측정항목 : 고용, 사회서비스, 환경, 사회생태계 성과 등

유형	측정내용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이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 증가분과 고용의 질적 향상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게 더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싼값에 제공
환경문제 해결	친환경적인 생산방식과 환경 오염 개선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편익 제공
사회 생태계	낙후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개선과 발전에 기여

○ 측정시기 : 사업 시작 1개월 전, 종료 후 1개월 내.외

○ 성과보상 : 소셜벤처의 사회성과 측정 후 일정 비율 현금 보상

- SK와 협의하여 수행기관 지원사업 참여 소셜벤처 중 선정

※ 보상비율은 현재 SK의 관련제도 개편 중으로 4월 중 확정

사회성과인센티브 지급현황

‣ SK에서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측정된 사회성과의 25% 현금 보상

구분	2016년	2017년
참여기업	44개 기업	93개 기업
사회성과 창출	104억 원	201억 원
총 인센티브 금액	27억 원	48억 원
평균 지급액	6,130만원	5,616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에 관한 협약 체결

○ 일　　시 : 2018년 4월 3일(화), 15:00~15:20(20′)

○ 장　　소 : 행복나래 3층 해피라운지(중구 서소문로89-31)

○ 협약당사자 : 서울특별시장 – SK 사회공헌위원장

○ 협약 내용 : 사회성과 및 보상을 위한 상호 협력

① 목　　적 : 사회성과 측정·보상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활성화

② 주요사업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측정
- 사회성과 기반의 보상체계 마련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가치 확산
-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

③ 역할분담

- 서울시 : 혁신적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성과 측정을 지원
- S　K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 마련

○ 행사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03(3′)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5:03 ~ 15:07(4′)	○ 인사말씀(SK)	SK 사회공헌팀장
15:07 ~ 15:11(4′)	○ 인사말씀(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15:11 ~ 15:14(3′)	○ 협력사업 설명	사회자
15:14 ~ 15:16(2′)	○ 협약서 서명.교환	**일자리노동정책관**-SK사회공헌팀장
15:16 ~ 15:20(4′)	○ 기념 촬영	참석자 전원

Ⅴ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 예 산 액 : 1,000백만원

Ⅵ 추진 일정

□ 소셜벤처 육성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지원사업 모집공고	:	'18. 4월 2일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18. 4월 16일
○ 적격심사 및 서면심사	:	'18. 4월 20일
○ 대면심사	:	'18. 4월 27일
○ 최종발표	:	'18. 4월 30일
○ 선정사업자 교육(보조금 집행방법 등)	:	'18. 5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18. 5월 중
○ 소셜벤처 대상 사회성과 측정 설명회(SK)	:	'18. 5월 중

□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을 위한 협약체결(市-SK)	:	'18. 4월 3일
○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1차)	:	'18. 5월 중
○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2차)	:	'19. 1월 중
○ 소셜벤처 사회성과 보상	:	별도 계획에 따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및 운용 계획

소셜벤처 등 사회문제 해결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전문보육 허브센터'를 조성하여 기업간 협력 거점공간으로 운영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

▢ 사업개요

① 자치구 청년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자치구 허브센터 조성을 위해 공모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비 일부 지원

② 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추진

- 공공의 유휴재산을 활용하여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 기업간 연대 및 유기적 협력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조성
- 소셜벤처 15개사(100여명) 입주, 전문보육기관에 위탁.운영

▢ '18년 사업비 : 총 6억원

※ **소셜벤처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접목한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

■ **마리몬드**: 위안부 할머니들의 미술작품을 소재로 휴대폰 케이스 가방 등 제작

■ 째깍악어('17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플랫폼 운영('17. 10월 월매출 2천만원)

Ⅱ 세부 추진계획

1. 자치구 청년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자치구 허브센터 조성 리모델링 비용 등 자본보조

- 소셜벤처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공간, 인큐베이팅, 공동회의실, 교육장, 네트워킹 공간 등 조성 사업비

○ 지원방법 : 유휴공간 확보 자치단체 대상 공모.선정

○ 지원예산 : 2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심사개요

- 위원회 구성 : 사회적경제 전문가 15인 이내 구성(위촉직 위원 3/4이상)
- 심사방법 : 대면심사 [자치구 사업설명(5분) + 질의응답(10분)]
-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 획득한 자치구 중 최고 고득점 자치구 선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50점), 자치구 추진의지(10점), 지역특성 반영도(30점),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1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 **시 소셜벤처 정책과의 협업도 등**
자치구 추진의지	10	◦ 제도적 기반구축, 전담인력 지정, 자원투입 계획 등
지역특성 반영도	30	◦ 소셜벤처 밀집도, 중간지원조직 협업체제 등 자치구 지역특성 반영도 등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0	◦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 ◦ 향후 활용 정도 등

※ 공고 및 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계획 별도 수립

2. 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운영

○ 추진근거

- 민선7기 공약 : 에이블테크 소셜벤처 육성,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

○ 추진방향

- 한국자산관리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과 협력, 공공 유휴자산에 조성 중인 앵커시설(혁신지원센터 등)에 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점
- 소셜벤처(에이블테크 포함)기업 입점.집중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거점 및 초기 창업 지원공간(공동제작실.컨설팅룸.회의실 등) 등으로 활용

[소셜벤처 창업지원 및 취약계층 고용지원 플랫폼 구축]

▸ 입주대상 : 소셜벤처(예비창업자 포함), 에이블테크기업, 민간창업전문육성기관(액셀러레이터), 학자금대출채무자, 재기창업자 등

▸ 지원사업

❶ 업무공간지원 : **공공기관 소유 자산을 활용하여 창업 및 사무공간 지원**

❷ 창업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멘토링.경영컨설팅 등) 및 사업비 지원

❸ 사회가치 창출 우수기업(데모데이 등을 통해 선발) 및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사회투자기금 융자(저리 2%, 최대 5년) 연계 지원**

❹ 공공구매 조달 박람회 입점, 임팩트투자 유치 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협력체계

◆ 공공기관 : 사무공간 조성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서울시 :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운영

◆ 창업전문보육기관(액셀러레이터) : 보육 및 투자유치 등

○ 1단계 조성사업

- 사업대상지 : 강남구 역삼동 공공부지

- 조성내역

  ▸ 자산관리공사에서 '18. 8월 현재 신축 중인 공공부지 빌딩(가칭 청년혁신지원센터) 일부를(3층~4층, 약700㎡) 서울시에 사용 허가

  ▸ 서울시에서 사용허가를 득한 공간에 「서울시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

- 공간구성 내역

창업공간	소셜벤처 입주사무실(공유.단독), 제작실, 테스트랩, 창고
공유공간	사업화 지원시설(세무.법률 등 컨설팅), 휴게공간, 컴퍼런스룸
교육공간	학생 및 시민 등 대상별 맞춤형 사회적경제 교육 공간 등

- '18년 공간 조성예산 : 4억원(시설비)

  ※ 청년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예산(자치구자본보조 총 6억원) 변경.집행

예산 변경계획

◆ 예산 변경 금액 : 40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승인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청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600,000	-	400,000	**200,000**
			시설비 (401-01)	-	400,000	-	**400,000**

◆ 변경사유 : 민선7기 공약사업 등 추진

○ 운영방법 : 시설 및 사무 관리위탁 (공모)

- 전문기관 공개모집을 통해「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관리운영 위탁
- 위탁사무
  - ▸ 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 자산 및 시설 관리
  - ▸ 소셜벤처 창업.육성사업 지원 및 입주기업 투.융자 연계
  - ▸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홍보 등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19년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 및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Ⅲ 향후 추진일정

자치구 청년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사업비 지원

○ 공모 및 자치구 신청서류 제출 : '18. 9월초
○ 서울시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 '18. 9월말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18.10월초~12월

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운영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8. 9월
○ MOU체결 : '18.10월
○ 서울시 소셜벤처허브센터 공간조성 : '18.10월 ~
○ 민간위탁 제284회 시의회 동의안 상정 및 심의 :'18.11.1. ~ 12.20.
○ 수탁기관 공모계획 수립 및 일상감사 의뢰 : '19. 1월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19. 1월 ~ 3월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19. 4월 ~